

발간등록번호

71-6410000-001099-10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2023 경기도 예산운영성과 우수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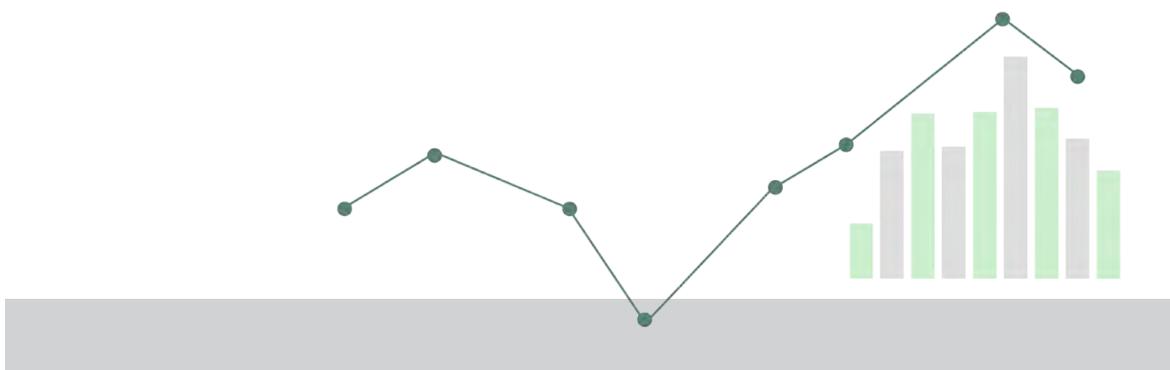


# 2023 경기도 예산운영성과 우수사례집

## CONTENS

I. 경기도 예산운영성과 우수사례집 개요	5
II. 수입증대 사례	9
1. (경기도) 소송 통한 도유재산 무상취득	11
2. (경기도) 공유재산 매각금액 개선(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	20
3. (경기도) 공정과세 위해 “이것”만 바꿨을 뿐인데, 누락세원 발굴 역대 최대	28
4. (경기도) 국내최초, 등기된 동산 추적조사로 체납액 징수	32
5. (경기도) 부동산 임대차 신고정보 활용한 세외수입 맞춤 징수	38
6. (경기도)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	48
7. (부천시) 납세담보를 통한 新 징수기법 발굴로 수입 증대	52
8. (부천시) 누락 기부재산 소유권 취득	55
9. (평택시) 기획세무조사 자체과제 운영으로 취약분야 세원발굴	57
10. (김포시) 대명항 젓갈건어물 시장 규제 관리 강화	58
11. (안양시) 방치된 고장 컴퓨터 일괄 불용 및 처분업체 협상으로 세외수입 증대	63
12. (여주시) 남한강 물 사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49억원 징수	65
III. 예산절감 사례	73
1. (경기도) 민선8기 도정슬로건 디자인 자체개발을 통한 예산 5천만원 절감	75
2. (경기도) 문산~내포(2) 지장물지속 협의를 통한 예산 절감	78
3. (경기도) 경기광역푸드뱅크 물류창고 임대비용 절감	83
4. (경기도) 수전설비용량 축소를 통한 전기안전관리 영역비용 절감	86

5. (경기도) 별내선(8호선 연장선) 다산역 광장공사 대행을 통한 사업비 절감 .....	88
6. (용인시) 도수관로 이설공사 분담 비율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	97
7. (용인시) 숨어있는 사유재산 발굴로 재정 확보 .....	99
8. (성남시) 공공 녹지대 등의 청소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한 예산절감 .....	101
9. (부천시) 민간토지 녹지활용계약으로 토지매입비 절감 및 녹지공간 확충 .....	104
10. (양주시) 통신사업자 투자 유도를 통한 예산 절감 .....	107
11. (의정부시) 교육경비 지원사업 예산절감 .....	109
12. (광주시) 옹벽공법 변경을 통한 사업비 절감 .....	119
13. (구리시) 조달청 예산 확보로 토평교 염수살포장치 설치비 절감 .....	121
14. (구리시) 반려동물 놀이터 상수도 급수 공사 .....	123
15. (안산시) 경로식당 및 카네이션하우스의 쌀 구매 예산 절감 .....	128
16. (하남시) 재정 TF 추진단 구축으로 지방재정 건정성·효율성 제고 .....	133
<b>IV. 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제안 사례 .....</b>	<b>135</b>
1. (경기도)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부적성 사용신고로 예산낭비 개선 .....	137



I

# 경기도 예산 운영성과 우수사례집 개요







## □ 개 요

- **(목적)** 예산절감을 위한 직원·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 등을 수록한 업무개선 사례집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예산절감 조직문화 및 효율적 재정운용 풍토 확산
- **(구성)** 道 및 시·군, 공공기관의 우수한 수입증대 및 예산절감 사례, 예산성과금 사례,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사례로 구성

## □ 추진근거

- 「경기도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 도지사는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야 함
- 「경기도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 제9조\*  
\* 도지사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사례 등을 모아 매년 1회 사례집 발간

## □ 제도소개

- (예산성과금) 자체 노력으로 예산 집행방법, 제도를 개선하여 종전 이상의 업무성과를 유지하면서도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예산성과금)를 지급하여 자발적 재정개선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직사회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 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
- (예산낭비신고) 주민의 관심과 감시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자치단체 예산 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시정요구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 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





## 수입증대 사례





# 1 소송 통한 도유재산 무상취득

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경기도 자산관리과
담당자 : 손종훈 (031-8008-4205)

## 《 성과요약 》

- 안산시 선감동 소재 국유지 위에 도유건물 존재를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道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대해 적극적인 소송 대응(道 : 취득시효 주장)을 통해 국유지 매입비 등 약 3억원 이상을 절감함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안산시 선감동 654-87(대, 719㎡)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 위에 도유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유로 국유지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道에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6.6백만원) 처분함
  - 현행 국공유재산법상 캠코의 변상금 처분은 적법하며, 이에 道는 캠코에 변상금을 납부 후 매년 지속적인 임대료를 납부하거나 캠코로부터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발생

관련지번	공부 면적	점유 면적	변 상 금	
			부과기간	금 액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654-87번지 (당시 국유재산)	719㎡	611㎡	'19.1.31~'21.6.22	5,977,790원
변상금 부과원인	국유지내 도유건물 존재(건물소유권과 토지소유권 상이)			
건물(도유재산)	1964.12.21 '경기도사회사업협회1)'가 道에 무상증여 - 최초 등록당시 건축물 지번 : 선감동 654-10번지(도유지)			
토지(국유재산)	2012.6.28 국가(기획재정부)가 무주부동산 취득 - 선감동 654-10 재측량 후, 654-87로 분할			

- 해당 도유건물은 아픈 역사를 간직한 선감학원 옛 건물로 1964년 경기도가 취득하여 관리하던 토지였음에도,
- 막무가내식 변상금을 부과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캠코의 행태는 역대 최악의 재정여건을 겪고 있는 지지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시급히 제도개선 필요

1) 1941년 선감도 전체를 매수하여 '선감학원'이라는 부랑아 시설 설립, 1942.5.29.개원(195명 수용)하여 1982년까지 경기도에 의해 운영

◀ 캠프의 막무가내식 변상금 부과 관련기사 ▶

- ▶ 유명무실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900억원 넘게 미납됐다(한국경제, 2023.10.9.)
- ▶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변상금' 4억원 부과 소송 승소(노컷뉴스, 2023.8.18.)
- ▶ "공공 하수처리장 사용료 내라"... 서울시 변상금 16억 날벼락(파이낸셜, 2022.9.5.)
- ▶ 제주 국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위법 판결...맛쩍은 캠프(제주의 소리, 2022.7.27.)

## □ 추진내용

◀ 추진 경 위 ▶

- 2021.3.25.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캠코→道)
- 2021.4.02. : 국유재산 변상금 처분 대응을 위한 자료 협조요청(道→市\*)  
\*도유건물 위임관리관 : 안산시
- 2021.4.02. : 도유재산 선감동 654-87(구 654-10) 관련 자료 제출(市→道)  
- 당시 道는 해당 도유건물뿐만이 아니라 해당토지에 대해서까지 제3자에게 대부료를 부과하였다는 자료 입수
- 2021.4월~6월 : 경기도 기록원 등 문서확인 통한 경기도 舊문서 입수  
- '91~'93년 舊문서로 道는 해당토지(선감동 654-87)를 무단점유지로 관리하고 있던 자료 입수
- 2022.6.1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선고(道 전부승소)
- 2022.7.13. :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변상금처분 취소(캠코→道)

- 道 자산관리과는 2018년 10월 공유재산의 전문성 향상과 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된 부서로 캠프의 이러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철저한 자료수집과 검증을 통해 소 제기를 결정함
- 자료확보를 위해 경기도기록관 및 관련 기록물을 검색하고 道에 남아 있지 않는 자료는 성남에 위치한 국가기록원을 찾아 당시 道의 재산관리 공문 및 道가 사회사업협회로부터 해당 도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기록한 공유재산관리대장 등의 자료를 다수 확보함
- 변상금 부과처분은 국·공유재산법에 의한 기속행위로 만약 道가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시 패소는 관련법과 유사 판례 및 사례 등을 비취 명확한 사실이었음
- 이에, 道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캠프의 변상금 처분의 원인인 국유지 위에 있는 도유건물은 1964년 道가 '경기도사회사업협회'로부터 취득당시, 안산시 선감동 654-10(도유지)로 등록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도유지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 2012년 국가는 해당 선감동 654-10을 재측량 후, 도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654-87로 분할 후 무주부동산 사유로 취득하였던 것임
- 위와 같이 道가 해당 토지를 무주부동산(국가소유)인줄 인지하지 못한 채 도유지로 인지하고 선의의 의사로 소유·관리하였던 점에 착안하여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법이 아닌 민법상 취득시효 검토를 통해 토지 소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 후 승소하게 된 것임
- 민사소송 승소 후 道가 토지소유권을 토지소유권을 1985.3.7.으로 소급 회복함에 따라 캠프코의 변상금 처분은 당연위법하게 됨
- \* 국유지('12년 등기)가 도유지('85년 등기)로 변경

« 「민법」 »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국유재산법」 »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 □ 개선(추진)효과

-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또다른 변상금 처분 시 대응 가능
  - 캠코는 경위파악 없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대상이 지자체 등 공공기관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변상금 처분중으로,
  - 道 재산관리부서에서는 「민법」상 취득시효 여부를 검토하여 토지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으며, 변상금 처분에 따른 납부비용 및 연 대부료 등 절감가능
- 재정개선 효과 : 약 3억원 이상
  - 기준가격 111,517천원(공시지가)의 토지를 무상 취득
  - 道가 받은 변상금처분을 자진취소하게 하여 지출절감(5,978천원)
  - 변상금 처분을 수용하였을 경우 취득시효 권리를 포기하게 됨에 따라 향후 납부하게 되었을 지속적인 대부료(연2,369천원) 및 토지매입비(111,517천원 이상\*) 지출 절감 \* 토지매입은 감정평가 비용으로함(평균적으로 공시지가의 2~3배)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5.5백만원(기여자 박현범 외 2명)**

## 참고 1

## 변상금 처분 통지서(한국자산관리공사→道)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 변상금 부과지서

대상자	성명	경기구청	생년월일	431
	주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호정로 1 (대산로3가)	전화번호	—

부과 내용	재산의 표시			경유권자 (유) 또는 사용수익 권자	연간대부료 산출			변상금 산출		비고
	대	면적	가액		재산가액	사용모 율	연간대부료	부과기간	변상금(예상) (원)	
경기포안산사단형부설합동 854-57	대		719,000	811,000	85,296,800	2.6%	2,132,380	2019.01.01~ 2021.06.30	6,977,780	

귀하가 위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않고 사용·수익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기한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변상금 부과지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도청 귀중





「대외주의」

### 仙甘島 道有財産管理 實態報告

妻津郡 仙甘島の 道有財産現況을 把握하여 管理에 徹底를  
 기하고, 土地의 不法毀損을 防止하는등 建物및 土地管理에  
 請警配置等 現地 管理方案을 講究토록 할 것.

'91.8.25, 西海岸 巡視時 道知事 指示

결재  
 1991.10.18  
 토지사

管財擔當官	財務局長	副知事	道知

道有財産係長

道有財産係長

營林係長 山林課長

管財擔當官室

52 39

## 참고 4 소 제기 계획 보고(민사, 행정소송)

일자리 기여 **개**

등록번호	자산관리과-11199
등록일자	2021. 06. 30.
결제일자	2021. 06. 30.
공개구분	비공개(4)



주무관	자산관리팀장	자산관리과장	자치행정국장
박연범	김상겸	김수형	전결 2021. 6. 30. 오택석
협조	김두영	황원우	범두담

- 국유재산(안산시 선감동 654-87) 변상금 처분에 따른 -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소 제기 계획 보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자 치 행 정 국  
(자 산 관 리 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 결

사 권 2021가단5198236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경기도

대표자 도지사 권한대행 오병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김종훈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범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선욱, 최윤수

변 론 종 결 2022. 5. 10.

판 결 선 고 2022. 6. 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654-87 대 719㎡에 관하여 1985. 3. 1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공유재산 매각금액 개선(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

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경기도 자산관리과

담당자 : 김예진 (031-8008-4204)

### 《 성과요약 》

- 공익사업 편입 도유지 매각 시, 시행자 제시액대로 수용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해당 감정평가서 면밀 검토 후, 저평가된 보상액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신청으로 '22년 약 7.2억원의 공유재산매각 수입증대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도유지 매각 시 시행자 측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제시한 보상액대로 매각해 왔음
- 업무를 인수받은 후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유지 감정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보상평가액이 각 개별공시지가 및 인근 보상선례 대비 저평가 되었음을 발견
  - 당시 매각 대상 도유지는 무려 186필지였음. 공직 입문 2개월 차에 태산을 맞닥뜨린 수준. 곧바로 신규자의 유일한 동업자인 문서등록대장을 검색했으나, 최근 1년 내에는 이의제기한 사례가 없었음

### □ 개선(추진)내용

#### 《 추진 경 위 》

- 2021.08.31. :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 접수(총 186필지)
- 2021.9.~12. : 감정평가서 등 제출 서류 검토
- 2021.12.20. : 손실보상 협의 미수용 검토보고(총 46필지)
- 2021.12.20. : 손실보상 협의 미수용 의견회신
- 2022.06.09. : 중토위 수용재결
- 2022.07.05. : 수용재결 이의제기 검토보고
- 2022.07.05. : 이의신청서 제출
- 2022.10.27. : 중토위 이의재결
- 2022.12.13. :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금 수령 검토보고
- 2022.12.28. : 보상금 수령 완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방문 수령)

- 본건 사업 편입에 따른 도유지의 전체 보상금액은 230억 이상으로, 단일 건만으로 당시(2021년) 공유재산매각수입 전체 세입예산액(150억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매각이었음
- 막대한 보상 액수는 물론이고 아직 시보도 해제되지 않은 신규자라는 스스로의 위치에 부담을 느꼈으나, 제시된 보상액에 이의가 있다면 보상액 규모와 담당 주무관의 연차를 막론하고 협의를 수용하지 않음이 마땅하다는 자세를 견지하기로 함
- 우선 내부 체크리스트인 「감정평가 보상액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1차 검토를 거친 뒤,

◀ **감정평가 보상액 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 ▶

- ① 적용 공시지가 시점 확인 ②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 ③ 개별공시지가 대비 120% 이상 산정 ④ 인근 유사토지 실거래가 비교

※ 평가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 기준 미충족 시 협의 불수용

- 실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해당 감정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측에 연락해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및 감정평가 당시 고려요인·특이점 등에 대해 심층 질의하였으며, 다수의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와의 유선 통화를 통해 자문을 구함
- 개별보상금액 산출 근거 및 전문가 자문의견 종합 검토 결과, 일부 도유지 (46필지)의 보상금액이 저평가되었음을 최종 확인하고 협의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 후 내부 보고함
- 검토과정이 길어지자 사업시행자(LH) 측에서 준공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곤란한 사정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이에 적정한 보상액이 산정되었다고 판단한 140필지는 우선 계약 추진함
  - 총 5차시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3~5차시에 손실보상 협의 일부 미수용 의견(46필지)을 회신하여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재결 절차 진행
- 위의 협의 미수용에 따른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에도 보상액을 세밀히 검토하여 「토지보상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함
  - 수용재결 보상금의 경우 최초 감정평가액 대비 약 3억5천만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개별공시지가 및 인근 보상선례 대비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어 중토위 이의제기 결정

- 이와 같이 총 2차례의 이의제기로 최초 보상제시액 대비 약 7억2천만원 (이자포함) 증액된 98.8억원의 세입을 증액 확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었음

■ 사 업 명 :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 ■ 대상재산 : 파주시 다율동 223-4번지 등 46필지(22,937㎡)				
(단위 : 백만원)				
최초 협의금액 ①	(1차)수용재결 보상금액 ②	(2차)이의재결 보상금액* ③	증가액 (④=③-①)	증감률
9,155	9,508	9,877	722	7.9% 증
* 이자액(9,689,745원) 포함				

### □ 개선(추진)효과

- 대규모 공익사업 내 도유지 손실보상 매각 시 세입 증진
  -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내 도유지가 편입되는 경우 처분이 의무화되어 매각이 불가피함
  - 이를 단순 반복적으로 매각하기보다는 보상평가의 적정성을 상세히 검토하고 이의신청 가능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매각함으로써 도유지를 적정가격으로 처분, 세입 증진에 적극 기여함
- 재정개선 금액 : 총 722백만원 세입 증대
  - 총 2차례에 걸친 이의제기로 토지 감정평가액을 현실화하여 기존 대비 공유재산 가치 7.2억원 상향, 최종 98.8억원 세입 확보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2백만원(기여자 김예진 외 2명)**

# 참고 1

# 편입도유지 손실소상 검토보고(협의 미수용)

## -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 편입도유지 손실보상 검토보고(미수용)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 도유지(186필지, 72,836㎡) 손실보상 협의 요청건 중 저평가된 일부 도유지(46필지, 22,938㎡)에 대해 미수용하고자 함  
\* 자산관리과-22703(21.12.17.)호, 22704(21.12.17.)호 및 22707(21.12.17.)호 관련임

### □ 사업개요

- 사업명 :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0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89호)
- 사업면적 : 7,157,666㎡(편입도유지 : 72,836㎡)

### □ 검토결과 : 손실보상 일부 미수용

전체 편입도유지 (용도폐지 및 손실보상 대상)	토지보상액 수용		토지보상액 미수용
	수용 및 소유권 이전 완료	수용 예정	
186필지, 72,836㎡	74필지 (34,840㎡)	66필지 (15,058㎡)	46필지, 22,938㎡

- 해당 도유지 46필지(22,938㎡)는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필지 중 일부로 재산관리관(도로정책과)과 무상귀속 협의결과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임  
\* 기본보상권 검토의견 제출 [도로정책과-8000(21.7.15)호, -65(21.11.4)호, -93(21.11.21)호 및 -732(21.6.9)호]
- 또한 해당 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토지수용)에 의거 사업목적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이 가능하므로 재산관리관(도로정책과)이 전체 편입 도유지(186필지, 72,836㎡)에 대하여 「용도폐지 및 손실보상」으로 의견제출 함(⇒참고 참조)
- 다만, 일부 도유지(46필지, 22,938㎡) 감정평가서 검토결과 개별공시지가 및 인근 실거래가보다 낮게 평가되어(⇒붙임2 참조), 비교표준지 선정, 유사토지의 보상시례를 반영한 기타요인, 개별요인, 지역요인 평가 등 보정치의 적용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보상금액이 과소평가 되었다고 판단되는바  
\* 예상 보상가액 대비 실제 산정금액 간 약 27억원 차이 존재  
⇒ 해당 감정평가서를 바탕으로 한 LH의 수용요청에 대해 미수용 하하고자 함

### □ 향후계획

- 토지보상액 미수용 회신(자산관리과-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시지가 이하 평가액 산정, 주변 시세 및 인근지역 보상선례 비교시 저평가  
\* 미수용 의견 회신 시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손실보상 재협의 요청 또는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른 토지 수용재결 신청 예정

### \* (참고1) 그간 협의결과

▶ 2018.10.18. : 무상귀속 협의 요청(1차) ..... (LH- 자산관리과)
▶ 2018.10.22. : 무상귀속 검토 요청 ..... (자산관리과- 도로정책과)
▶ 2020. 7.16. : 무상귀속 검토 회신(1차) ..... (도로정책과- 자산관리과)
▶ 2020. 8. 6. : 무상귀속 협의결과 회신(1차) ..... (자산관리과- LH)
▶ 2020.10.28. : 무상귀속 협의 요청(2차) ..... (자산관리과- LH)
▶ 2020.11. 3. : 무상귀속 검토 요청 ..... (자산관리과- 도로정책과)
▶ 2020.12.22. : 무상귀속 협의 요청(3차) ..... (자산관리과- LH)
▶ 2020.12.30. : 무상귀속 검토 요청 ..... (자산관리과- 도로정책과)
▶ 2021. 1.14. : 무상귀속 검토 회신(2차) ..... (도로정책과- 자산관리과)
▶ 2021. 1.18. : 무상귀속 협의결과 회신(2차) ..... (자산관리과- LH)
▶ 2021. 1.21. : 무상귀속 검토 회신(3차) ..... (도로정책과- 자산관리과)
▶ 2021. 1.22. : 무상귀속 협의결과 회신(3차) ..... (자산관리과- LH)
▶ 2021. 6. 1. : 무상귀속 협의 요청(4차) ..... (자산관리과- LH)
▶ 2021. 6. 7. : 무상귀속 검토 요청 ..... (자산관리과- 도로정책과)
▶ 2021. 6. 9. : 무상귀속 검토 회신(4차) ..... (도로정책과- 자산관리과)
▶ 2021. 6.11. : 무상귀속 협의결과 회신(4차) ..... (자산관리과- LH)
▶ 2021. 8.31. : 손실보상 협의 요청(186필지) ..... (LH- 자산관리과)

### \* (참고2) 관련법령 검토

검토대상	검토결과	근거법령
공유재산 신역역 심의	‘제 외’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제3항제5호 (공역사업에 의한 용도폐지는 산역역역)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제 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0호 (다른 법률에 의해 제정된 경우)
매각가격 평가방법	감정평가업자(2인 이상) 평가액 산출평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 (보상 평가의 액과 및 평가 등)
수익계약 가능여부	‘가 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붙임 1 보상평가서 검토 및 보상금 내역

### □ 필지별 검토

(단위: 원, 톤)

회시 소재지	지번	지목	평가 년액 (A)	예상 보상가액(저세)		표준지 공시지가	인근 보상선례	감정평가 보상가액	
				개별 공시지가	추정금액*			단가* (B)	산정금액* (A*B)
계	46필지		22,938		11,873,668,000				9,155,017,290
34	247-17	내	2,462	916,000	2,255,192,000	300,000	617,000	650,000	1,600,300,000
	251-5	내	1,106	1,050,000	1,161,300,000	300,000	617,000	650,000	718,900,000
	251-6	내	610	1,010,000	616,100,000	300,000	617,000	650,000	396,500,000
	252-12	강	138	746,000	102,948,000	300,000	617,000	650,000	89,700,000
	252-17	내	120	659,000	79,080,000	300,000	617,000	650,000	78,000,000
	252-20	강	1,224	746,000	913,104,000	300,000	617,000	650,000	795,600,000
	257-9	내	142	639,000	90,738,000	300,000	617,000	650,000	92,300,000
	257-11	내	168	639,000	107,352,000	300,000	617,000	650,000	109,200,000
	557-1	담	291	156,000	45,396,000	72,000	176,000	151,000	43,941,000
	557-2	담	1,094	156,000	161,304,000	72,000	176,000	151,000	156,134,000
	558-1	전	227	205,000	46,535,000	72,000	176,000	151,000	34,277,000
	558-2	전	1,159	205,000	237,595,000	72,000	176,000	151,000	175,009,000
	559-1	전	205	205,000	42,025,000	72,000	176,000	151,000	30,955,000
	559-2	전	1,418	205,000	290,690,000	72,000	176,000	151,000	214,118,000
	560-1	담	186	205,000	38,130,000	72,000	176,000	151,000	28,086,000
	560-3	담	1,247	205,000	255,635,000	72,000	176,000	151,000	188,297,000
	561-1	전	127	205,000	26,035,000	72,000	176,000	151,000	19,177,000
	561-3	전	781	205,000	160,105,000	72,000	176,000	151,000	117,931,000
	719	과	730	183,000	133,590,000	72,000	176,000	160,333	117,043,330
	719-1	과	3,094	183,000	555,222,000	72,000	176,000	160,333	486,451,330
	237-6	전	247	645,000	159,315,000	230,000	424,000	407,333	100,611,330
	237-7	담	111	645,000	71,595,000	230,000	424,000	407,333	45,214,000
	237-9	내	302	693,000	209,286,000	300,000	617,000	650,000	196,300,000
237-15	내	236	693,000	163,548,000	300,000	617,000	650,000	153,400,000	
237-16	내	118	665,000	78,470,000	300,000	617,000	650,000	76,700,000	
237-17	담	145	645,000	93,525,000	230,000	424,000	407,333	59,063,330	
240-10	내	511	659,000	336,749,000	300,000	617,000	650,000	332,150,000	
241-23	전	48	659,000	31,632,000	230,000	424,000	407,333	19,552,000	

회시	소재지	지번	지목	평가 년액 (A)	예상 보상가액(저세)		표준지 공시지가	인근 보상선례	감정평가 보상가액	
					개별 공시지가	추정금액*			단가* (B)	산정금액* (A*B)
54		241-25	전	15	659,000	9,885,000	230,000	424,000	407,333	6,110,000
		242-7	전	32	659,000	21,088,000	230,000	424,000	407,333	13,034,660
		242-9	전	654	659,000	430,986,000	230,000	424,000	407,333	266,396,000
		245-3	내	148	614,000	90,872,000	300,000	617,000	650,000	96,200,000
		246-1	내	679	627,000	425,733,000	300,000	617,000	650,000	441,350,000
		247-9	내	21	620,000	13,020,000	300,000	617,000	650,000	13,650,000
		247-10	내	3	916,000	2,748,000	300,000	617,000	650,000	1,950,000
		247-12	내	539	916,000	493,724,000	300,000	617,000	650,000	350,350,000
		247-14	내	76	1,010,000	76,760,000	300,000	617,000	650,000	49,400,000
		247-15	내	1,062	916,000	972,792,000	300,000	617,000	650,000	690,300,000
		775-2	담	151	221,000	33,371,000	72,000	176,000	165,000	24,915,000
		223-4	임	67	322,000	21,574,000	98,000	352,500	203,333	13,623,330
		223-11	임	263	322,000	84,686,000	98,000	352,500	203,333	53,476,660
236-17	담	35	645,000	22,575,000	230,000	424,000	407,333	14,256,660		
236-18	담	38	659,000	25,042,000	230,000	424,000	407,333	15,478,660		
236-21	내	534	659,000	351,906,000	300,000	617,000	650,000	347,100,000		
236-22	내	335	693,000	232,155,000	300,000	617,000	650,000	217,750,000		
236-23	담	159	645,000	102,555,000	230,000	424,000	407,333	64,766,000		

○ 예상 보상가액 대비 실제 산정금액 간 약 27억원 차이 존재

○ 공시지가 기준율 : '08.1.1. (최초 사업인정고시 '08. 12. 31. 직전 공시지가)

○ 감정평가 가격시점 : '21. 9. 1.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 추정금액 :  $\text{매각년액(원)} \times \text{개별공시지가(원)}$

\* 단가 :  $\text{「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2인 이상)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출평균치}$

\* 산정금액 :  $\text{매각년액(원)} \times \text{보상단가(원)} \times \text{원단위 절사}$



경기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유)

제목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도유지 손실보상 협의 의견회신(일부 미수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LH 인천파주보상토지판매부-4728('21. 8. 30.)호 및 -5357('21. 10. 7.)호와 관련입니다.
3.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도유지의 손실보상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공시지가 이하 보상액 산정 등)가 있어 손실보상 일부 미수용 의견을 회신합니다.

○ 미수용 대상 필지: 세부내용 '붙임' 참고

소재지	지번	면적(㎡)		비고
		공부	편입	
파주시 다율동	247-17번지 등 46필지	22,938	22,938	

붙임 손실보상 미수용 필지 목록 1부, 끝.

경기도



주무관 김예진      자산관리팀장 김상겸      자산관리과장 기이도      전결 2021. 12. 20.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2837      (2021. 12. 20.)      접수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호원로 1, (매신로3가)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08-4204      팩스번호 031-8008-4219      / [yjinkim@gg.go.kr](mailto:yjinkim@gg.go.kr)      / 부분공개(5)

행복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

# 참고 3 수용재결 이의제기 검토보고

## -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 수용재결 이의제기 검토보고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손실보상 협의 미수용한 도유지(46필지, 22,938㎡)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결과(사건번호: 22수용0031)에 대하여 이의제기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사업명 :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면적 : 7,157,666㎡(전체 편입도유지 : 72,836㎡)

### < 추진 경위 >

- ▶ 2021. 8.31. : 손실보상 협의 요청(186필지) (LH→ 자산관리과)
- ▶ 2021.11.10. : 손실보상 협의 수용(1차, 37필지) (자산관리과→ LH)
- ▶ 2021.11.24. : 손실보상 협의 수용(2차, 37필지) (자산관리과→ LH)
- ▶ 2021.12.20. : 손실보상 협의 미수용(3~5차, 46필지) (자산관리과→ LH)
- ▶ 2021.12.27. : 손실보상 협의 수용(3~5차, 66필지) (자산관리과→ LH)
- ▶ 2022. 2. : 수용재결 신청 (LH→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 2022. 6. 9.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 ▶ 2022. 6.10. : 수용재결서 검토 송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자산관리과)
- ▶ 2022. 6.16. : 수용재결서 등기 수령

### □ 대상재산

- 소재지 : 파주시 다율동 223-4번지 등 46필지
- 면적 : 22,938㎡(46필지)
- 보상금액(수용재결) : 9,508,342,000원

소재지	면적(㎡)	최초 협의금액(원)	수용재결 보상금액(원)	증가액(원)	증가율
파주시 다율동 223-4번지 등 46필지	22,938	9,155,017,290	9,508,342,000	353,324,710	동 3.9%

\* 필지별 세부 검토 내역 (붙임1) 참고

### □ 검토결과 : 이의신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과,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3-5차)에 편입된 도유지(46필지, 22,938㎡)의 수용재결 보상금액이 최초 감정평가액 대비 353,324,710원 증가(3.9%)하였으나,
- 파주시 다율동 223-4번지 등 35필지의 수용재결 평가금액이 개별 공시지가 이하 금액으로 산정되었고 인근 보상선례 대비 저평가 되는 등 적절한 토지의 가격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과의 수용이 불가하므로 「토지보상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함

### □ 향후계획

- 이의신청서 제출 : 자산관리과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붙임 1 보상평가서 검토 및 보상금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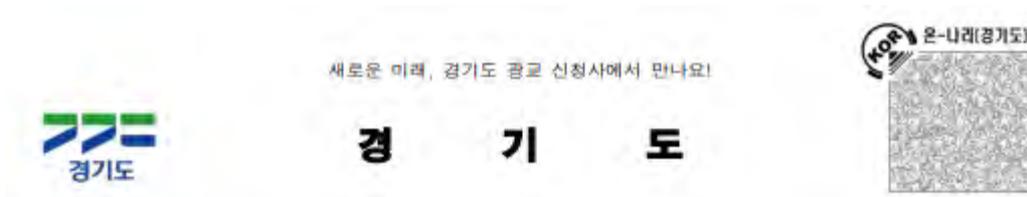
#### □ 필지별 검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개별 공시지가(원)	인근 보상선례	최초 협의금액(원) 단가	수용재결 보상금액(원) 단가	증가율	비고	
계	46필지	22,938					9,155,017,290	9,508,342,000	3.9%		
1	223-4	필	67	302,000	352,500	203,333	13,823,330	211,500	14,170,500	4.0%	5차
2	236-17	필	35	645,000	424,000	407,333	14,256,660	424,000	14,840,000	4.1%	5차
3	236-18	필	38	658,000	424,000	407,333	15,478,660	424,000	16,112,000	4.1%	5차
4	237-6	전	247	640,000	424,000	407,333	100,611,330	424,000	104,728,000	4.1%	4차
5	237-7	필	111	645,000	424,000	407,333	45,214,000	424,000	47,264,000	4.1%	4차
6	237-9	대	302	694,000	617,000	650,000	196,300,000	674,500	203,699,000	3.8%	4차
7	237-15	대	236	693,000	617,000	650,000	153,400,000	674,500	159,182,000	3.8%	4차
8	237-16	대	118	685,000	617,000	650,000	76,700,000	674,500	79,591,000	3.8%	4차
9	240-10	대	511	659,000	617,000	650,000	332,150,000	674,500	344,669,500	3.8%	4차
10	241-23	전	48	669,000	424,000	407,333	19,552,000	424,000	20,352,000	4.1%	4차
11	242-7	전	32	669,000	424,000	407,333	13,034,660	424,000	13,568,000	4.1%	4차
12	245-3	대	148	614,000	617,000	650,000	96,200,000	674,500	99,826,000	3.8%	4차
13	246-1	대	679	627,000	617,000	650,000	441,350,000	674,500	457,385,500	3.8%	4차
14	247-9	대	21	620,000	617,000	650,000	13,850,000	674,500	14,164,500	3.8%	4차
15	247-10	대	3	916,000	617,000	650,000	1,850,000	674,500	2,023,500	3.8%	4차
16	247-12	대	539	916,000	617,000	650,000	350,350,000	674,500	363,555,500	3.8%	4차
17	247-14	대	76	1,016,000	617,000	650,000	49,400,000	674,500	51,262,000	3.8%	4차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개별 공시지가(원)	인근 보상선례	최초 협의금액(원) 단가	수용재결 보상금액(원) 단가	증가율	비고	
41	560-3	필	1547	295,000	176,000	151,000	188,297,000	176,000	197,026,000	4.8%	3차
42	561-3	전	781	295,000	176,000	151,000	117,931,000	176,000	123,368,000	4.6%	3차
43	파주시 719-1	과	3034	183,000	176,000	160,333	486,451,330	167,500	508,195,000	4.5%	3차
44	다율동 236-21	대	534	659,000	617,000	650,000	347,100,000	672,000	368,848,000	3.4%	5차
45	241-25	전	15	659,000	424,000	407,333	6,110,000	424,000	6,360,000	4.1%	4차
46	247-15	대	1002	316,000	617,000	650,000	690,300,000	672,000	713,664,000	3.4%	4차

\* 최초 사업인정고시일(2008. 12. 31.) 직전 공시된 공시지가(2008. 1. 1.) 기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개별 공시지가(원)	인근 보상선례	최초 협의금액(원) 단가	수용재결 보상금액(원) 단가	증가율	비고	
18	251-5	대	1106	1,050,000	617,000	650,000	718,900,000	674,500	745,997,000	3.8%	3차
19	251-6	대	610	1,010,000	617,000	650,000	396,500,000	674,500	411,445,000	3.8%	3차
20	252-12	전	138	746,000	617,000	650,000	89,700,000	674,500	93,081,000	3.8%	3차
21	252-17	대	120	659,000	617,000	650,000	78,000,000	674,500	80,940,000	3.8%	3차
22	257-9	대	142	639,000	617,000	650,000	92,300,000	674,500	95,779,000	3.8%	3차
23	257-1	필	291	158,000	176,000	151,000	43,941,000	158,000	45,978,000	4.6%	3차
24	258-1	전	227	295,000	176,000	151,000	34,277,000	158,000	36,866,000	4.6%	3차
25	259-1	전	205	295,000	176,000	151,000	30,955,000	158,000	32,390,000	4.6%	3차
26	260-1	필	186	295,000	176,000	151,000	28,086,000	158,000	29,388,000	4.6%	3차
27	261-1	전	127	295,000	176,000	151,000	19,177,000	158,000	20,066,000	4.6%	3차
28	719	과	730	183,000	176,000	160,333	117,043,330	167,500	122,275,000	4.5%	3차
29	775-2	필	151	221,000	176,000	165,000	24,915,000	165,500	24,990,500	0.3%	4차
30	223-11	필	263	322,000	352,500	203,333	53,476,660	204,000	53,652,000	0.3%	5차
31	236-22	대	335	693,000	617,000	650,000	217,750,000	674,500	225,957,500	3.8%	5차
32	238-23	필	159	645,000	424,000	407,333	64,766,000	424,000	67,416,000	4.1%	5차
33	237-17	필	145	645,000	424,000	407,333	59,063,330	424,000	61,480,000	4.1%	4차
34	242-9	전	654	659,000	424,000	407,333	266,396,000	424,000	277,296,000	4.1%	4차
35	247-17	대	2462	916,000	617,000	650,000	1,000,300,000	674,500	1,060,619,000	3.8%	3차
36	252-20	전	1234	746,000	617,000	650,000	795,600,000	674,500	825,968,000	3.8%	3차
37	257-11	대	188	639,000	617,000	650,000	109,200,000	674,500	113,316,000	3.8%	3차
38	257-2	필	1034	156,000	176,000	151,000	156,134,000	158,000	163,372,000	4.6%	3차
39	258-2	전	1159	295,000	176,000	151,000	175,009,000	158,000	183,122,000	4.6%	3차
40	259-2	전	1418	295,000	176,000	151,000	214,118,000	158,000	224,044,000	4.6%	3차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경유)

제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22수용0031)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18955(2022. 6. 10.)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3~5차) 수용재결 결과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임과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1. 이의신청서 1부(직인날인본 별송).  
2. 수용재결서 1부. 끝.

경기도



주무관 **김예진**      자산관리팀장 **김상겸**      자산관리과장 **기이도**      전결 2022. 7. 5.

협조자

서행 자산관리과-12228      (2022. 7. 5.)      접수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9층 자산관리과 (이의등, / http://www.gg.go.kr  
경기도청)

전화번호 031-8008-4204      팩스번호 031-8008-4219 / yjinkim@gg.go.kr      / 비공개(5)

행복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

# 참고 5 최종 보상금 수령 검토보고

## -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3-5차) - 편입도유지 재결보상금공탁금 수령 검토보고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도유지 보상평가액 저평가로 인한 **도(자산관리과)의 이의제기에 따른 중도위의 재결 결과 보상금이 최초 손실 보상금 대비 약 7억 1천만원 증가**되어 이를 수용하여 **보상금을 수령**코자 함

### □ 공탁사항

- 사업명 :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상재산 : 파주시 다율동 223-4번지 등 46필지(22,938㎡)
- 보상금액(공탁금) : 총 9,867,271,600원(이자별도)
- 최초 손실보상금 대비 약 7억 1천만원 증(↑7.8%)

(단위 : m<sup>2</sup>, 원)

최초협의금액 (A)	(1차)수용재결 보상금액(B)	(2차)이의재결 보상금액(C)	증가액 (D=C-A)	증감률
9,155,017,290	9,508,342,000	9,867,271,600	712,254,310	7.8% 증

☞ 필지별 세부 검토내역 (붙임1) 참조

### □ 추진경위

- ▶ 2021. 8. 31. : 손실보상 협의 요청(186필지) (LH→ 자산관리과)
- ▶ 2021.11.10. : 손실보상 협의 수용(1차, 37필지) (자산관리과→ LH)
- ▶ 2021.11.24. : 손실보상 협의 수용(2차, 37필지) (자산관리과→ LH)
- ▶ 2021.12.20. : **손실보상 협의 미수용**(3-5차, 46필지) (자산관리과→ LH)
- ▶ 2021.12.27. : 손실보상 협의 수용(3-5차, 66필지) (자산관리과→ LH)
- ▶ 2022. 2. : 수용재결 신청 (LH→ 중도위)
- ▶ 2022. 6. 9.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 사건번호 : 22수용0031
- ▶ 2022. 6.10. : 수용재결서 정본 송부 ※ 중도위 사무국-18955호
- ▶ 2022. 7. 5. : **이의신청서 제출** (자산관리과→ 중도위)
- ▶ 2022. 7.26. : 수용재결금 공탁 ※ 사건번호 : 22이중0358
- ▶ 2022.10.27.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 중도위 사무국-35781호
- ▶ 2022.10.28. : 이의재결서 정본 송부
- ▶ 2022.11.21. : 이의재결금 공탁

### □ 검토의견

- 파주시 다율동 223-4 등 46필지는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필지로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인**
- 다만 **최초 손실보상 협의** 당시 적절한 토지의 가격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협의 미수용 의견을 확신했고, 이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토지보상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 처리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검토 결과 일부 토지의 평가금액이 개별공시지가 및 인근 보상선례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었다고 판단되어 재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쳐 해당 보상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재평가한 결과 **총 712,254,310원 증액된 금9,867,271,600원으로 손실보상금이 변경됨**
- 본 건은 재결 절차 완료 후 「토지보상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탁 중인 사항이므로 **이의재결 결과를 수용**하고 **공탁금을 수령**하고자 함

### □ 향후계획

- 공탁금 출금 청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방문) : '22. 12월 중  
※ 준비서류 - 신분증, 공탁금 출금 청구서류(위임장 등)
- 공탁금 수령 후 이자비용 포함하여 사후 징수결의 : '22. 12월 중

### 붙임 1 보상평가서 검토 및 보상금 내역

#### □ 필지별 검토의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최초 협의금액(원)		수용재결 보상금액(원)		이의재결 보상금액(원)		증감률	비고
					단가	상당금액	단가	상당금액	단가	상당금액		
					9,155,017,290		9,508,342,000		9,867,271,600	7.8%		
1	다율동	223-4	필	67	203,333	13,823,330	211,600	14,170,500	222,600	14,814,500	9.5%	3차
2	다율동	236-17	필	35	467,333	14,236,660	424,000	14,840,000	436,900	15,291,500	7.3%	3차
3	다율동	236-18	필	38	467,333	15,476,660	424,000	16,118,000	436,900	16,602,500	7.3%	3차
4	다율동	237-1	필	247	467,333	100,813,300	424,000	104,728,000	436,900	107,914,500	7.3%	3차
5	다율동	237-7	필	111	467,333	45,214,000	424,000	47,064,000	436,900	48,495,900	7.3%	4차
6	다율동	237-11	필	302	650,000	196,300,000	674,500	203,499,000	700,550	211,566,000	7.8%	4차
7	다율동	237-15	필	296	650,000	153,400,000	674,500	159,195,000	700,550	165,529,500	7.8%	4차
8	다율동	237-16	필	118	650,000	76,700,000	674,500	79,591,000	700,550	82,664,900	7.8%	4차
9	다율동	240-10	필	511	650,000	332,150,000	674,500	344,669,500	700,550	357,981,500	7.8%	4차
10	다율동	241-25	필	48	467,333	19,832,000	424,000	20,352,000	436,900	20,911,200	7.3%	4차
11	다율동	242-7	필	32	467,333	13,834,660	424,000	13,568,000	436,900	13,980,800	7.3%	4차
12	다율동	245-3	필	148	650,000	96,200,000	674,500	99,826,000	700,550	103,681,400	7.8%	4차
13	다율동	246-1	필	878	650,000	441,350,000	674,500	457,985,500	700,550	475,673,400	7.8%	4차
14	다율동	247-9	필	21	650,000	13,550,000	674,500	14,164,500	700,550	14,711,550	7.8%	4차
15	다율동	247-10	필	3	650,000	1,950,000	674,500	2,023,500	700,550	2,101,650	7.8%	4차
16	다율동	247-12	필	339	650,000	360,300,000	674,500	363,335,500	700,550	377,596,000	7.8%	4차
17	다율동	247-14	필	76	650,000	49,400,000	674,500	51,262,000	700,550	53,241,800	7.8%	4차
18	다율동	251-5	필	1106	650,000	718,900,000	674,500	745,997,000	700,550	774,908,300	7.8%	3차
19	다율동	251-8	필	310	650,000	396,300,000	674,500	411,448,000	700,550	427,335,500	7.8%	3차
20	다율동	252-12	필	138	650,000	89,700,000	674,500	93,081,000	700,550	96,675,900	7.8%	3차
21	다율동	252-17	필	120	650,000	78,000,000	674,500	80,940,000	700,550	84,096,000	7.8%	3차
22	다율동	257-9	필	142	650,000	92,300,000	674,500	95,779,000	700,550	99,476,100	7.8%	3차
23	다율동	357-1	필	291	151,000	43,941,000	158,000	45,975,000	162,500	47,287,500	7.6%	3차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최초 협의금액(원)		수용재결 보상금액(원)		이의재결 보상금액(원)		증감률	비고
					단가	상당금액	단가	상당금액	단가	상당금액		
24	다율동	558-1	필	227	151,000	34,277,000	158,000	35,886,000	162,500	36,887,500	7.6%	3차
25	다율동	559-3	필	205	151,000	30,955,000	158,000	32,390,000	162,500	33,212,500	7.6%	3차
26	다율동	560-1	필	186	151,000	28,086,000	158,000	29,398,000	162,500	30,225,000	7.6%	3차
27	다율동	561-1	필	127	151,000	19,177,000	158,000	20,096,000	162,500	20,637,000	7.6%	3차
28	다율동	719	필	730	160,333	117,043,330	167,500	122,275,000	173,950	126,983,500	8.5%	3차
29	다율동	775-2	필	151	165,000	24,915,000	165,500	24,990,500	175,000	26,425,000	6.1%	4차
30	다율동	923-11	필	263	293,333	53,476,660	294,000	53,652,000	295,600	58,543,800	9.1%	3차
31	다율동	236-22	필	335	650,000	217,750,000	674,500	225,997,500	700,550	234,684,500	7.8%	3차
32	다율동	236-23	필	159	467,333	64,766,000	424,000	67,416,000	436,900	69,467,100	7.3%	3차
33	다율동	237-17	필	145	467,333	59,663,330	424,000	61,480,000	436,900	63,350,600	7.3%	4차
34	다율동	242-9	필	654	467,333	266,396,000	424,000	277,296,000	436,900	285,732,600	7.3%	4차
35	다율동	247-17	필	2462	650,000	1,600,300,000	674,500	1,660,619,000	700,550	1,724,734,100	7.8%	3차
36	다율동	252-3	필	1124	650,000	730,600,000	674,500	825,386,000	700,550	857,813,700	7.8%	3차
37	다율동	257-11	필	168	650,000	109,200,000	674,500	113,316,000	700,550	117,662,400	7.8%	3차
38	다율동	357-2	필	1034	151,000	156,134,000	158,000	163,372,000	162,500	168,625,000	7.6%	3차
39	다율동	558-2	필	1139	151,000	171,909,000	158,000	181,122,000	162,500	188,337,000	7.6%	3차
40	다율동	559-2	필	1418	151,000	214,118,000	158,000	224,044,000	162,500	230,425,000	7.6%	3차
41	다율동	560-3	필	1247	151,000	188,297,000	158,000	197,026,000	162,500	202,637,500	7.6%	3차
42	다율동	561-3	필	781	151,000	117,851,000	158,000	123,396,000	162,500	126,912,500	7.6%	3차
43	다율동	719-1	필	3034	160,333	486,851,330	167,500	509,195,000	173,950	521,794,000	9.3%	3차
44	다율동	236-21	필	534	650,000	347,100,000	672,000	358,848,000	700,550	374,093,700	7.8%	3차
45	다율동	241-25	필	15	467,333	6,110,000	424,000	6,360,000	436,900	6,553,500	7.3%	4차
46	다율동	247-15	필	1262	650,000	820,300,000	672,000	873,664,000	700,550	913,984,100	7.8%	4차

### 3

## 공정과세 위해 “이것”만 바꿨을 뿐인데, 누락세원 발국 역대 최대

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경기도 조세정의과

담당자 : 김명희 (031-8008-2355)

### 《 성과요약 》

- 과세인프라 및 유관기관의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감면 부동산의 의무 사항 이행여부를 심층·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고도의 사후관리 조사를 통한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 적발하여 취득세 등 도세 211억원 수입증대 [전년 (98억)대비 215%, 최근 5년 평균(93.4억)대비 226%('17년 105억, '18년 107억, '19년 57억, '20년 100억, '21년 98억)]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출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추가세원 확보 절실
- 계속되는 지능적·악의적인 탈루행위로 세원일실 및 과세불공정 초래
  - 지방세를 부정하게 감면받거나, 감면 혜택만 받고 고의적으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세금탈루 행위에 엄정 대응 필요 ↑
- 방대한 세무민원 대비 인력 부족 등으로 시·군의 개별적 사후관리 조사 한계 및 역량 차이 발생
  - 감면 부동산의 사후관리 방식이 현장·항공사진 확인 등 고전적인 조사방식에 그쳐 세원누락 발생 가능성 ↑

### □ 개선(추진)내용

- 경기도 11개 시·군에서 최근 5년간('17.1.1~ '21.12.31) 감면된 취득세 46,862건 사후관리 대상 선정 및 조사 실시
  - 과세기준이 다른 지방세목들(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과 다수의 매칭 작업을 통해 감면 배제 가능성이 높은 조사대상 선정
- 선정된 조사대상을 관계부처의 행정 데이터와 결합하여 감면 부동산의 취득부터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전체과정을 심층 분석하는 고도의 사후관리 조사방식 도입

- 단순 현장 확인에 그치는 사후관리 조사방식에서 더 나아가 국세청 과세정보,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사회보험 부과내역 등을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조사를 통해 감면 부동산의 실질적인 용도를 확인하여 감면 적정성을 종합·다각적으로 검토
- 관계부서의 인·허가 자료 활용 및 세목간 교차검증, 과세자료 1:1 매칭 검토 등을 통한 취득세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자 적발

○ 주요 사례

- (사례①) 제조업 최초창업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 사례

구분	조사방법	조사결과
기존방식	사업자등록증 및 현장사진 확인	특이사항 없음, 감면 유지
<b>쭈쭈한 과세그물망 조사</b>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하여 집중조사	등록증에 기재된 업종과 달리 상품매출 100%로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 발각 (도매업은 감면업종에 해당 X) <b>(개선결과) 취득세 6억 원 추징</b>

※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감면요건이 있는 다수의 감면 조항에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

- (사례②) 자경농민 영농목적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 사례

구분	조사방법	조사결과
기존방식	농지원부 및 현지출장 확인	특이사항 없음, 감면 유지
<b>쭈쭈한 과세그물망 조사</b>	농업 공익직불금 등 국가보조금 지급내역 활용하여 집중조사	제3자의 공익직불금 수령 내역 발견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경작 사실 확인 <b>(개선결과) 취득세 5,000만원 추징</b>

□ 개선(추진)효과

○ 재정개선효과

- 고전적인 조사방식에선 발견하기 어려운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 적발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자에 대한 중점 조사로 미신고된 취득세 색출로 자칫 세수 일실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누락 세원을 발굴

○ 재정개선금액 : 211억원의 세입증대

[전년(98억원)대비 215%, 최근 5년 평균 대비 226%]

- 취득세 등 142억원 징수 완료(2023.1.31. 기준)
- 미납 또는 체납 상태의 69억원은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 예정

(단위 : 원)

시·군	총 부과 도세	징수완료 세액	미납 세액
계	21,174,147,496	14,202,083,320	6,972,064,176
김포시	1,835,534,211	1,604,459,560	231,074,651
화성시	5,584,605,690	4,014,400,610	1,570,205,080
남양주시	2,523,585,392	2,497,143,800	26,441,592
양주시	2,027,062,188	1,420,107,260	606,954,928
안산시	2,136,641,590	1,931,631,700	205,009,890
연천군	417,689,914	283,554,870	134,135,044
의왕시	543,857,725	518,525,350	25,332,375
부천시	1,274,636,127	801,840,930	472,795,197
포천시	1,850,795,280	861,124,420	989,670,860
구리시	467,403,370	149,391,720	318,011,650
광주시	2,512,336,009	119,903,100	2,392,432,909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3백만원(기여자 김명희 외 6명)**

국민일보

www.kmib.co.kr

## '무늬만 농지' 등 세금 탈루...경기도, 무더기 적발

입력 2022-12-19 12:22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고 유효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종과세를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해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세금 탈루행위를 경기도가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해 1만2383건의 세금 탈루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총 302억원이다.

이는 전년(139억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원, 2019년 65억원, 2020년 127억원) 가운데 최대치다.

## 4

# 국내최초, 등기된 동산 추적조사로 체납액 징수

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경기도 조세정의과

담당자 : 최수현 (031-8008-3547)

### 《 성과요약 》

- (국내 최초) 체납자의 '동산(채권) 등기부등본' 전수조사로 494명 11,185건의 등기 재산을 적발하고, 수색 및 압류추심을 통하여 178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 징수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수색 및 동산 압류는 체납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가장 강력한 체납 처분중의 하나로서, 전국의 모든 징수부서(국세청 포함)는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을 수색하고 귀금속, 명품류 등 발견된 고가의 동산을 압류하고 있음
- (문제점) 하지만, 그간 체납자에 대한 수색과 동산 압류는 거주지에 국한되어 진행,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있는 은닉성 동산은 현실적으로 체납처분 사각지대였음

- 제3의 장소에 고가 동산 은닉 정황이 있더라도 찾을 방법 無
- '수색 및 동산 압류 = 거주지' : 그간 징수공무원들의 통상적 관례
- ※ 국세청 포함 전국 모든 체납징수 기관의 공통된 문제점

## □ 개선(추진)내용 <'22. 4월 ~ '22. 12월>

- 수입증대 개선방안 및 효과 [국내최초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 정밀조사]
- (착안) 2012년 신설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 원자재, 악기 및 매출채권 등 모든 동산(채권)은 부동산처럼 등기 개설 가능
- 체납자가 개설한 고가의 '동산(채권)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및 추적을 통해 **확인된 물품 보관장소 수색, 압류(점유)** 등 강력한 체납처분
- (개선 방안) '동산(채권) 등기부등본'은 조세 관련 과세자료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체납징수를 위한 전수조사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추진

« 추진 방안 요약 »

1. 법원행정처 사전 업무협약 : 근거 법령 확인 및 추진 범위 협의
2. 행정안전부 사전심사 : 법령에 따라, 道 상위기관에 사업 적법성 사전심사 필수
3. 법원행정처 등기전산국 활용 : 사전심사 결과 ‘적법’ 득 후, 등기자료 요청
4. 등기자료 활용, 동산 보관장소 수색 및 압류 등 체납처분

□ 개선(추진)효과

○ 수입 증대 효과 및 재정개선

- 체납자 494명[체납액 190억] 및 동산·채권 등기자산 11,185건 적발
- 수색·압류 등 체납처분 통해 178명으로부터 14억 체납액 징수

※ 국세·지방세 통틀어 국내 최초 신 징수기법

« 담보별 적발(징수) »

구 분	적발 내역			징수	
	적발자산(건)	체납자(명)	체납액(백만원)	체납자(명)	징수액(백만원)
합 계	11,185	494	18,950	178	1,331
동 산	10,811	461	17,960	162	1,278
채 권	374	33	990	16	53

○ 주요 적발 사례

- (체납자 A <자동차세 등 1천만 원>) 임대업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수차례 납부 독려했으나 그때마다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고 납세 회피, 이번 추적조사로 수천만 원 호가하는 카라반 적발·압류
- (체납자 B <지방소득세 등 8백만 원>) 부천시에 거주하며 2020년부터 8백만원을 체납했으나, 고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 등 여러 악기를 구매하여 동산 등기한 사실 적발·압류 조치
- (체납자 C <재산세 등 5천만 원>) 2017년부터 재산세 등 5천만 원을 체납했으나, 이번 추적조사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여러 대의 크레인이 등기된 것이 적발되어 모두 압류 조치

## □ 파급 효과

- 행정안전부 사전심의 과정에서 이번 신 징수기법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되어 현재 국세청 포함 전국 대부분 기관에서 추진 준비 중
- 제도화 여부
  - 체납자의 동산 등기자료 추적조사는 기존 사례가 없었던 신 징수기법이며, 현재 경기도의 최초 성공 사례<sup>2)</sup>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검토 중
    - ※ 행정안전부 사전심의 과정에서 우수한 신 체납징수 기법으로 전국에 전파됨
  - 이와 별도로, 전국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자의 동산 등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중**(행정안전부 검토 중)
  - 「지방세기본법」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 시기 등) 개정을 통해 과세자료 범위에 ‘동산 등기자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 ex) 부동산등기자료의 경우 과세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수시로 자료 확인 가능

### « 그간 주요 추진사항 »

- ① '22. 1. 3. ~ : 동산(채권) 등기자료 확보를 위한 법령검토
- ② '22. 2. 7. ~ : 법원행정처 협의 [법적 근거 미비로 협의 실패]
  - ※ 수차례 협의 및 설득으로, 「부동산 등기법」 준용을 통한 **자료 제공 협의 완료**
- ③ '22. 3. 7. ~ :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사전심사 의뢰 및 **사업 적법성** 得
- ④ '22. 5. 2. ~ : 법원행정처(등기전산국) 동산 등기자료 조사
- ⑤ '22. 5.25. ~ : 구체적 조사범위 등 도, 법원행정처 간 최종 업무협의
- ⑥ '22. 5.27. ~ : 동산(채권) 등기자료 전수조사(추적조사) 실시
- ⑦ '22. 7. 4. : 체납자 개설 동산(채권) 등기자료 확보 완료
  - ※ 체납자 18만명 중, 494명 11,185건의 동산(채권) 등기자료 확보
- ⑧ '22. 8. 1. ~ : 보관장소 수색 및 압류 등으로 **체납액 14억 징수**

2) 추진을 위한 근거 법령, 행정안전부 사전심의 서식 및 절차, 체납처분 방법 등

# ○ 국내 최초 선진사례 성과에 따른 KBS 등 100여 언론사 홍보

**KBS NEWS**

크레인에 바이올린까지...경기도, 등기 동산 추적해 14억 원 징수

경기, 공정거래 추진안 발표  
가상자산까지 추적해 압류-추심  
등산-채권 등기부도 징수에 활용  
위키 징후 데이터로 복지 대상 발굴

**한겨레** 세상을 바꾸는 빛

카라반·바이올린·한우도 압류했다...세금채납자 '꿈작 마'

경기도, 등기된 동산 추적조사-494명 적발  
주거지 외 보관장소 수색 압류 '열정적' 성과

**동아일보** **구독**

**“악성 체납은 엄벌, 생계형은 복지 지원”**

경기, 공정거래 추진안 발표  
가상자산까지 추적해 압류-추심  
등산-채권 등기부도 징수에 활용  
위키 징후 데이터로 복지 대상 발굴

악성 체납자 징수 강화	가상화폐 거래소와 압류 제도
가상화폐	* 가상화폐 거래소와 압류 제도
등산(채권)	* 채권자 등산권한 반납을 통해 가상화폐 추적 조사 후 압류, 압류 추심 등 진행
생활형 체납자 지원	* 의료기기, 바이올린 등 고가품의 경우 등산채권 등기부등본을 만든 후 압류
	지원액 3000만 원 이상 고질·악성 체납자 출구전략 도입
	간호사 채용, 교육 연차 등 3000만 원가량 위키 징후 데이터 활용
	복지 위키 가구 파악 시 주거-생계 지원이 가능

경기, 공정거래 추진안 발표  
가상자산까지 추적해 압류-추심  
등산-채권 등기부도 징수에 활용  
위키 징후 데이터로 복지 대상 발굴

경기, 공정거래 추진안 발표  
가상자산까지 추적해 압류-추심  
등산-채권 등기부도 징수에 활용  
위키 징후 데이터로 복지 대상 발굴

**헤럴드경제**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간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산을 전수조사해 494명, 1만 1185건의 등기자료를 적발하고 보관장소 수색과 압류 등을 통해 178명으로부터 14억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체납자 494명의 등기내역을 살펴보면, 크레인 9명, 목재류 2명, 원자재 17명, 매출채권 33명을 비롯해 한우나 돼지 등 가축을 등기한 체납자도 2명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산업용 기계는 무려 410명이 등기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190억 원에 달한다.

안산에 거주하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자동차세 1000만 원을 체납했다. 안산시는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려했으나 그때마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라고 돌려댔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번 추적조사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카라반을 등기한 것이 적발돼 압류 조치됐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B씨는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800만 원을 체납했다. B씨는 수백만 원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구매하는 등 수중에 돈이 있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압류 조치됐다.

**아시아경제** 사회 경기도, 체납자 '등기 동산' 추적해 14억 징수

경기도, 체납자 '등기 동산' 추적해 14억 징수

최종수취 2023.02.21 08:08 기사입력 2023.02.21 08:08

**프리시안** **프리시안** **프리시안**

경기도, 중장비·악기 등 체납자 등기 동산 추적 14억원 징수

전승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2.21. 10:20:56

경기도가 중장비, 악기, 가축 등 체납자의 등기 동산을 조사해 체납액 14억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2년 신설된 '등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기계 등 동산도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도가 국내 최초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2백만원(기여자 최수헌 외 5명)**

**참고 1**

**‘동산(채권)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유형별 세부 내역**

구분		체납자(명)	적발자산(건)	체납액(백만원)
<b>합계</b>		<b>494</b>	<b>11,185</b>	<b>18,950</b>
동 산	소 계	461	10,811	17,960
	산업용 기계	410	9,790	12,215
	원자재	17	61	620
	의료기	3	68	62
	가축	2	13	26
	크레인 등	9	22	26
	목재류	2	312	473
	일반동산	18	545	4,538
채 권	소 계	33	374	990
	공사대금	11	49	304
	매매대금	12	38	491
	임대차보증금	4	16	107
	기타채권	6	271	88

###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登記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①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제57조(준용규정) 담보등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 ○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치고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지방세징수법」

제38조(압류조서)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質權)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①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그 질권의 대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질권의 대상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질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질권의 대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압류하여야 한다.

## 5 부동산 임대차 신고정보 활용한 세외수입 맞춤 징수

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경기도 조세정의과
담당자 : 양회원 (031-8008-2383)

### 《 성과요약 》

- 전국 최초 세외수입 체납자 임대보증금 압류를 통해 총 1,748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804명의 체납액 37억 7천만원 징수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납부여력이 충분함에도 본인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없이 고액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 존재
  - 체납자 정보부족으로 시효완성 정리보류 등 체납처분 한계 발생

### □ 개선(추진)내용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6조의2(주택임대차계약의신고) 조항에 따라 '21. 6월부터 체결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의무 대상이 된 점에 착안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국토부 주택임대차지원팀에 체납자 임대보증금 정보 요청
- 확보된 정보를 통해 체납자 납부여력을 파악하여 고액 보증금의 경우 가택수색과 보증금 압류 병행, 주거취약 계층의 경우 정리보류(결손) 및 복지연계 지원

### □ 개선(추진)효과

- 도시군 세외수입 체납자 24,782명(체납액 899억원)이 보유한 보증금(11,522억원)을 선별 체납처분 진행하여 총 1,748명, 37억원 징수
- 생계형 체납자 275명(체납액 6억원) 정리보류 완료 (결손)
- 쪽방 등 주거 취약계층 체납자 16명 발굴 시·군 복지연계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2백만원(기여자 이호성 외 5명)

□ 사례명 : - 체납징수도 'BESPOKE' 시대 -  
임대차 신고정보 활용한 세외수입 맞춤 징수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 의 : (전국 최초) 임대차 신고정보 활용한 세외수입 맞춤 징수</li> <li>○ 기 간 : 2022.4.20. ~ 8.30.</li> <li>○ 내 용 : 실태조사 결과 호화생활자 등은 보증금 압류를 통한 체납징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정리보류 및 복지 연계</li> </ul>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4.31. : 도내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 파악</li> <li>○ 2022.5.24. : 체납자 임대차 신고정보 확인 요청(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li> <li>○ 2022.6.10. : 체납자 임대차 신고정보 확보(24,782명, 보증금 11,522억원)</li> <li>○ 2022.6.22. : 시군 보증금 정보 활용 체납처분 및 복지 연계 진행 통보</li> <li>○ 2022.8.30. : 도 체납자 보증금 압류</li> </ul>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이 확인되지 않은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체납자의 납부여력(징수독촉 또는 정리보류 등을 위한)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함.</li> <li>○ 2021년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체납자의 임대차 신고정보도 징수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음에 착안.</li> <li>○ 체납자 임대차 신고정보 기반으로 징수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복지 연계</li> </ul>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대상임에 착안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 체납자 납부여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가택수색, 보증금 압류, 복지연계, 정리보류 등 (결손) 해당 정보를 이용한 신속한 맞춤 징수 가능</li> <li>○ 이에 조속한 실거주지(보증금 계약주소지) 확인으로 가택수색 실시 가능하며 불능 시 보증금 압류로 체납처분 진행하여 체계적 체납관리</li> <li>○ 납부여력 없는 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 정리보류 등 효율적 관리 가능</li> </ul>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내(시·군 포함) 세외수입 체납자 24,782명(체납액 899억원)이 보유한 보증금(11,522억원)을 선별 체납처분 진행하여 총 1,748명으로부터 37억원 징수</li> <li>○ 보증금 정보를 활용 275명(체납액 6억원) 정리보류 완료 (결손)</li> <li>○ 쪽방 등 주거 취약계층 체납자 16명 발굴 시·군 복지연계</li> </ul>

---

**- 체납징수도 'BESPOKE' 시대 -**  
**[(전국최초) 임대차 신고정보 활용한 세외수입 맞춤 징수]**

---

## 1. 과제 선정 내용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이 확인되지 않은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체납자의 정보 부족으로 납부여력(징수독촉 또는 정리보류 등을 위한)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재산자로 정리보류 하는 등 체납처분의 한계 발생, 체납자의 임대차 신고정보를 활용하여 납부여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함
-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 8. 18. 법률 제 17483호로 제정된 것] 제6조의2 1항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 2021. 6. 1.부터 체결되는 계약이 그 대상이며 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
-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신고대상이 아님에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신고하므로 사실상 모든 거래는 신고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 체납자의 보증금 정보로 납부 여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지난 정보여도 자금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음
- 이에 가택수색, 보증금 압류, 복지연계(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정리보류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체납처분 및 맞춤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 활성화하여 전국에 전파하고자 함

## 2. 문제원인 분석

- 체납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족
  - 등록된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업이나 금융권 계좌 현금 보유 등으로 체납자에 대한 객관적 납부여력(징수독촉 또는 정리보류 등을 위한) 확인이 가능하나 관련 기관에서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
- 과세정보 등의 요구·이용 등 및 질문·검사권 대한 자료수집 제한

-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과태료는 국세·지방세와 다르게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예금조회 등) 조회요청을 하여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는 금융거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제2항의 경우에만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결국 세외수입체납을 이유로 거래자료를 받을 수 없음

**« 해당 법령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이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이하 "과세정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과태료 체납자 직장 조회요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2013. 3. 11.) '인천광역시의 체납자 과태료징수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청 건'을 이유로 자료제공을 거부함(「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조건부 제공 가능)

**« 해당 결과 »**

**▶ 요청내용**

인천광역시가 고태료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일정규모 이상 체납자의 직장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하였다.

**▶ 판단**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허가·인가·면허·등록·갱신), 감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제한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필요성에 대한 소명 없이 급여압류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자의 직장정보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 3. 방안 마련 및 실행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임대보증금 조회 근거 및 체납처분
  -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의무 신고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따라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함
  - 그 자료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이용 등)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를 근거로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에 임대보증금 정보를 요구
  - 이를 활용하여 납부여력(고액보증금, 소액보증금)을 파악하여 고액 보증금 보유 체납자는 先 가택수색, 後 보증금 압류, 소액보증금 보유 체납자에 대해 복지연계(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정리보류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체납관리로 체납처분 등 맞춤 징수 실현

#### « 해당 법령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이용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 과세자료제출기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에 따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음

#### « 해당 법령 »

#####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 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3]는 다음과 같음

번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과세자료제출기관	제출받을 기관	과세자료 제출시기
1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및 부동산 거래신고가격의 검증에 관한 자료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매월 5일

○ 고액보증금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보증금 압류

- 실거주지 직관적 확인 가능으로 선 가택수색으로 빠른 납부 유도과 후 보증금 압류로 민원 최소화 및 가택수색 불능자에 대한 채권확보 가능
- 확정일자 및 계약기간이 지난 부분은 묵시적 계약연장이 존재함으로 반드시 확인 필요
- 고액 보증금은 계약기간 종료 시 자금 은닉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 필요

○ 소액보증금 체납자에 대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복지연계 및 정리보류 등

- 무주택(세대 구성원 포함) 소액보증금 월세 거주자 대상으로 주거환경 조사 후 조건에 맞는 체납자는 복지연계 및 결손처리 진행
-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에 미포함 거주환경 열악한 자도 결손 진행

**< 주거지원 >**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를 기준

※ 단,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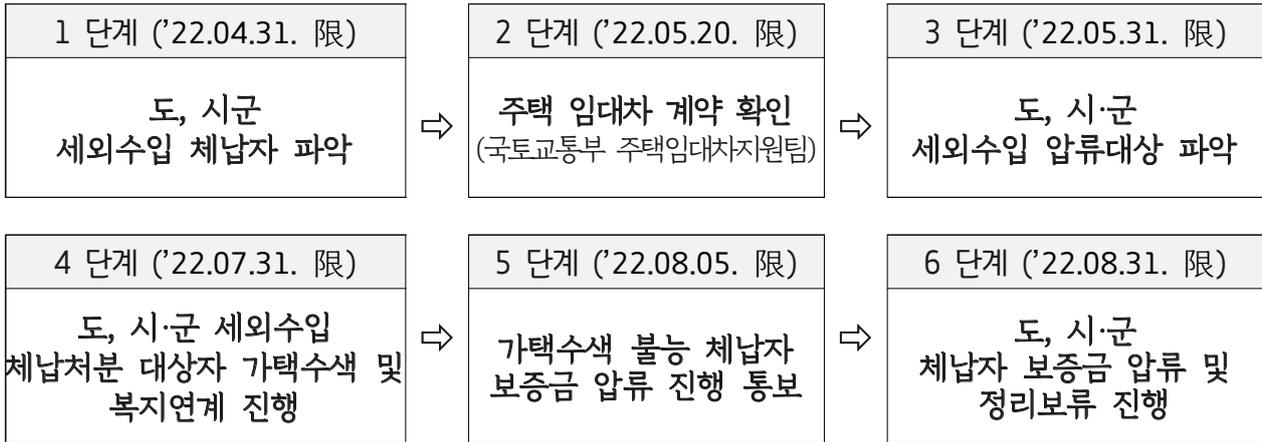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 해당 법령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 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11. 7. 9)»,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임대차 신고정보를 활용한 세외수입 맞춤 징수 절차



- 전·월세 보증금 규모에 따라 先 가택수색(고액 위주), 後 보증금 압류 진행  
\* 일정액 보호(보증금) : 4,3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 2,300만원(7천만원 이하), 2,000만원(6천만원 이하)
- 주거 취약계층(쪽방, 고시원 등) 복지 연계, 결손처리 등 직·간접 지원 추진

○ 임대보증금 압류 효력은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 송달과 임대차계약 종료시 발생

#### 4. 장애극복

- 임대차 신고제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징수로 체납관리 한계극복
  - 금융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 정보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대상임에 착안하여 「지방행정 제재부과금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과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어 체납자의 납부여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가택수색, 보증금 압류, 복지연계, 정리보류 등(결손)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효율적 체납관리 및 맞춤 징수가 가능하게 되었음

#### 5. 성과

- 임대차 신고정보 조회 결과, 시·군 포함 세외수입 체납자 24,782명(체납액 899억원)이 보유한 임대보증금 1조1,522억원 확인, 보증금 압류 추진과정에서 1,748명으로부터 37억원을 징수하였음
- 체납자의 실태분석을 통해 804명의 체납액 54억원을 보증금 압류대상자로 확정하고, 도·시·군 합동으로 동시 추진 중이며,

- 체납과 보증금 규모가 고액이고, 고질·악의적 체납자 1,117명(체납액 69억원)은 가택수색 대상자로 확정하고, 보증금 압류 전에 가택수색시 충분한 안내로 납부 유도과 더불어 민원발생 최소화를 도모함



가택수색(이천시)

- 또한 추진과정에서 쪽방촌,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16명(체납액 63백만원)을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별하여 관련 부서 협조로 복지연계 지원 중이며, 또한 이들과 더불어 경제취약계층 부담 감소를 위해 275명의 체납액 약 7억원은 정리보류 대상자로 선정함



쪽방 거주자 주거취약계층 연계(고양시)

**붙임1 입주자격 기초조사서(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시 3] **입주자격 기초조사서**

신청일  
 - 신청 :  
 - 주소 :  
 - 연락처 :

입주신청자격 (해당란에 기입, V표)

항목	세부기준	조사결과	적합여부 (예, 아니오)
주거 형태	주거형태 적합여부	· 쪽 방(V), 비닐하우스( ) · 고시원·여인숙 ( ) · 노숙인쉼터· 무량인사실( )	
주주제	주주의 소득여부	· 총상당자 ( V ) · 부양당자 ( )	
도 시	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 개별공시지가 _____ 원 · 도시권역 ( V )	
자활자	과세표준액 2,200만원 이하 · 장애인·영양부 세자	· 과세표준액 _____ 원 · 자활자 없음 ( V )	
소 속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 월평균소득액 _____ 원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정보를 활용한 방식은 전국 최초로 신속한 체납처분, 정리보류, 복지연계로 효율적 체납관리 및 맞춤 징수가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활성화하여 전국에 전파 시 지방세입 증대 기대

## 참고 2

## 보도자료(240건)

서울 Pn

인쇄 취소

### 경기도, 고액 임차보증금 추적, 세외수입 체납액 92억 징수

입력: 2022-09-19 11:40 | 수정: 2022-09-19 11:40



수원 광교신도시 경기도청 전경.

서울신문

KBS NEWS

### 경기도, 체납자의 임차보증금 전수 조사해 92억 원 징수

입력 2022-09-19 10:02:42 수정 2022-09-19 10:30:19

사회



경기도가 돈이 없으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내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 압류했습니다.

KBS

한국일보

수도권

### "세금징수만 하는 거 아니에요"...경기도, 취약계층 체납자는 결손처분

입력 2022-09-19 08:43 수정 2022.09.19 08:47



경기도청 전경.

한국일보

서울경제

인쇄 닫기

### 경기도, 임차보증금 전수조사...체납액 92억 징수·압류

체납액 38억 징수 54억 보증금 압류...쪽방촌·고시원 등 16명 주거복지 연계

윤종열 기자 | 2022-09-19 09:02:03 | 사회일반



경기도청 전경

서울경제

### 경기도, 임차보증금 전수조사로 체납액 92억원 징수·압류

▲ 방송의 기사    @ 승인 2022.09.19 08:25

2만4782명 체납액 900억원, 1조1522억원 보증금액 적발  
임차보증금 전수조사, 고질·악의적 체납자는 강제징수, 취약계층은 주거지원 연계  
체납액 38억 원 징수, 54억 원 보증금 압류, 쪽방촌·고시원 등 16명 주거복지 연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15억 전세 살면서 "돈 없어 세금 못내"... 경기도, 고액체납자 임차보증금 압류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2.09.19 18:03 수정 : 2022.09.19 18:05

도, 고액 임차보증금 전수 조사

취약계층 발굴 복지제도 지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돈이 없으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 전수 조사를 통해 고액 전세 거주자를 가려내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압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을 발견하고 복지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3만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도는 2만4782명(체납액 약 900억원)이 보유한 임차보증금액 약 1조1522억원을 확인하고, 체납자들에게 체납처분 예고서를 보내 체납자 1748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징수했다. 이후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위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실제 생활 여력을 확인한 후 804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54억 원을 압류했다.

### 경기도, 고액 전세사는 체납자 골라 92억 징수·압류

▲ 박지희    @ 승인 2022.09.19 18:40

‘돈없다 배망’ 임차보증금 전수조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돈이 없으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 이 가운데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내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압류했다고 19일 밝혔다.

### "세금징수만 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 고액체납자 임차보증금 압류

입력 2022-09-19 08:43    수정 2022.09.19 08:47



경기도청 전경.

## 6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

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경기도 자연재난과
담당자 : 성상현 (031-8008-8433)

### 《 성과요약 》

- 시장금리 변동 상황을 수시로 예의주시하여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기존 정기예금 해지 후 재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825백만원을 전액 재난 예방사업에 편성하여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운용 특성상 갑작스러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소극적 예산운영을 지향함
- 또한, 기금 특성상 실시간 시장금리를 반영할 수 없고, 월별 도 금고 정기 예금금리 기준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므로 빠른 판단력 필요

### □ 개선(추진)내용

- 기금 사업별 집행 시기를 철저히 분석하여 중·장기 정기예금에 전략적 예치를 통한 유휴자금을 최소화함
- 기금 재예치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정기예금 중도해지 후 이자 수입이 높은 중·장기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함

### □ 개선(추진)효과

- 기존 정기예금(2.41%) 유지보다 해지 후 3개월 정기예금(3.71%)의 이자가 825백만원 더 발생함
- 향후 금리 상승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어 최근 최고금리(5.3%)에 재난 재해 기금(263,530백만원, 2년) 예치하여 이자 수입 약 280억원 예상됨
- 기금 재예치로 발생한 추가 수입은 여름철 풍수해, 겨울철 한파 대비 등 전액 도민을 위한 재난안전사업에 편성함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1.5백만원(기여자 성상현외 3명)

등록번호	자연재난과-22277	주무관	자연재난예방팀장	자연재난과장	안전관리실장
등록일자	2022. 11. 2.	상상현	정태송	한영조	이진찬
결재일자	2022. 11. 2.	별 초 주무관 초은별			
공개구분	비공개(5)				

도 재난관리·재해구호 기금 재예치 계획(안)



안전관리실  
(자연재난과)

도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재예치 계획(안)

□ 관련 근거

- 예산담당관-17629('22.10.26.)호 '기금 여유자금 운용 관련 안내'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자금의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야 함

□ 추진 계획(안)

○ 예금 현황

- 재난관리기금 : 185,136백만원(외부예치금, 금리 2.41%)
- 재해구호기금 : 41,865백만원(금리 0.66%) +22.10.5.(29,342백만원) 추가 적립

○ 도고금 정기에금 금리 현황('22.11.10.-12.9.적용)

구 분	30~59일	60~90일	91~119일	120~180일	181~240일	271~360일	1~2년
국민은행	3.1	3.1	3.71	3.71	3.58	3.58	4.1

\* 금리변동 추이(1년장기,%) : 0.97('21.1.) → 1.26('21.10.) → 1.87('22.1.) → 2.26('22.8.) → 3.57('22.8.)

○ 예치 계획

- 변경 예치 시 이자수익 비교

구 분	현재 가입 조건	변경 예치 시	비고
재난관리 기금 (185,136)	중도 해지시(0.49% (22.11.10.현재)	계약 유지(2.41% (23.11.만기)	해지 후 재예치(3.58% (22.11.10.~23.7.11.만기)
	248	4,462	4,666
	⇒ 중도 해지 후, 재예치 할 경우 452백만원 추가 이자액 발생		
재해구호 기금 (41,865)	41,865 → 11,865(△30,000) 공금예금(0.66%)	30,000 정기에금 예치(3.71% (22.11.10.~23.2.1.만기)	신규예치 (3계좌)
	⇒ 30,000백만원 정기에금 신규예치 시 229백만원 추가 이자액 발생		

⇒ 금리 상승 추세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기금운용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91일(3.71%)로 재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계획

- 재난재해 기금 정기에금 해지 및 재예치 요청(출→국민은행) : '22.11.10.限
- 정기에금(91일) 만기 후 재예치 추진 : '23.2.1.이후

## 참고 2

##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해지 후 대예치[2022.11.10.]

○ 해지이자 : 247,524,290원

○ 재 예 치 : 185,136,000,000원(3개월, 3.71%)

### ○ 조회결과

거래년월일	적요	채주	수입액	지출액	잔액
2022-11-10	해지원금 (0799150000374-002)		100,000,000,000	0	122,569,591,067
2022-11-10	해지이자 (0799150000374-002)		133,698,630	0	122,703,289,697
2022-11-10	해지원금 (0799150000383-002)		50,000,000,000	0	172,703,289,697
2022-11-10	해지이자 (0799150000383-002)		66,849,310	0	172,770,139,007
2022-11-10	해지원금 (0799150000392-002)		35,136,000,000	0	207,906,139,007
2022-11-10	해지이자 (0799150000392-002)		46,976,350	0	207,953,115,357
2022-11-10	정기예금저예치		0	185,136,000,000	22,817,115,357

## 참고 3

## 정기예금 만기도래 안내(국민은행)

**KB 국민은행** KB 금융그룹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원로 30(이의동) KB 국민은행 경기도청점 팀장 조은정 Tel 031248-6992 Fax 031248-6993  
 문서번호 : KB 국민은행 경기도청점 2023-5 2023-02-06  
 수 신 : 경기도청 자연재난과  
 참 조 : 재난관리기금 담당자  
 제 목 : 정기예금 만기도래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귀 기관의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안내 드립니다.

예금주	계좌번호	신규일	만기일	해지일	금액	이율	이자금액
경기도청 (재난관리기금)	079915-00-00374(3)	2022.11.10	2023.2.9	2023.2.9	100,000,000,000 원	3.71%	924,958,900 원
	079915-00-00383(3)	2022.11.10	2023.2.9	2023.2.9	50,000,000,000 원	3.71%	462,479,450 원
경기도청 (재해구호기금)	079915-00-00392(3)	2022.11.10	2023.2.9	2023.2.9	35,136,000,000 원	3.71%	324,993,560 원

KB 국민은행 경기도청점장

KB 3147159 / 조\*정 / 2023-02-06 09:02

**KB 국민은행** KB 금융그룹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원로 30(이의동) KB 국민은행 경기도청점 팀장 조은정 Tel 031248-6992 Fax 031248-6993  
 문서번호 : KB 국민은행 경기도청점 2023-6 2023-02-06  
 수 신 : 경기도청 자연재난과  
 참 조 : 재해구호기금 담당자  
 제 목 : 정기예금 만기도래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귀 기관의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안내 드립니다.

예금주	계좌번호	신규일	만기일	해지일	금액	이율	이자금액
경기도청 (재해구호기금)	079915-00-02954(1)	2022.11.10	2023.2.9	2023.2.9	10,000,000,000 원	3.71%	92,495,890 원
	079915-00-02954(2)	2022.11.10	2023.2.9	2023.2.9	10,000,000,000 원	3.71%	92,495,890 원
경기도청 (재해구호기금)	079915-00-02954(3)	2022.11.10	2023.2.9	2023.2.9	10,000,000,000 원	3.71%	92,495,890 원

KB 국민은행 경기도청점장

KB 3147159 / 조\*정 / 2023-02-06 09:02

## 참고 4

##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해지 후 재예치[2023.2.9.]

○ 해지이자 : 1,712,431,910원

○ 재 예 치 : 203,530,000,000원(2년, 5.3%)

2023-02-09	해지원금 (0799150000374-003)		100,000,000,000	0	174,790,686,952
2023-02-09	해지이자 (0799150000374-003)		924,958,900	0	175,715,645,852
2023-02-09	해지원금 (0799150000392-003)		35,136,000,000	0	210,851,645,852
2023-02-09	해지이자 (0799150000392-003)		324,993,560	0	211,176,639,412
2023-02-09	해지원금 (0799150000383-003)		50,000,000,000	0	261,176,639,412
2023-02-09	해지이자 (0799150000383-003)		462,479,450	0	261,639,118,862
2023-02-09	정기예금예치		0	203,530,000,000	58,109,118,862

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부천시 징수과
담당자 : 임남석 (032-625-9318)

### 《 성과요약 》

- 선순위 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지방세 법령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동산 공매로 통하여 체납세액 징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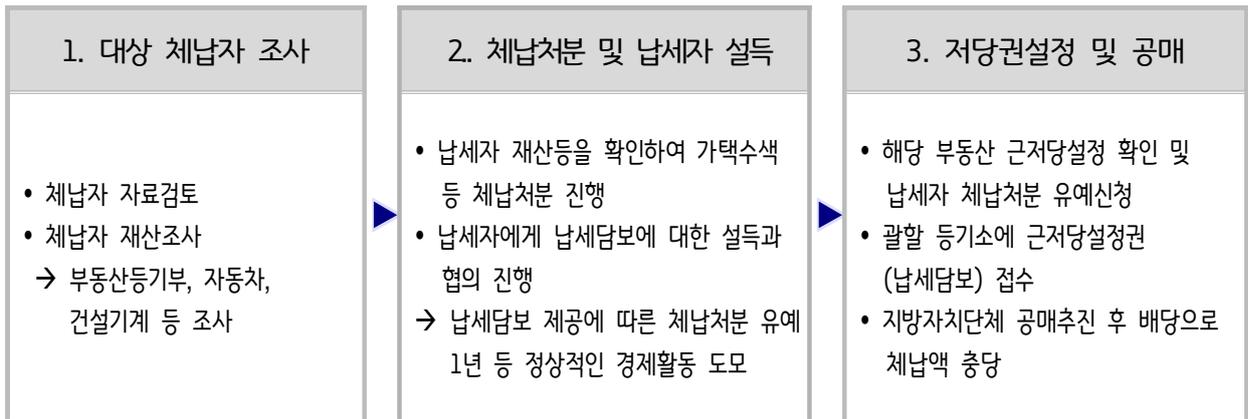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고액 체납자 채권 회수를 위해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국세 등 선순위 압류로 실익 없는 부동산을 정리하지 못하여 정리보류(결손처분) 체납자의 채권이 장시간 방치되고 있음
- 특히 지방소득세 부과대상은 국세 추징(경정결정) 후 1~2개월 후에 처분 사실이 자치단체에 통보되는 관계로 현재 지방소득세 고액체납자 대다수는 국세도 체납이 있고 또 국세가 선순위로 압류를 하고 있음
- 압류재산이 실익 없다는 이유로 공매 미추진 등 후속 조치가 없어 시효 중단된 체납자는 장기 고액 체납자로 분류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절실한 실정임.
  - ※ 국세(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 지방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종합소득)】순으로 부과함에 따라 압류도 국세 압류 후 지방세 압류

### □ 개선(추진)내용

-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및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 추진절차 및 내용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체납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고액 체납자에게 압류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 받은 후 해당 물건을 공매하여 선순위 압류인 국세보다 지방세 체납세를 우선 징수(충당)함으로써 시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 체납처분 유예된 체납자는 기한의 이익을 얻어 조세 신용불량자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납세자가 되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신(新)징수기법임
- 따라서 압류부동산의 철저한 실익 분석으로 납세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납세담보 제도를 성실하게 안내하고 끈기 있게 설득함으로써 우리 시가 후순위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납세담보를 통한 공매처분 절차를 이행하여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해결하고 체납세 징수율을 향상하였음



○ 납세담보 수입 증대 사례 (3건)

(단위 : 천원)

체납	납세담보 물건	체납액	충당액	비 고
계	3건	392,504	392,504	

□ 개선(추진)효과

○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신 징수기법

-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2022년 시도한 납세담보 징수기법은 지방세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충당)할 수 있어 정리 보류(결손처분)된 체납세 징수를 보장받으면서도 납세자 권익 보호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향후 활용도와 세입 증대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5백만원(기여자 임남석 외 2명)

## □ 사례 1 : 가족의 재산 납세담보

- 체납자는 사업 과정에서 국세청 국세 체납과 우리 시 지방세 체납이 있는 고액 체납자임
-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설정하고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였으나, 우리 시는 후순위 압류로 배당금을 받지 못함
- 체납자의 재산은 전무하나 배우자의 소유 부동산을 국세청에서 선압류 중임을 확인하고 납세담보 제도를 안내, 설득하여 납세담보를 설정한 후 공매를 통하여 우리 시 체납액에 전액 총당함으로써 가산금 증가 등으로 체납액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을 막아 납세자를 보호한 사례임

## □ 사례 2 :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납세담보

-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는 경제회복과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체납세를 납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강제적인 체납처분보다는 가족이 운영 중인 법인을 납세보증인으로 납세담보 설정하도록 안내함
- 납세담보 설정과 체납금액에 대한 분납약정서를 작성한 후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을 전액 징수함

## □ 사례 3 :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 납세담보 사례

- 체납자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체납한 고액 체납자로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 물건을 매각하여 일부 총당하였으나, 다른 실익 있는 재산이 없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국세 체납으로 국세청에 선압류 설정되어 매각을 통한 채권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국세청은 공매 등 체납처분을 미루고 있어 재산세 등 매년 재산 보유에 따른 세금과 가산금이 증가하여 체납자의 어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음
- 지방세 체납으로 집행한 압류는 국세보다 후순위로 채권의 적극적인 확보는 어려운 상황에서, 납세자를 설득하여 납세담보를 설정 후 신속한 공매처분으로 전환하여 지방세를 우선 징수함

## 8 누락 기부재산 소유권 취득

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부천시 재산관리과
담당자 : 장동섭 (032-625-3401)

### 《 성과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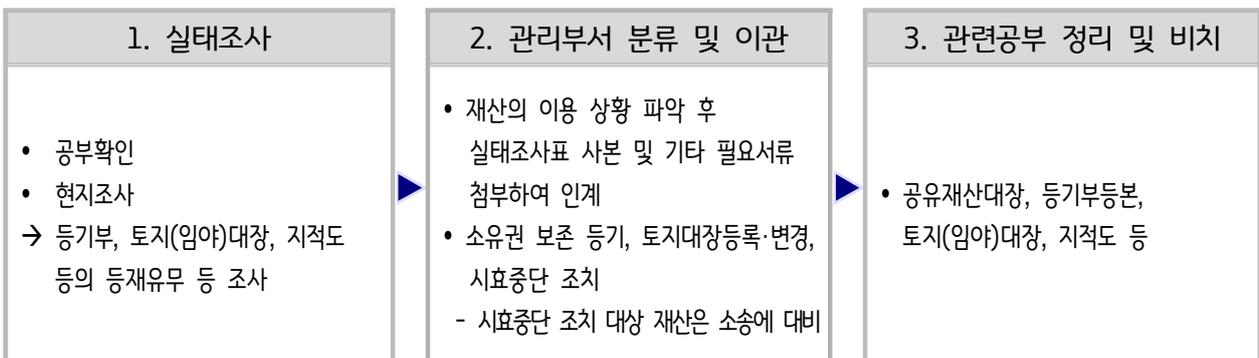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되어야 할 재산 중 현재까지 등기 및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한 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취득함으로써 '22년 58억원 수입증대 발생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소규모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토지형질 변경공사 시(사업기간 '91.12.16.~ '92.10.23.)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을 기부조건으로 허가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각종 공부상에 소유권이전이 등재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권리 보전 및 공부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

### □ 개선(추진)내용

-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등
- 추진대상
  - 소유권이전등기 미필재산
    - 기부채납, 「국토법」에 의한 무상귀속재산 등
    - 행정구역 개편 관련 승계 재산
  - 등록정보 오류재산 : 건물 신축 · 증축 후 미등기 재산
  - 중복등기 재산
- 추진절차 및 내용



○ 대상 재산별 처리절차

- 지적오류 재산의 정리

- 토지대장상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재산 → 토지대장상 소유권 변경
-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재산 → 지목변경 신청
- 지적공부가 말소된 토지 → 토지에 관한 멸실 등기 촉탁 신청

- 중복등기 재산

-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을 참고하여 처리

□ 개선(추진)효과

○ 장기간 미이전 기부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취득

- 총 57억 8,629만원(1필지 / 1,691.9㎡)

○ 지방재정 증대도모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5백만원(기여자 장동섭 외 2명)

# 9

## 기획세무조사 자체과제 운영으로 취약분야 세원발굴

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평택시 징수과
담당자 : 나경범 (031-8024-2530)

### 《 성과요약 》

-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 및 누락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4개과제)를 수립하여 추가세원 발굴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매년 업무추진 인력부족 호소 > 경기도 기획조사 시달과제(4개과제)만 추진(소극적) > 자체 검증(취약분야) 기능 미약 및 의욕상실

### □ 개선(추진)내용

- 평택시 대규모 개발사업 등 세원의 급증 및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의 특성상 납세자의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나, 신고납부 적정여부 검증의 필요성 대두
- 경기도 합동조사시 세원누락 반복되거나 과세자료 관리가 취약한 분야를 경기도 시달과제(4개과제)와 별도로 자체추진 과제 선정

#### 《 자체 추진과제 》

과제1)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누락    과제2)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누락,  
과제3) 산업단지 용지분양 취득세    과제4) 법인 농지취득 세율적용 착오

☞ 취약분야(4개과제) 운영계획수립 ▶ 과제별 조사추진 ▶ 과제별 결과보고

### □ 개선(추진)효과

- 기획세무조사팀이 신설되지 않았지만 평택시 최초로 자체과제 선정하여 탈루세원 2,557백만원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
  - 과제1)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누락: 11.8억원
  - 과제2)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누락: 3억원
  - 과제3) 산업단지 용지분양 취득세: 8.2억원
  - 과제4) 법인 농지취득 세율적용 착오: 2.6억원
- 부적정 신고 법인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 유도
- 새로운 조사기법 발굴 및 모호한 법 해석 검토(상급기관 질의)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4.7백만원(기여자 나경범 외 2명)

## 10 대명항 젓갈건어물 시장 규제 관리 강화

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김포시 축수산과
담당자 : 안영준 (031-5186-4307)

### 《 성과요약 》

- 2010년~2031년까지 무상사용 대상인 대명항 젓갈건어물 시장의 허가 조건을 제한·강화하여 어항시설 사용료 5억 원 이상 수입증대 발생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대명항 젓갈건어물 시장은 2010년 어촌계에서 3억4천만원으로 건축하여 김포시에 기부한 건축물로 「어촌어항법」에 따라 건축비 만큼 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2031년까지 무상으로 어촌계에 사용 허가된 건축물임
- 젓갈건어물 시장 시설현황

건축물 현황				사용자 (무상사용 기간)
개소 (면적)	소유자	건축비	비용부담	
42개소 (792.6㎡)	김포시	3억4천만원	어촌계(100%)	어촌계 (2010.8. ~ 2031.8.)

- 2017년 대명항 젓갈시장 운영실태 확인 중 전체 42개소 점포 중 33개소의 임대, 전대, 매매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어 김포경찰서에 사실확인 전수 조사를 의뢰하여 최종 36개소 적발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가로 8건의 불법행위 적발
- 어촌어항법상 기부된 어항시설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 취소 및 고발 불가
- 낮은 행정처분(과태료)으로 인한 불법행위 재발생에 따라 강력한 관리 규제 방안 필요

## □ 개선(추진)내용

○ 대명항 젓갈건어물 시장 관리 규제 방안 수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허가대상	단체(어촌계)	개인(김포시민)
허가구분	신고	허가
사용료	무상사용	사용료 부과
허가면적	792.6㎡	1개소 30㎡ 미만
처분관련	과태료	고발, 허가취소, 행정대집행, 과태료
허가조건	취약(허가정지 3조항)	강화(허가취소 7조항)
기 타	허가 취소 불가	허가 취소 가능 (취소된 경우 2년간 사용 신청 불가)

※ 신청 및 허가조건 제한 가능 여부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시 재량행위에 포함됨

- 무상사용 신고를 유상사용 허가로 변경, 7개 허가취소 조항 신설, 허가 면적 제한, 허가 신청대상 어업인 → 김포시민 전체로 확대
- 허가 취소 시 2년간 사용 신청 불가
- 법령상 허가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2021년 어촌계에 총회를 통해 불법 사용 근절 등 사유로 어업인 자진 허가 취소 유도(전체 찬성)
- 젓갈건어물 시장의 강력한 규제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전체 42개소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2022년 31명의 새로운 대상자 선정
- 2022년 38백만원, 2023년 4천만원 사용료 부과 및 수납 완료

## □ 개선(추진)효과

- 강력한 규제로 인해 현재까지 불법행위 미발생
- 세외수입 증대
  - 당초 무상사용 기간인 2031년까지 총 5억 원 이상 어항사용료 수입 발생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2백만원(기여자 안영준 외 1명)**

○ 관리계획 수립 추진 보고

시리행복·김포의 가치 두 배로!

분서번호	제출일자	가점	비고	제출일자	가점	비고
분서번호	2021. 08. 18.	100점	100점	2021. 08. 18.	100점	100점
제출일자	2021. 08. 18.					
공표일자	대리인 공표					

대명항 수산물위판장 관리계획

- 대명항 수산물위판장(젓갈시장)은 2010년 김포어촌계에서 신축하여 젓갈 및 건어물 등 판매용으로 무상사용하였으나 '18년 달로 사용자 42명 중 36명 행정처분 후 어업인 6명, 비어업인(어촌계원) 25명 중 31명이 사용자
- '21년 6월 김포어촌계는 불법사용 근원 등 사유로 총회를 개최, 어촌계원 전원 찬성으로 수산물위판장 무상사용 취소 결정
- 이에 따라, 수산물위판장(젓갈시장) 무상사용 취소 후 사용료를 부과하여 일일인도 사용료를 하고자 함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대명항 수산물위판장 관리계획(안)

- 1 관련근거**
  - 「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제4조 - 어항관리위원의 의무
  - 시장은 낚벌 어항을 관리할 것이 어촌어항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낚벌 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2 수산물위판장(젓갈시장) 현황**
  - 위 치 : 김포시 대곡면 대명리 551-18
  - 종 도 : 수산물위판장 (젓갈시장)
  - 규 모 : 지장1층 / 792.6㎡
  - 사 용 자 : 김포어촌계
  - 사 용 료 : 무상사용(어촌계 → 김포시 귀속시설로 21년간 무상사용 대상)

포의 현황		인축용 현황		사용종인	사용기간
회	적면	소유자	면적	비율	비율
대명항	551-18	영기호	792.6㎡	김포어촌계	2010. 10. 14. ~ 2031. 09. 30.
- 3 문제점 발생 배경**
  - 대명항 수산물위판장 사용허가에 따른 문제점
    - 기부된 어항시설은 기부한 단계 우선 허가 대상(김포어촌계)
    - 수산물위판장 임대, 전매, 임대 불법행위 발생
    - 어촌어항법상 기부된 어항시설 임대, 전매 등 불법행위에 따른 허가 취소 및 고발 불기
    - 낮은 처분(과대료)으로 인한 불법행위 재발생
- 4 그간 추진사항**
  - 2017. 5. : 수산물위판장 실태조사 실시
  - 2017. 6. : 임대, 전매 등 불법행위 김포경찰서 전수조사 수사 의뢰

4 그간 추진사항

- 2017. 5. : 수산물위판장 실태조사 실시
- 2017. 6. : 임대, 전매 등 불법행위 김포경찰서 전수조사 수사 의뢰 및 36개소 행정처분(과대료 처분 36명)
- 2018. 3. : 31명 신규허가(어업인 6명, 비어업인(어촌계원) 25명)
- 2018. 7. : 수산물위판장 무단정용 6명 김포경찰서 고발(14건)
- 2019. 11. : 수산물위판장 무단정용 3명 인천해양경찰서 고발(2건)
- 2021. 8. : 김포어촌계 수산물위판장 무상사용 취소 신청

5 문제점 해결을 위한 관리 변경계획

■ 수산물위판장 관리 변경계획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청대상	단체(김포어촌계)	개인(김포시민)
허가구분	신규 허가	허가
사용료	무상사용	사용료 부과(연 17,000원/명)
허가연계	792.6㎡	1인당 30㎡ 미만
처분권한	과대료	고발, 허가취소, 행정처분, 과대료
허가조건	유형(허가종류 구분)	일반(허가종류 구분)
기 타	허가 취소 불가	허가 취소된 경우 2년간 신청 불가

6 향후 추진계획

- 2021. 8. : 수산물위판장 현황 조사
- 2021. 9. : 수산물위판장 관리계획(안) 수립
- 2021. 10. : 어항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접수 및 승인

7 위치도 및 현장사진

○ 관리계획 수립

시리행복·김포의 가치 두 배로!

분서번호	제출일자	가점	비고	제출일자	가점	비고
분서번호	2021. 11. 3.	100점	100점	2021. 11. 3.	100점	100점
제출일자	2021. 11. 3.					
공표일자	대리인 공표					

대명항 젓갈·건어물 시장 관리계획 수립(안)

시리행복  
김포의 가치  
두 배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대명항 젓갈·건어물 시장 관리계획(안)

- 1 관련근거**
  - 「김포시 어항 관리 조례」 제4조 - 어항관리위원의 의무
  - 시장은 낚벌 어항을 관리할 것이 어촌어항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낚벌 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2 젓갈·건어물 시장 현황**
  - 위 치 : 김포시 대곡면 대명리 551-18
  - 종 도 : 젓갈 및 건어물 등 수산물 판매장
  - 규 모 : 지장1층 / 792.6㎡
  - 사 용 자 : 김포어촌계
  - 사 용 료 : 무상사용(어촌계 → 김포시 귀속시설로 21년간 무상사용 대상)

포의 현황		인축용 현황		사용종인	사용기간
회	적면	소유자	면적	비율	비율
대명항	551-18	영기호	792.6㎡	김포어촌계	2010. 10. 14. ~ 2031. 09. 30.
- 3 젓갈·건어물 시장 관리계획 수립 배경**
  - 젓갈·건어물 시장 임대, 전매, 매매 불법행위 발생
  - 어촌어항법상 기부된 어항시설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 취소 및 고발 불가
  - 낮은 처분(과대료)으로 인한 불법행위 재발생
  - 김포어촌계 불법사용 근원 등 사유로 어촌계원 전원 찬성으로 젓갈·건어물 시장 사용허가 취소 결정
  - 젓갈·건어물 시장 신규 신고·허가 등 인허가 시 강력한 규제 관리 방안 필요

4 젓갈·건어물 시장 관리계획(안)

■ 젓갈·건어물 시장 인허가 등 관리계획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청대상	어항시설 사용자(어촌계원) 및 허가 조건	개인(김포 내주민)
신고·허가	허가	허가
허가순위	1순위 : 젓갈·건어물 시장 기존 사용자 2순위 : 기존 사용자 외 개인 매매계약서 체결한 사람 3순위 : 김포시민 * 신규 사용자 허가 취소 1회에 한하여 우선순위 적용 후 관련 법령 시 검토 내린 대상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과대료 사용 불가)	신규 사용자 우선 및 대외시: 지역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2명까지 신청
신청제한	1인당 30㎡ 미만	1인당 30㎡ 미만
허가조건	허가료 70만원/일	허가료 70만원/일
사용료	사용료 부과(연 17,000원/명)	사용료 부과(연 17,000원/명)
처분권한	과대, 허가취소, 행정처분, 과대료	과대, 허가취소, 행정처분, 과대료
기 타	허가 취소된 경우 2년간 신청 불가(재발생 예방)	허가 취소된 경우 2년간 신청 불가(재발생 예방)

5 향후 추진계획

- 2021. 10. 어항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22. 1. 어항시설 사용 허가 승인

6 참고자료

■ 김포시 공공서비스 사용결과

어항시설 사용자 선정 우선순위 및 가족간 신청 제한 가능 여부 절의

공공서비스	가능여부	의심내용
필수회원 자격요	가능	어항시설 사용자 선정 우선순위 및 가족간 신청 제한 가능
필수회원 내방실적요	가능	어항시설 사용자 선정 우선순위 및 가족간 신청 제한 가능
필수회원 거주요	가능	어항시설 사용자 선정 우선순위 및 가족간 신청 제한 가능
필수회원 주민	가능	어항시설 사용자 선정 우선순위 및 가족간 신청 제한 가능
정무필수회원	불가능	공공서비스 사용자 허가 확인필요 여부 절의

# ○ 젓갈건어물 시장 무상 사용 취소 및 사용 허가 승인

- 시민행복 ·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항시설 무상사용 취소 승인(대명항 젓갈-건어물 시장)

1. 관련: 축수산과-2669(2021.08.03.)호, -27828(2021.08.13.)호, -29334(2021.08.27.)호, -34027(2021.10.20.)호, -39176(2021.12.03.)호  
2. 김포어촌계 대명항 대명리 551-18번지 젓갈-건어물 시장 무상사용 취소 요청과 관련하여 김포시 고문번호사 법률자문 및 대명항 젓갈-건어물 시장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기에 어촌-어항법 제2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인된 대명항 젓갈-건어물 시장에 대하여 무상사용 취소 승인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승인시점	사용목적	사용-점용 면적(㎡)	피항가자		허가기간	비고
			주소	성명		
수산물직판장 (축양장)	젓갈, 건어물 등 수산물 판매	792.6㎡	김포시 대명면 대명리 551-18	김포어촌계장	2019.10.01. ~ 2024.08.30.	

붙임 1. 무상사용 취소 요청서 1부.  
2. 대명항 젓갈건어물 시장 관리계획 수립(안) 1부. 끝.

---

주무관 박영준 수산팀장 조찬휘 축수산과장 2021.12.31. 이덕민

주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 농업기술센터 / http://www.gimpo.go.kr  
전화번호: 031-980-2822 팩스번호: 031-980-5229 / sj11978@korea.kr / 비공개(5)  
\* 소중한 개인정보, 지켜주세요! \* 문서관리카드축수산과-41409 1/1

어촌계 무상 사용 취소 승인

- 시민행복 ·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승인(젓갈건어물 시장)

1. 축수산과 민원-1890(2021.12.30.)호와 관련입니다.  
2. 대명면 대명리 551-18번지 젓갈건어물 시장 사용-점용 허가 승인 요청과 관련하여 어촌-어항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김포시어항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용-점용 허가를 승인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허가번호	장용시점	사용(점용)목적	사용-점용 면적(㎡)	피항가자		허가기간	비고
				주소	성명		
2022-01 ~ 2022-31	대명항 젓갈건어물 시장	젓갈 및 건어물 등 수산물 판매	792.6㎡ (917제소)	김포시 대명면 대명리 110-110	박영준 등 31명	2022.01.01. ~ 2023.12.31.	

붙임 1.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서(31부) 1부.  
2. 허가조건 1부.  
3. 어항시설사용 조사서 1부.  
4. 허가자 명단 및 위치첨원도 1부.  
5. 김포시 어항관리협의회 심의결과 1부. 끝.

---

주무관 박영준 수산팀장 조찬휘 축수산과장 2021.12.31. 이덕민

주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 농업기술센터 / http://www.gimpo.go.kr  
전화번호: 031-980-2822 팩스번호: 031-980-5229 / sj11978@korea.kr / 비공개(5)  
\* 소중한 개인정보, 지켜주세요! \* 문서관리카드축수산과-42279 1/1

어항시설 사용 허가 승인

# ○ 2022년, 2023년 사용료 부과

- 시민행복 ·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



## 김 포 시



수신 박임분 등 31명(대명항 젓갈건어물 시장 허가자) 귀하 (경유)  
제목 대명항 젓갈건어물 시장 점사용료 납부 통지(2022년 사용료)

1. 귀하의 무공한 발견을 기원합니다.  
2. 김포시 대명면 대명리 551-18번지 「대명항 젓갈-건어물 시장」 점-사용허가 관련하여 어촌-어항법 제42조제1항 및 김포시 어항관리조례 제26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2022년 어항시설 점사용료 고지서를 송부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첫째 달 3%가산금, 60개월 동안 0.75% 체납 가산금이 부과되며 젓갈건어물 시장 점사용 허가자 취소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2년 젓갈건어물 시장 점사용료 산정 및 부과내역 1부.  
2. 2022년 어항시설 점사용료 납부고지서 31부(별송). 끝.

김 포 시 장

---

주무관 박영준 수산팀장 조찬휘 축수산과장 2022.1.11. 최우재리 최민식

주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 / http://www.gimpo.go.kr  
전화번호: 031-980-2822 팩스번호: 031-980-5229 / sj11978@korea.kr / 비공개(5)  
\* 소중한 개인정보, 지켜주세요! \* 문서관리카드축수산과-1106 1/1

2022년 사용료 부과

- 시민에게 신뢰받는 도시관리공사 -



## 김포도시관리공사



수신 김포시장(축수산과장) (경유)  
제목 2023년 대명항 어항시설 점사용료 부과 원료 통보

1. 귀 청(과)의 무공한 발견을 기원합니다.  
2. 2023년도 대명항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산정 및 부과를 아래와 같이 완료하였기에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산정기간 : 2023.01.01. ~ 2023.12.31. [1년간]  
나. 점 · 사용료 : ₩230,329,370원

구분	수산물직판장	젓갈건어물시장	합계	비고
점사용료 부과금액	188,705,870원	41,620,430원	230,329,370원	

다. 산출내역 : 붙임 「점사용료 산출 서식(2023년)」 참고  
라. 점포별부과액.

구분	점포수	점포별 부과액	비고
수산물직판장	42개	4,483,070원	
젓갈건어물시장	14㎡형	18개	287,920원
	21㎡형	3개	1,481,870원
	28㎡형	11개	1,838,830원

마. 납부기간 : 납입고지환 날부터 15일 이내  
바. 발송일 : 2023.01.12.(목)

붙임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점사용료 산출 서식(2023년) 1부. 끝.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시장 사장인**

---

★주임 한정화 항산관리팀장 최성미 공물관리팀장 민원 2023.1.17. 박지현

주소: 경기도 김포시 대명면 대명항1로 110-36 / www.guc.or.kr  
전화번호: 031)987-4097 팩스번호: 031)987-4099 / trisa0021@naver.com / 대국민 공개

2023년 사용료 부과



## 11 방치된 고장 컴퓨터 불용처리 방법 개선으로 세외수입 증대

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안양시 정보통신과

담당자 : 오정주 (031-8045-2083)

### 《 성과요약 》

- 방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전수조사하여 불용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자제품 전문 재활용 업체와 선정·협상 추진하여 재활용 가능한 부속품 등의 추가 매각함에 따라 9,798천원 세외 수입증대 발생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지원('20~'22년)하기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PC를 재정비하여 사용
- 적기에 불용 처리 하지 못한 노후 PC의 누적으로 창고 공간 부족

### □ 개선(추진)내용

- 누적된 폐전산장비(PC 668대 등) 일괄 불용 처리 추진 : 2022년 3월 ~ 12월
  - 일반적인 고철처리업체 대신 컴퓨터 및 전기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를 물색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PC 부속품(CPU, 메모리 등) 단가 추가 산정
- 단순 창고로 활용하던 공간을 업무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

### □ 개선(추진)효과

- 많은 양의 컴퓨터를 일괄 불용 및 재활용가능 부속품 단가 재산정 등 꼼꼼한 업무처리로 매각단가 상승 및 세외수입 증대
  - \* 컴퓨터 1대 기준: 1,500원(단순 고철처리) → 24,500원(재활용 가능한 부품 별도 매각단가 산정)
- 불필요한 물품을 적극적으로 파악·불용하여 쾌적한 업무 공간 마련
  - \* 본청 8층 자재실(전산장비 유지보수 공간 확보), 지하1층 건축물 전용 서고 마련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0.98백만원(기여자 오정주 외 6명)

**참고**

**불용 후 창고 재정비 사진**

**불용 전 8층: 노후장비 보관 창고**



**불용 후 8층: 자재실 및 유지보수 작업공간으로 활용**



**불용 전 지하 1층: 노후장비 보관 창고**



**불용 후 지하 1층: 건축물전용 서고 활용**



분 류 : 수입증대
기관명 : 여주시 세정과
담당자 : 장석찬 지방소득세팀장 (031-887-2205)

### 《 성과요약 》

- 남한강물 사용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납부 조사 실시
  - 지하에 매설되어 보이지 않는 송수관 시설에 대한 안분신고납부 여부 조사
- 지하 송수관 시설도 사업장 건축연면적인 안분신고 대상으로 보아 49억원 징수
  - 여주시 남한강물 사용을 위해 타 자치단체 주 사업장까지 지하 송수관 시설 매립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타 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우리 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법인을 대상으로 여주시민을 위한 재정기여도를 높이는 방안 분석
- 지방자주재원의 주요항목인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조사연구
- 남한강물 사용 4개 법인은 여주시에서 타 자치단체 소재 주사업장까지 급수시설인 지하에 송수관을 매설하여 운영
- 4개 법인은 지방세 부분에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14백만원(연간) 납부하고 있는 등 여주시 지방재정 기여도가 매우 낮음
- 해당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납부 조사 실시
  - 조사대상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대상 시설물 중 송수관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과표 × 세율 = 신고납부
  -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 말일부터 4개월 이내(주로 4월말)
  - 2개 이상 자치단체 사업장 존재 시 건축 연면적, 종업원 수 비율 안분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방법
 
$$\left[ \left(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 수}} \right) + \left(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right] \div 2$$
- 남한강물 사용법인 사업장(4개법인)은 여주시에 종업원과 사업용 건축물 미존재의 사유로 여주시 안분신고 납부 미실시
  - 법인은 송수관 시설이 건축물이 아닌 시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안분신고 대상인 건축물로 인식하지 못함

- 송수관 시설 ⇒사업장 건축 연면적으로 보아 안분신고 대상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제1항 제2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제2항 제2호

## □ 개선(추진)내용

- 송수관 설치 사용 4개 법인 관내 사업장 현지 확인 및 법률연구
  - 업무 담당자 및 세정과 5개 팀장 과세 대상 여부 연구 검토
- 해당 A법인 방문 재무팀장(공인회계사) 면담
  - 법인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에게 사건 검토 의뢰
  - 법무법인 의뢰 후 안분신고 대상에 관한 법률해석 이견 제시
    - ※ 송수관의 개념 및 안분신고 대상 건축물(시설물)과 관련된 해석 이의 제기
      - ⇒ 안분신고납부 대상이 아님을 주장
- 법원판례, 행정심판, 조세심판, 지방세해설집 등 사례 조사
- 서울시 소재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박사 자문업무 협의
  - 송수관은 안분신고 건축물 연면적 포함에 의견을 두지만
  - 전국 자치단체와 연계된 사안으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판단 권유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작성 및 문서 발송(경기도청 경유)
  - 도청 세정과 질의회신서 수정요청에 의한 수정문서 발송[2023.3.29.]
  - 경기도청 세정과 행정안전부 문서발송[2023.3.31.]
- 해당법인 업무 면담
  - 참석자(6명) : 지방소득세 팀장 외 1인, 해당법인 재무팀장 외 1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2명
  - 여 주 시 : 안분신고 대상이라는 사례 및 합리적 법률근거 제시
  - 법무법인 수석변호사 : 송수관은 안분신고 대상이 아님을 주장
  - 법인의견 : 과세관청 부과 후 소송 확대는 원치 않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정을 통한 납부 의견 제시
  - 이미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진행 중이지만 4월 말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도 5월 수시분 부과 예정임을 법인에 최종 통지
- 나머지 3개 법인은 4월 말까지 신고 납부 긍정적으로 검토
- 2023.4.27.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확정 통보(송수관 안분신고 대상)
- 2023.4.13.~5.2. 4개법인 49억원 납부 완료

○ 납부내역

(단위 : 백만원)

법인명	합 계	사업 귀속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4개업체	<b>4,865</b>	171	1,789	347	472	1,126	960
A법인	3,206		1,677	166	223	689	451
B법인	1,252	64	28	118	199	393	450
C법인	381	81	84	63	50	44	59
D법인	26	26					

○ 장애극복

- 장애요인 I :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등 사례 부족
  - 법인 측에서 송수관이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시한 사유와 관련한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등 사례 없음
  - 안분대상으로 인정되는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쟁점 송수관의 명칭이 사용되기 이전의 판례임(2007.1.1.개정)
- ▶ 극복 노력
  - 지방세 해설집,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연구 등 적극 업무 연찬
  - 서울시 소재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박사 면담으로 외부자문 활용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진행을 통해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임
- 장애요인 II : 고액 소송가액 및 유명 법무법인과 행정소송의 부담
  - 해당 법인에서 쟁점 송수관에 대한 안분신고납부 미이행 시 처분청에서 부과하게 되면 소송 진행 예상
  - 해당법인 의뢰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법무법인이고 당시 부과 예상세액 20억~30억원으로 소송가액이 높아 패소에 대한 부담 가중
- ▶ 극복 노력
  - 해당 법인과 법률대리인을 만나 쟁점 송수관이 안분신고납부 대상이라는 법률적 근거 및 합리적 논리 제시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정을 이끌어 처분청 부과 전 해당 법인의 신고 납부를 통한 징수 완료로 법률적 다툼없이 사건 완료
- 장애요인 III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신속 진행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부과 기준이 되는 사안으로 유권해석 진행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
  - 부과 제척 일자인 2023.5.1. 이전 유권해석 결정과 법인 신고 납부가 완료되어야 함(일부 법인 1개년 부과권 일실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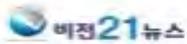
▶ 극복 노력

- 경기도 세정과 업무 담당자와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과 담당 주무관에게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피력
- 질의회신 문서작성 시 정확한 사례해석과 충분한 법률적 검토 내용을 담아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청 업무 담당자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함
- 행정안전부 공문 도달 27일 만에 유권해석 결정(통상 60일)

□ 개선(추진)효과

- 49억원 징수는 세무조사와 관련 여주시 세입 역대 최대실적 달성
  - 1년간 여주시 전체 법인 세무조사 실적 3억~10억
- 법정 소송 없이 조기 지방세수 증가로 주민을 위해 사용되는 세출예산 안정적으로 조기 확보 (소송 진행 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최종 판결까지 약 4년 소요)
- 향후 매년 정기적으로 약 10억원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 해당 법인과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상생 방안 협의로 쟁점 송수관 및 급수시설을 법인소유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약속
  - 송수관 시설에 관한 소유권을 K-워터에 이전을 시도했었으나, 현재는 법인소유 유지하며 현재 K-워터에 위탁 관리 운영 중
  - ※ 해당시설 소유권 이전 시 여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징수권 소멸

## □ 보도자료(1)



## 여주시 지하에 숨어있던 송수관, 지방세 조사로 49억원 시 자주 재원 확충

정서영 기자 synews21@naver.com

등록 2023.05.08 10:12:02



▲ 여주시청

(비전21뉴스) 여주시 세정과는 지하 송수관을 통하여 남한강 물을 취수하고 있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2023년 2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지방세 조사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를 누락한 4개 법인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49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 과표에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법인세의 10% 상당)하는 세목으로,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납부할 총 세액을 사업장 건축물의 연면적과 종업원수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하는 세목이다.

위 4개 법인은 다른 자치단체에 생산시설을 두고 제품생산에 필요한 여주시 남한강을 취수를 위해, 급수시설 및 지하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운영했으나 여주시에는 사업장도 없고 근무하는 종업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유로 안분신고 납부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여주시는 『지하에 매설된 송수관 시설도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므로 안분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본 사안과 관련한 최근 판례나 사례가 부족하여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신청, 지난 4월말 안분신고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아 과년도분과 2023년도분을 포함하여 지방소득세 49억원을 징수완료 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나칠 수 있었던 지하 시설물 조사를 통하여 지방세 확보에 힘쓴 세무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여주시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으로 공정한 세정업무를 펼쳐달라"고 당부했으며, 또한 한민우 세정과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풍토조성 등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 보도자료(2)

홈 로컬 프리미엄 여주뉴스

# 여주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개 팀 선발

김규철 | 2023.07.31 15:37 | 댓글 0



여주시는 지난 28일 2023년 제3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5팀(10명)을 최종 선발했다.

최우수 팀에는 세정과 장석찬 팀장과 김진수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들은 송수관을 안분신고 대상으로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아 남한강물을 사용하는 법인에 법인지방소득세 49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수 팀은 ▶농업정책과 이순열 팀장, 김주찬 주무관 ▶보건행정과 박현숙 팀장, 추미영 주무관이 선발됐다.

농업정책과 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보건행정과 팀은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한방 진료 서비스 사업을 추진했다.



여주시가 지난 28일 2023년 제3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우수공무원 5팀을 선발했다. 사진=여주시청

▣ 관련 지방세 법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①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 ① 법 제103조의23 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제100조의12 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제88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제100조의12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 ① 법 제8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left[ \left(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 수}} \right) + \left(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right] \div 2$$

-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 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12.30.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법인세할의 과세방법)

- ② 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





## 예산절감 사례





# 1

## 민선8기 도정슬로건 디자인 자체개발을 통한 예산 5천만원 절감

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경기도 도민소통담당관

담당자 : 현예지 (031-8008-3321)

### 《 성과요약 》

- 민선8기 도정슬로건 디자인 및 매뉴얼 직접 개발을 통해 기존 예산편성액 5천만원 절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기존의 경우 도정슬로건 디자인 및 매뉴얼 개발을 전문 용역사를 통해 진행해야만 했음
  - 기존 민선7기 도정슬로건 개발 용역으로 5천만원 비용 소요

### □ 개선(추진)내용

- 민선8기 도정슬로건 디자인 및 매뉴얼 직접 개발을 통해 기존 예산편성액 5천만원 절감하였으며 개발 완료 시기를 평균보다 2개월가량 앞당기는 추가 성과를 도출함
  - 민선8기 도래에 따른 도정슬로건 개발 필요성에 따라, 인수위 출범 초기부터 ‘민선8기 도정슬로건 개발 전문가 TF’에 참여하며 ’22. 6월 도정슬로건 시그니처 디자인을 개발함
  - 담당자의 디자인 업무 전문능력과 노력을 기반으로, 도정슬로건 활용 방안을 담은 40종의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함. 또한, 도정캐릭터를 추가 개발하여 행정 디자인의 질적 완성도를 제고하였음
  - 특히 경기도는 17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캐릭터가 없었으나, 금번 경기도정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개발함으로써 향후 도민에게 경기도의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과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개발 예산 절감 그 이상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성과가 예상되는 도정 혁신 사례임
  - 기존 지자체의 딱딱한 슬로건 형식에서 탈피해 더 친근하고 유연한 이미지로 도민들과 소통하겠다는 민선8기 경기도정만의 ‘유쾌한 반란’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틀에 박힌 디자인이 아닌 도정슬로건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디자인 전반의 질적 완성도를 제고함

□ **개선(추진)효과**

- 민선8기 도정슬로건 개발 예산 5천만원 절감
  - 민선7기 도정슬로건 개발 : 53,150,000원
  - 민선8기 도정슬로건 개발 : 0원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5백만원(기여자 현예지 외 3명)**



민선8기 도정슬로건 시그니처 디자인 개발



민선8기 도정슬로건 매뉴얼 페이지 개발

## 2

## 문산~내포(2) 지장물지속 현의를 통한 예산 절감

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담당자 : 박지용 (031-8008-8334)

### 《 성과요약 》

-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중 지장물 이설에 대한 비용 절감 방안을 다각적 검토하고, 관계기관 지속적 업무 협의를 통하여 당초 대비 256백만원의 예산 절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경기도(건설본부)는 「문산~내포(2) 도로확포장공사」를 '21. 12.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구간에 편입된 지장물 이설 협의결과 道이설 부담금 납부액으로 444백만원이 경기도로 청구됨
  - 청구된 이설비용을 지급할 경우, 당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미확보된 예산이 성립되기 전, 시공사 기성금 청구 등이 불가하여 공사 차질이 우려되며, 과도한 납부액 발생으로 예산 절감의 필요성 대두

### □ 개선(추진)내용

- 이설비를 줄이기 위하여 절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후 과거 해당 구간 추진 공사 도로구역 결정 고시문을 발취하여, 관계기관에 이설비 재산정을 요청
  - [내포리 도로승상공사] 도로구역결정 고시일('98. 3.)을 기준
- 그 결과, 당초 '19. 10. 이전 설치[문산~내포(2) 도로구역 결정 전] 지장물 이설비용을, 재산정 후 '98. 3. 이전 설치(내포리 도로승상공사) 지장물 이설 비용만 道부담으로 청구하여 당초 대비 256백만원 예산 절감
  - ※ 도로점용료 감면 및 도로구역 결정 전 지장물 ⇒ 당사(한전 등) 부담 도로구역 결정 이후 지장물 ⇒ 사업시행자(경기도) 부담(도로법 제90조)

### □ 개선(추진)효과

- 사업시기 이전 사업을 창의적으로 발굴하여 일반적으로 도로공사 추진시 해당 도로공사의 도로구역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구역 결정 이전 설치된 지장물은 경기도가 부담하고, 이후 설치된 지장물은 당사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 「문산~내포(2) 도로확포장공사」는 도로구역결정 고시일이 '19년으로 대다수의 지장물이 그 이전에 설치됨. 따라서, 우리부서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기존 추진 사업 등을 발굴하려 노력했으며, '98년에 선행하여 진행된 공사 도로 구역결정 고시문을 발취하여 재산정하여 예산을 절약함
- 그 결과 경기도(건설본부)는 당초 이설비 청구액 대비 약 256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장전주 이설비 58%를 경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을 절감
  - ※ 당초 이설비 청구액 대비 256백만원 감소  
(444백만원 ⇒ 188백만원, 이설비 58% 경감)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5백만원(기여자 박지용 외 3명)**

○ 재정개선 금액 : 256백만원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한국전력공사	208,018,736	100,957,000	
SK브로드밴드	89,166,000	31,574,000	
SK텔레콤	12,049,000	8,482,000	
LG유플러스	78,495,000	21,811,000	
드림라인	33,245,820	4,199,000	
케이티	23,288,300	21,140,400	
<b>합계</b>	<b>444,262,856</b>	<b>188,163,400</b>	<b>256,099,456 절감</b>

일자리 기여		개	
등록번호	북부도로과-13423	주무관	지방도건설팀장
등록일자	2022. 7. 19.	북부도로과장	건설본부장
결재일자	2022. 7. 19.	김준범	전성학
공개구분	비공개(5)	오재현	한대희
경기도		합 조	
		계약관리2팀장 이만승	

문산~내포(2) 도로확포장공사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부담 검토보고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문서관리카드북부도로과-13423 1/4

문산~내포(2) 도로확포장공사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부담 검토보고

「문산~내포(2) 도로확포장공사」와 저촉되는 한전 소유 지장전주 이설에 소요되는 이설공사비 부담에 대한 검토보고임.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문산~내포(2) 도로확포장공사
- 위 치 : 지방도 359호선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 사 업 량 : L=1.16km, B=20.0m(4차로 확장)
- 공 사 비 : 5,319백만원(도급 4,405, 관급 914)
- 공사기간 : 2021.12.20. ~ 2023.10.19.
- 시공/감리 : (주)케이제이이앤씨 / (주)선진엔지니어링, (주)천일

2 관련규정

- 도로법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 도로구역 내 도로점용료 감면 한전주 → 한전
  - 도로구역 내 도로점용료 미감면 한전주 → 사업시행자
-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 도로구역 외 사유지에 설치된 지장물 → 사업시행자 보상
- 배전선로 이설업무지침(한전) 제4절
  - 도로구역 고시 이전 사유지 설치 → 사업시행자
  - 도로구역 고시 이전 국공유지 설치 → 한전
  - 도로구역 고시 이후 설치 → 한전

문서관리카드북부도로과-13423 2/4

3 이설공사비 부담 현황

저장 : 박지용 / 북부도로과 (2023-02-21 18:15:37)

구 분	합계	사업시행자(주) 부담	한국전력공사 부담	
			국공유지	*기존 도로구역 설치(사유지)
수 량	47주	5주	38주	4주
공사비	815,537천원	100,957천원	714,580천원	

\* 경기도고시 제1998-109호(내포리 도로승상공사 도로구역 결정고시)  
\* 도부담분에는 설계비 등이 포함되었고, 규모의 경제 효과 등으로 한전 부담분 대비 단가가 다소 높게 책정되었음(공사완료시 실 소요비용 정산 계획임)

4 책임기술인 검토의견

- 한전 지장전주 이설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주 설치일이 도로구역 결정 고시(경기도고시 제2019-5156호, 2019.10.11.) 기준으로 경기도 이설분과 한전 이설분으로 구분하였으며, 품 적용은 표준품셈 범위 내로 적용하여 공사비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5 공사관리관 검토의견

- 「도로법」 제90조, 「토지보상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문산~내포(2) 도로구역 결정고시(2019.10.11.) 및 내포리 도로승상공사 도로구역 결정고시(1998.03.23.) 당시 사유지에 설치된 한전주에 대하여는 원인자인 道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후 설치하거나, 국공유지에 설치된 한전주, 기존 도로구역 내 설치된 한전주는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조치계획

- 한전에서 요청한 이설공사비를 납부하고, 추후 공사시행 결과에 따라 확정된 이설공사비로 증감액을 정산(한불 또는 추가입금)하고자 함.

문서관리카드북부도로과-13423 3/4

- 붙임 1. 지장전주 판정조서 1부.  
2. 책임기술인 검토의견 1부.  
3. 지장전주 이설비 산정내역 1부.

저장 : 박지용 / 북부도로과 (2023-02-21 18:15:37)

문서관리카드북부도로과-13423 4/4

# 참고 3

# 이설비 절감 내부검토 공문(민간통신선)

과목 : 박지용 / 북부도로과 (2023-02-21 19:07:00)

일자리 기어

장목번호	북부도로과-21974	주부부	지방도건설팀장	북부도로과장	관리과장
등록일자	2023. 11. 18.	파치용	원상혁	오세현	이기태
연계일자	2023. 11. 18.	대결 2023. 11. 18.			
공개구분	비공개(5)	비밀			

경기도

목적

북부도로과장 오세현

## - 문산~내포(2) 도로확포장공사 - 민간통신선(SKB 외 6) 이설비 납부 검토보고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경기건설본부(북부도로과) 21974 / 1/1

과목 : 박지용 / 북부도로과 (2023-02-21 19:07:00)

## - 문산~내포(2) 도로확포장공사 - 민간통신선(SKB 외 6) 이설비 납부 검토보고

◆ 「문산~내포(2)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이전 설치된 민간통신선 이설비 납부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 사업개요

- 위 치 : 파주시 문산을 내포리 454-2 ~ 내포리 548-10
- 사 업 량 : L=1.16km, B=20m(2차로→4차로 확장)
- 사 업 비 : 금14,467백만원(공사비 9,267 보상비 5,200)
- 사업기간 : '21.12.20. ~ '23.10.19.
- 설 계 사 : (주)병화엔지니어링('17. 9. 11. ~ '19. 3. 26.)
- 시공/감리 : (주)제이맥이앤씨 / (주)선진, (주)천일

### □ 추진경위

- '22. 07. 29. : 지장물(민간통신선) 이설 요청 (도→민간통신사 등)
- '22. 10. 12. : 민간통신사 이설비 청구(민간통신사→도)
- '22. 10. 17. : 이설부담율 및 이설비 재산정 요청(도→민간통신사 등)  
※ 한전주 이설비 부담 비율(12.4%) 대비 과다 산정되어 재산정 요청
- '22. 11. 15. : 민간통신사 이설비 재청구(민간통신사→도)  
※ 당초 이설비 대비 149백만원 절감(당초 청구액 236백만원)
- '22. 11. 17. : 이설분담율 및 이설비 감리 검토보고

### □ 검토사항

- 경기도 이설비 분담 비율 적정성 검토(도로구역결정고시('98.3. 및 '19.10.) 기준)

구 분	이설공사비 (낙찰률 적용)	분담률 (%)	요청액 (도부담액)	분담현황 (도·업체)	비고
합 계	672,569,874	-	87,206,400	-	
SK브로드밴드	254,641,000	10.8	31,574,000	37(4:33)	
SK텔레콤	69,522,000	7.4	8,482,000	54(4:50)	한전주 부담 비율에 준하여 분담율 및 이설비용 조정
LG유플러스	209,321,865	10.4	21,811,000	48(5:43)	
드림리안	87,489,000	4.8	4,199,000	21(1:20)	
케이티	51,596,009	21.4	21,140,000	14(3:11)	
서울창 자기망	-	-	-	-	서울창 전체 부담 예정
파주시 자기망	-	-	-	-	파주시 전체 부담 예정

문산관리과(북부도로과) 21974 / 2/1

과목 : 박지용 / 북부도로과 (2023-02-21 19:07:00)

### □ 검토의견

#### [건설사업관리]

- 통신사 별 설계 수량 및 단가 등은 적정하게 반영되어 산출되었으며, 파주시 및 서울창 자기망 이설시 발생 비용은 「도로법」 제91조에 의거 관리청 파주시, 서울창에서 부담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통신선로 이설시 조가용선은 최초 시공하는 통신사에만 적용하여야 하나, 관련 업체간 협의가 어려우므로, 우선 요청한 이설비용을 지급 후 이설을 촉구하는 동시에 조가용선 설치비용은 추후 정산 또는 변경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조가용선 : 공중선을 매달기 위하여 상부에 가설하는 최초 전선
- 분담률과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전체 한전주 중 통신선로가 설치된 한전주를 확인하였고, 경기도 부담 이설전주를 확인하여 분담률이 산출된 것으로 적정함
- 현재 한전선로가 이설 중에 있으며, 민간통신선로는 한전선로와 병행하여 이설되어야 하므로, 이설비를 신속히 집행하여 원활한 공사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관리관]

- 공사 구간 내 도로구역결정고시('98.3. 및 '19.10.) 이전에 설치된 통신선 및 국·공유지 외에 설치된 민간통신선 이설에 대한 도 부담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및 건설사업관리의 검토의견에 따라 민간통신선 이설비용은 협의한 분담률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민간통신사에 이설비를 조속히 납부하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추진하고자 함

### □ 향후계획

- 이설비 지급 및 민간통신선 이설

- 붙임 1. 건설사업관리 검토의견 1부.  
2. 민간통신선 이설부담금 협의회신 공문 각 1부. 끝.

과목 : 박지용 / 북부도로과 (2023-02-21 19:07:00)

## 참고

## 관련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설비의 이전 등)

-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금액, 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3

## 경기광역푸드뱅크 물류창고 임대비용 절감

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경기도 복지사업과
담당자 : 박지경 (031-8008-3377)

### 《 성과요약 》

- 경기광역푸드뱅크 물류창고 확장 이전 비용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보증금 및 임차료 등 1,740만원 절감, 절감한 비용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홍보 전문인력 채용에 사용하여 홍보 강화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기존 경기광역푸드뱅크 남부물류창고 노후화 심각 및 기부물품 증가\* 등에 따른 창고 면적 협소로 확장 이전 필요
  - \* 기부물품 접수 실적 : ('18년) 26.6억원 → ('19년) 41.3억원 → ('20년) 42.5억원
  - 이전 물류창고 보증금 50백만원 및 임차료 66백만원(월 550만원) 등 총 116백만원 소요 예상
  - 부동산 계약 체결 의뢰 시, 중개수수료 500만원 소요 예상

### □ 개선(추진)내용

- 현장방문(6회)과 유선상담을 통해 임대인에게 물류창고의 이전 필요성과 공익적 가치\* 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보증금(△1천만원) 및 월 임차료(△20만원) 등 총 1,240만원 예산을 절감
  - \*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역할 수행
- 공인중개사 없이 道 법무담당관 법률 자문을 받아 직접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수수료 500만원 가량 절감

### □ 개선(추진)효과

- 절감한 1,740만원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홍보 전문인력 채용에 사용하여 기부처 발굴 및 사업 홍보\*강화
  - \* 기부·나눔 행사 개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홍보영상 제작, SNS 운영 등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2백만원(기여자 백승원 외 3명)

# 참고 1

## 경기광역푸드뱅크 남부물류창고 이전

### 《 남부물류창고 이전 개요 》

구분	舊 창고	新 창고
위치	▶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48-1	▶ 화성시 정남면 괴랑리 655-18
면적	▶ 60평(단층)	▶ 180평(복층) ※ 1·2층 동시 사용으로 공간활용도 우수
내부시설	▶ 컨테이너박스를 개조한 사무실 사용 ▶ 별도 편의시설 부재 ※ '08년 개소된 곳으로 시설 노후화 심각	▶ 사무실 확보(2층) ▶ 회의실, 당비실 등 편의시설 갖춤 ※ '20년 준공 시설로 상태 최상
접근성	▶ 봉담IC교차로에서 8km	▶ 정남IC에서 3km



앞모습(舊 창고)



앞모습(新 창고)



창고 내부(舊 창고)



창고 내부(新 창고)



사무실(舊 창고)



사무실(新 창고)

제장 : 백승원 / 일자리경제정책과 (2023-02-23 09:11:40)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 기 도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1. 법률자문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기광역푸드뱅크 참고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고문번호사 법률 자문을 불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1. 법률자문 의뢰서 1부,  
2. 임대차계약서(안) 1부, 끝.

### 복 지 사 업 과 장

주무관 **백승원**      복지사업팀장 **김민섭**      복지사업과장 **김남욱**      전임 2022. 1. 17.

실조자

시행 복지사업과-978      접수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2명관 5층 복지사업과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08-3377      팩스번호 031-8008-4259      / [kknako1990@gg.go.kr](mailto:kknako1990@gg.go.kr)      / 부분공개(7)

행복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

문서관리카드복지사업과-978 1/1

## 4 수전설비용량 축소를 통한 전기안전관리 용역비용 절감

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담당자 : 유명진 (031-8008-8367)

### 《 성과요약 》

- 전기설비 계약용량 변경으로 전력 사용요금만 개선 가능하나, 전기안전관리 비용절감을 위해 **설비용량 축소하여 연간 약 60,000천원 예산절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2단계 공사 후 수전설비용량이 700kW에서 1,300kW로 증설  
※ 변압기(3대)용량 : (기존) 200kW/500kW (증설) 600kW
- 수전설비 용량이 설계상 문제는 없으나 준공 후 1년 이상 전기사용량 모니터링 결과, 용량대비 사용량이 적고 유지비용이 과다 발생됨

### □ 개선(추진)내용

- 기존 500kW 변압기를 사용 해제하여 전체용량 800kW로 축소  
- 전기안전관리 상주용역<sup>1)</sup>을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sup>2)</sup>으로 전환  
- 전기설비 계약용량 변경(1,300kW → 800kW)

### □ 개선(추진)효과

-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용역을 대행으로 전환함으로써 용역비용 절감  
- (기존) 54,000천원 / 년 (변경) 10,560천원 / 년 ※ 연간 절약액 43,440천원
- 계약용량 축소에 따른 기본 전력요금 절약  
-  $(8,320\text{원}/\text{kW} \times 1.1) \times (500\text{kW} \times 30\%) \times 12\text{개월} = 16,473\text{천원}$
- 일회성 개선사항이나, 지속적으로 **매년 약 60,000천원 예산절감**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2백만원(기여자 정명섭 외 1명)**

1)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주간 상시 근무(09:00 ~ 18:00), 1,000kW 이상 선임,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2)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월4회 점검 및 설비 이상 시 긴급조치

# 참고 1

# 연구소(안산) 전기설비용량 변경 계획 보고

제장 : 유정진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2023-11-13 14:50:50)

일자리 기여 개

등록번호	수상기술센터-2600
등록일자	2021. 11. 19.
결재일자	2021. 11. 19.
공제구분	대국민 공개



주무관	수상기술센터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심명섭	박승	2021. 11. 19.
이삼우		
협조	주무팀장	정용섭

## 연구소(안산) 전기설비용량 변경 계획 보고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문서관리카드수상기술센터-2600 -1/3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안산) 전기설비용량 변경 계획보고

- 연구소의 수전설비(변압기) 용량(1,300kW)이 실제 사용량(최대수요 300kW)보다 현저히 높아 기본 전력요금 및 안전관리 등의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됨
- 수전설비 용량 및 한전 계약용량 축소 등 전기 설비용량 변경(1,300kW→800kW)으로 연간 약 51,000천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계획 보고임

### □ 현황 및 문제점

- 안산연구소 2단계 공사 후 수전설비용량이 기존 700kW에서 1,300kW로 증설됨
  - 변압기(3개) 용량 : (기존)200kW / 500kW, (증설) 600kW
- 수전설비 용량 설계상 문제점은 없으나, 준공 후 1년 이상 전기사용량 모니터링한 결과 수전설비 용량에 비하여 순간 최대수요량이 적고 유지비용이 사용량에 비해 과다하게 발생됨
  - 전기안전관리자선임 상주 용역(수전설비용량 1,000kW 이상)
  - 전력사용 기본요금 과다발생 등 (계약용량 재설정)

### □ 해결방안

- 기존 500kW 변압기에 연결된 분전반을 600kW 변압기에 연결하고 500kW 변압기를 사용 해제하여 수전설비 용량을 800kW로 축소
- 한전 계약용량 변경 신청
  - ※ 전기사용량 중 피크사용량(여름, 겨울철 순간최대사용량)이 계약용량을 초과할 경우 그 피크 사용량으로 1년 동안 기본요금 부과

### □ 변경계획(안)

- ( 변경작업내용 ) 파워퓨즈, MOF, 계기용변류기 교체, 배전반 케이블배선 변경
- ( 소요예산 ) 9,790천원
  - 세부내역 : 재료비 5,560천원, 기타 930천원, 노무비 2,410천원 부가세 890천원
  - 예산과목 : 부서)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정책)도민과 함께하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단위) 연구소 기발시설 보강 세부)연구소 시설관리 운영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공공운영비(201-02)

### □ 절감 세부내역

- 수전설비용량 800kW로 감소되어 전기안전관리대행 가능
  - (현재)전기안전관리 상주 용역(4,900,000원/월, 현재 용역금액 기준)
  - (변경)전기안전관리 대행 (1,133,100원/월, 전기안전공사수수료 기준)
  - 절감비용 (3,766,900원/월)
- 한전계약용량 변경
  - (현재)요금적용전력 390kW (390×8,320원 = 3,244,800원/월)
  - (변경)요금적용전력 330kW (330×8,320원 = 2,745,600원/월)
  - 절감비용 (60×8,320원 = 499,200원/월)
- 연간 절감비용
  - (3,766,900원+499,200원) × 12개월 = 51,193,200원/년

### □ 기대효과

- 연간 약 51,000,000원 유지비용 절감 예상

- 붙임 1. 수전설비 용량변경 견적서 1부.  
2. 연구소(안산) 수배전설비 변경계획도 1부. 끝.

## 5

# 별내선(8호선 연장선) 다산역 광장공사 대행을 통한 사업비 절감

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경기도 철도건설과

담당자 : 박현택 (031-8030-4945)

### 《 성과요약 》

- 별내선(지하철 8호선 연장선) 다산역 광장공사를 GH에서 道로 이관 시행 및 GH부지(임시적치장, 정거장) 무상사용 통하여 별내선 사업비 1,091백만원 절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신설되는 별내선 다산역 건설 시 정거장 공사는 道, 상부 광장조성공사는 GH에서 시행
  - (道) 별내선 공사시 GH 부지(다산역 정거장, 토공 임시적치장)를 道에서 사용 필요
  - (GH) 정거장 완료 시까지 광장공사 착공 연기로 사업 진행 지연
- 다산역 상·하부 공사 진행시 공사 구간 중복으로 하자보수 책임 모호, 중복 공사에 따른 재정 낭비 가능성 존재

### □ 개선(추진)내용

- 공사 간섭으로 인한 하자보수 책임, 중복공사 방지를 위하여 광장공사를 道에서 일괄 시행 방법 강구
- GH부지(토공 임시적치장, 정거장)를 道에서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광장 공사를 GH에서 道로 이관 시행

### □ 개선(추진)효과

- 부지 무상사용에 따라 별내선 5공구 건설공사 가설임대료 절감, 토공 운반거리 감소 등 사업비 절감(감1,091백만원)
- 정거장 상·하부 공사 道 일괄 시행을 통하여 하자책임 분명, 중복공사 방지를 통한 재정 중복투자 방지

○ 재정개선 금액 : 1,091백만원 절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변경내용)
가설공	부지사용임대료	754	-	<b>△754</b>	현장사무실,야적장 삭제
	가적치장(신설)	-	307	307	공공공지1 신규 휠스 설치
토공	사토반출	376	204	<b>△172</b>	운반거리 변경(13.9→1.5km)
	되메우기	783	311	<b>△472</b>	운반거리 변경(20→1.5km)
공사비 계		1,913	822	<b>△1,091</b>	※ 세부 절감내역 '참고2' 참고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2백만원(기여자 박현택 외 3명)**

# 참고 1

# 협의 관련공문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 경기도



수신 경기도시공사사장  
(경유) 다산신도시사업단장

제목 별내선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가적치장 사용 부지 제공 협조 요청

1.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경기동북부 지역의 신도시 활성화 및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 별내선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산신도시 부지 조성 중인 귀 공사에서 사토장 및 개착구간 정거장 부지사용 등 현안해결에 적극적인 협조 감사드립니다.

3. 별내선복선전철 5공구 건설사업은 국비지원(70%)을 받아 건설하는 사업으로 귀 공사에서 가적치장 부지 제공시 약 9억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됩니다.

4. 귀 공사에서 협조하여 수신 BN5정거장 상부 부지 사례와 같이 별내선 5공구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가 가능한 공공공지 부지를 가적치장 제공 부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지사용기간 : 2016. 2. 1 ~ 2020.11.30  
나. 가적치량 : 50,000㎡  
다. 부지면적 : 12,600㎡(성토고 H=5m)  
라. 부지위치 : 공공공지1. 끝.



경기도지사

---

주무관 이재정 철도설계팀장 강현일 건설총괄팀장 박경서 대령 2017. 1. 13. 철도건설과장 전람

참조자 주무관 이재정

시행 철도건설과-692 (2017. 1. 13.) 접수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예산로37가, 경기도청)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08-4554 팩스번호 031-8030-4359 / jlee71@gg.go.kr / 비공개(5)  
행복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

## 경기도시공사

수신 경기도지사(철도건설과장)  
(경유)

제목 별내선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가적치장 사용부지 제공 협조 요청관련 회신

1. 귀 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철도건설과-692호( '17.01.13)와 관련합니다.

2. 상기 호로 요청한 「별내선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가적치장 사용부지 제공 협조요청과 관련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적치장 사용부지 요청사항  
- 부지사용기간 : '17.02.01 ~ '20.11.30(조정 공사기간 : '16.08.03 ~ '18.08.01)  
- 가적치량 : 50,000㎡  
- 위치 및 사용면적 : 다산신건1공구 내 공공공지 1, 12,600㎡(성토고 H=5m)

○ 부지사용 승낙조건  
- 사용부지(공공공지1) 내 조정공사 시행과 관련 우리공사 다산경관부와 별도 협의

\* 주요협의내용 : 조정(1공구) 공사기간 무료 후 공사 시행건

붙 임 : 가적치장부지 사용 관련 유관부서(다산경관부) 의견 1부. 끝.



경기도시공사사장

---

과장	신필규	소장	임상훈	부장	김미연	단장	전람 2017. 2. 22.
참조자	부장	이성봉					박규훈
시행	다산조성부-951	(2017. 2. 23.)	접수	철도건설과-2369	(2017. 2. 23.)		
우	12248	경기도 남양주시 미곡로 65번길 32-22(도농동 342-8번지)	/	http://www.gico.or.kr			
전화번호	031)574-8359	팩스번호	031)574-8360	메 일 주 소	/middle3513@gico.or.kr		대국민 공개

일자리 기여 \_ 개

등록번호	철도건설과-6127	주무관	별내선팀장	철도건설과장	철도과장
등록일자	2017. 05. 25.	이재정	박경서	임창원	전람 2017. 5. 25.
결재일자	2017. 05. 25.				이종수
공개구분	비공개(5)	협 조			
		계약관리팀장 이재정			

- 별내선(암사~별내) 5공구 건설공사 -

## 실정보고 및 경기도시공사 요청 사항 검토 보고



### 철도국

#### (철도건설과)

- 별내선(암사~별내) 5공구 건설공사 -

## 실정보고 및 경기도시공사 요청 사항 검토 보고

다산신도시 부지 조성 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협의의 결과 BN5정거장 및 가적치장 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검토 보고임

- 부지 무상사용 → 부지임대료 절감, 사토 및 순성토 운반거리 단축, 가적치장 환경관리시설 설치
- 부지사용 후 상부조성공사 경기도 시행(사업비전액 경기도시공사 부담)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별내선 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L=1.77km)
- 사업기간 : 2016. 10. 4. ~ 2022. 2. 4.
- 사업비 : 96,140백만원
- 건설사업관리/시공 : 신성엔지니어링 / 대우건설 (공정률 6.68%)

**2 그간추진사항**

- '17. 1. 9 : 가적치장 사용 부지 협조요청(도→경기도시공사)
- '17. 2.23 : 가적치장 사용 부지 협조요청 회신(경기도시공사→도)  
\* 조건부승인(정거장 및 가적치장 사용 후 도에서 조정공사 일괄시행 요청)
- '17. 5.17 : 실정보고(건설사업관리단→도)

**3 실정보고 및 요청사항**

- BN5 정거장 및 가적치장 무상사용에 따른 공사비 절감
  - BN5 정거장 및 가적치장 부지 무상사용으로 부지임대료(현장사무실,가적치장 등) 절감, 정거장 및 터널 발생 사토를 가적치장에 사토(적치) 후 향후 되메우기로 사용함으로 사토 및 순성토 운반거리 단축
  - 무상사용부지 : 정거장(11,959㎡), 가적치장(11,165㎡)  
⇒ 부지임대료(현장사무실,적치장 등) 절감액 : △ 754백만원
  - 운반거리단축 사 토 - 당초 L=13.9km → 변경 L=1.5km  
되메우기 - 당초 L=10km,20km → 변경 L=1.5km  
⇒ 절감액 : 총 △644백만원(사토 △172, 되메우기 △472)

○ 가적치장 사용에 따른 환경관리시설 설치(신규)

- 적치장 인근에 아파트(2018.3월 입주예정)가 위치하고 있어 향후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환경관리시설 설치 필요
- 시설현황 : 가설웬스(440m), 세론시설(1식), 찬락담(개)18,000m<sup>2</sup> 및 환경시설 등 1식
- 사업비 : 증 307백만원

○ 정거장 및 가적치장 사용 후 상부 조정 공사 경기도 일괄시행 요청

- 2018.6월 다산신도시 부지조성공사가 완료 되고, 도에서 정거장 및 가적치장 사용 후 상부 조정공사 시행시기는 2021년 6월 이후이므로 사업시기 불일치에 따라 도에서 공사시행
- 정거장 및 적치장 조정 설계현황(경기도시공사 제공)

구분	면적(㎡)	공사내용	공사비(백만원)	비고
총계	23,124		6,000	
정거장	소계	11,959	4,750	설계가기준(지급자재 포함)
	광장	10,969		
	보도	990		
적치장	공공공지	11,165	650	
전기 및 통신공사	광장4-7호	1식	보안등, 한전인입비용, CCTV 등	600
	공공공지			

※ 관련근거 :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서」 제4조 제8항  
 다산전전지구 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시공사는 사업시행기관과 별내선사업과의 중복공종 조정 등을 통하여 사업비 절감 방안 수립 등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비 증감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가설공	부지사용임대료	754	-	-754	원상시공 및 적치장 미사용, 약적공
	가적치장(신설)	-	307	+307	공공공지 1
토공	사도반출	376	204	-172	공판거리변경 (13.3km→1.3km)
	되메우기	783	311	-472	공판거리변경 순성도(31km→1.5km) 시공(13.3km→4.3km)
계	1,913	822	-1,091		

※신규단가(가설웬스) : 낙찰율 86.308% 적용

5 검토의견

[책임건설사업관리 의견]

- 경기도시공사에서 제공한 정거장 상부 및 가적치장(공공공지 1) 부지 무상사용으로 부지사용임대료(754백만원), 가적치장 사용에 따른 사도 반출 및 순성도 운반거리 축소를 인한 공사비 644백만원, 총1,398백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 신설되는 가적치장(공공공지 1) 인근 민원 최소화를 위해 환경 관리 시설 설치 공사비 307백만원을 증액 반영하고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신규단가(가적치장 가설웬스)는 시공사에서 낙찰율(86.308%)로 요청하였음.

[공사관리관 의견]

- 경기도시공사 협의 결과 BN5 정거장 부지 및 가적치장 무상사용으로 인하여 부지 임대료 절감 및 사도 및 되메우기 운반 거리 단축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절감되나 (감 1,398백만원),
- 가적치장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환경 민원이 예상되므로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가적치장 환경관리시설 설치하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증 307백만원)
- 정거장 및 적치장 부지는 당초 부지조성공사 시 경기도시공사에서 공사시행 완료(2018.6월) 예정이었으나, 별내선 5공구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지로 경기도시공사의 요청과 같이 부지사용 완료 후(2021년6월) 상부조정공사는 우리도에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업비 전액(약60억원) 경기도시공사 부담
- 경기도시공사에서 설계완료한 조정공사 인수-인계는 상호 세부 협의 및 협약체결 등 인수인계 절차 추진 예정.
- 공사 이관 후 사업시행 방식(별도발주,설계변경)에 대해 검토코자 함

6 향후 조치계획

- 위 공사부문에 대하여 실정보고사항에 대하여 우선 승인하고, 향후 설계 변경 반영 추진하고자 함.
- 정거장 및 적치장 상부 조정 공사 도 시행 통보(도→경기도시공사)
- 정거장 및 적치장 조정 공사 인수인계 추진 및 이관 공사 협약 추진

붙임 1. 위치도 및 도면 1부.

- 2. 실정보고 공문(건설사업관리단) 1부.
- 3. 경기도시공사 요청 공문 1부. 끝.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경기도 NEXT경기

수신 경기도시공사사장 (경유)

제목 별내선복선전철 5공구 가적치장 부지 사용 협의 의견에 대한 회신

1. 경기도시공사 다산조성부-951(2017.02.23.)호와 관련입니다.
2.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가적치장(공공공지1)부지 사용 협의와 관련하여 귀 공사의 부지사용 승낙조건인 개착구간 상부 및 가적치장 조정 공사 시행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 부지사용 완료 후 조정공사 등을 일괄공사를 시행코자 하오니
3. 귀 공사에서는 완료된 설계도서를 우리 도에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 사업비, 업무분담, 인수인계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기도

주무관 **이재형** 별내선1팀장 **박경서** 철도건설과장 **임형민** 철도과장 **이홍수** (연락 2017. 5. 25.)  
 협조자 계약관리팀장 **이재형**  
 시행 철도건설과-6129 (2017. 5. 25.) 접수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메신로3가, 경기도청)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08-4554 팩스번호 031-8030-4359 / jlee71@gg.go.kr / 비공개(5)  
 행복한 일자리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

문서번호	철도건설과-6860	주무관	철도건설과장	철도건설과장
보존기간	1년			전체 2022. 6. 7.
보고일자	2022. 6. 7.	박현택	최용근	구자균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 출장결과보고서(별내선 5공구 BN5 상부공사)

#### □ 출장개요

- 일시 / 장소 : '22. 6. 3.(금) 10:00 ~ 11:00 / 별내선 5공구 현장
- 출 장 자 : 박현택 주무관
- 목 적 : BN5정거장 상부 광장공사 관련 GH 업무협의

#### □ 출장내용

- 참석자 : (도) 박현택 주무관  
(GH) 다산조성부 선필규시설개발사업소장, 김주목조경개발사업소장
- 주요 협의내용 \* 세부내용은 문임 참고
  - ① 건설사업관리 비용(관리 대가) 요청 ▶(협의결과) 요청사항 반영
  - ② 설계도서 일체 제공 ▶(협의결과) 요청사항 반영
  - ③ 별내선 5공구 상부공사와 광장공사 공사구간 중복 발생  
▶(협의결과) 관계자 회의 실시
  - ④ 공공공지 1 조경공사 일정 확인 ▶ (확인사항) 조경공사 지장없도록 하겠음

#### □ 향후계획

- 설계 재검토 요청(道 → GH)
- 5공구 상부공사와 광장공사 공사구간 중복 관련 회의 실시('22.6.10.). 끝.

경기도지사 귀하

문서번호	철도건설과-6802	주무관	철도건설과장	철도건설과장
보존기간	1년			전체 2022. 6. 18.
보고일자	2022. 6. 18.	박현택	최용근	구자균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 출장결과보고서(별내선 5공구 BN5 상부공사)

#### □ 출장개요

- 일시 / 장소 : '22.6.9.(목), 10.(금) / 별내선 5공구 현장
- 출 장 자
  - '22.6. 9. : 박현택 주무관
  - '22.6.10. : 철도건설2팀장, 박현택주무관
- 목 적 : BN5정거장 상부 광장공사 관련 GH 업무협의

#### □ 출장내용

- 참석자 : (도) 철도건설2팀장, 박현택주무관, 현장소장 등  
(GH) 다산조성부 선필규시설개발사업소장, 김주목조경개발사업소장  
(유역사) 씨에이조경기술(별내선 BN5정거장 광장공사 설계사)
- 주요 협의내용 : 문임 참고

#### □ 향후계획

- 광장공사 추진계획 검토 보고
- 설계 재검토 요청(道 → GH). 끝.

경기도지사 귀하

가적치 운반 공사비 증감 비교표

구분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	비고
직접공사비	1,558,940,580	648,657,653	-910,282,927	
제값비	354,059,420	173,342,347	-180,717,073	
도금액	1,913,000,000	822,000,000	-1,091,000,000	

○ 개략공사비 산출

공종명	세부	단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가. 직접공사비					1,558,940,580			648,657,653			-910,282,927
1. 가설공					652,772,861			248,311,797			-404,460,864
2. 본 선 환 기 구 (#9, #10)					230,975,504			130,190,394			-100,785,110
3. 표층 5 경 기 장					432,388,312			162,755,846			-269,614,466
4. 본 선 터 널					342,824,103			107,401,616			-135,422,487
5. 다산전과지구 인과공사											
6. 지장물이설비											
공사중 기계 전기											
■ 공사중 기계설비공사											
■ 공사중 전기설비											
건축공사											
기계공사											
기계소방설비공사											
나. 간장노무비	직노 × 9.1%				27,582,563			18,157,189			-9,425,374
다. 산재보험료	노무비 × 3.8%				12,562,886			8,270,027			-4,292,859
라. 교육보험료	노무비 × 1.1%				3,888,077			2,546,288			-1,341,789
마. 국민건강보험료	직노 × 1.70%				6,152,787			3,382,003			-2,770,784
바. 노인장기요양보험	직노 × 6.55%				336,496			221,510			-114,986
사. 국민연금보험료	직노 × 2.40%				7,547,317			4,968,286			-2,579,031
아. 퇴직금채무금	직노 × 2.2%				6,971,417			4,589,180			-2,382,237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직+직노+공공차제) × 2.44%				14,672,161			8,381,837			-6,290,324
차. 환경보전비	(직+직노+환경) × 0.5%				7,771,318			3,233,558			-4,537,759
카. 공사야생보존서벌금수수료	(13.5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 × 0.014%) × 60/12				1,182,505			483,705			-698,800
단. 건설허도금보증수수료	직접공사비 × 0.07%				1,108,527			459,168			-649,359
미.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직접공사비 × 0.41%				6,372,482			2,651,518			-3,720,964
히. 기타경비	(직+노) × 6.5%				40,244,345			23,143,719			-17,100,626
히. 일반관리비	(직+노+공) × 4.5%				75,744,342			32,248,262			-43,496,080
히. 이 공	(노+공+일반관) × 3%				141,257,407			59,884,705			-81,372,702
히. 공사운영보험료	(공+공사비+일반관리비+공공차제) × 1.0%				1,709,690			711,383			-998,307
히. 미확정비용(PS)											
히. 미확정비용(기타)											
계. 총 공사비					1,913,000,000			822,000,000			-1,091,000,000
도금액 산지 변경지재대(부가가치세 별도)											
계. 도금액					1,913,000,000			822,000,000			-1,091,000,000

공종명	세부	단위	당초			변경			종감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1. 가량공											
1-2. 개별물타라											
... 개별 물타라(0.1 환스)	35개월 3.0m <sup>2</sup> 55x0.71	m				440	109,710.0	48,272,400	440	48,272,400	요요 #1
... 개별 물타라(출입도비)	#6.0x#10.0, #6.0x#7.0	식				1	4,401,738.3	4,401,738	1	4,401,738	간좌 #1
1-3. 교통정리비		칸		77,124.3		438	77,124.3	33,780,443	438	33,780,443	
1-5. 공사중 교통처리 안전시설		EA		190,219.5		2	190,219.5	380,439	2	380,439	
... 공사중안전대표지반	사각200x180	EA		190,219.5		2	190,219.5	380,439	2	380,439	
... 공사중차량안전대표지반	사각200x180	EA		190,219.5		2	190,219.5	380,439	2	380,439	
1-13. 화물관리비		개소		2,487,916.1		1	2,487,916.1	2,487,916	1	2,487,916	
... 화물세차시설실시및설거	이동식자동차세품과	개소		2,487,916.1		1	2,487,916.1	2,487,916	1	2,487,916	
... 화물세차시설유지관리	자동차세식	개월		399,940.3		36	399,940.3	13,997,910	36	13,997,910	
... 발수차운영		년		17,573,064.2		3.00	17,573,064.2	52,719,192	3	52,719,192	
... 비선분지양		m <sup>2</sup>		3,487.5		900	3,487.5	3,138,750	900	3,138,750	
... 이설면 전역보양		m <sup>2</sup>		4,930.7		18,000	4,930.7	88,752,600	18,000	88,752,600	
1-15. 부차사용및대료		식	1	652,772,661.3	652,772,661		652,772,661.3		-1	-652,772,661	
2. 분선 평가 구(99. #10)											
2-1. 도공											
2-1-5. 수성토로반	양프24판, L=20.0km	m <sup>2</sup>	17,356	9,435.8	163,758,309	9,436	9,435.8	89,039,208	-7,919	-74,722,101	
2-1-6. 사면사도로반	양프24판, L=10.0km	m <sup>2</sup>	11,570	5,380.1	62,347,757	6,200	5,380.1	33,840,829	-5,280	-28,406,928	
2-1-6-1. 유동로 준안	24판 양프트럭, L=1.5km	m <sup>2</sup>				1,022	2,389.3	2,442,875	1,022	2,442,875	단상 #1
2-1-7. 사도정장지반											
... 사도정장지반	중화양	m <sup>3</sup>	1,275	128.0	163,199		128.0		-1,275	-163,199	단상 #5
... 사도정장지반	중화양	m <sup>3</sup>		128.0		1,275	128.0	163,199	1,275	163,199	단상 #5
2-1-10. 정토처리											
... 사도처리(중화양, 정거장, 2.0m이하)	24판 양프트럭, L=2.8km	m <sup>2</sup>	1,275	3,789.6	4,806,239		3,789.6		-1,275	-4,806,239	
... 사도처리(중화양, 정거장, 2.0m이하)	24판 양프트럭, L=1.5km	m <sup>2</sup>				1,275	3,892.2	4,707,682	1,275	4,707,682	단상 #2
3. 분선 5절개경											
3-1. 도공											
3-1-5. 수성토로반	양프24판, L=20.0km	m <sup>2</sup>	29,636	9,435.8	280,205,516		9,435.8		-29,636	-280,205,516	
3-1-6. 사면사도로반	양프24판, L=10.0km	m <sup>2</sup>	19,797	5,380.1	106,509,838		5,380.1		-19,797	-106,509,838	
3-1-6-1. 유동로 준안	24판 양프트럭, L=1.5km	m <sup>2</sup>				49,493	2,389.3	118,283,320	49,493	118,283,320	단상 #1
3-1-7. 사도정장지반											
... 사도정장지반	중화양	m <sup>3</sup>	12,317	128.0	1,576,575		128.0		-12,317	-1,576,575	단상 #5
... 사도정장지반	중화양	m <sup>3</sup>		128.0		12,317	128.0	1,576,575	12,317	1,576,575	단상 #5
3-1-10. 정토처리											
... 사도처리(중화양, 정거장, 2.0m이하)	24판 양프트럭, L=2.8km	m <sup>2</sup>	12,317	3,578.5	44,076,383		3,578.5		-12,317	-44,076,383	
... 사도처리(중화양, 정거장, 2.0m이하)	24판 양프트럭, L=1.5km	m <sup>2</sup>				12,317	3,482.3	42,889,951	12,317	42,889,951	단상 #3
4. 분선 타설											
4-1. 도공											
4-1-2. 경내배럭처리	2구간										
... 배럭경외운반	중화양, L=13.9km	m <sup>3</sup>	15,844	6,448.5	102,170,032		6,448.5		-15,844	-102,170,032	
... 배럭경외운반	중화양, L=1.5km	m <sup>3</sup>				15,844	2,780.3	44,058,994	15,844	44,058,994	단상 #4
... 사도정장지반	중화양	m <sup>3</sup>	15,844	128.0	2,028,031		128.0		-15,844	-2,028,031	
... 사도정장지반	중화양	m <sup>3</sup>		128.0		15,844	128.0	2,028,031	15,844	2,028,031	단상 #5

공종명	세부	단위	당초			변경			종감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 사도정장지반	중화양	m <sup>3</sup>		128.0		21,079	128.0	2,698,110	21,079	2,698,110	단상 #5
4-1-2. 경내배럭처리	2구간										
... 배럭경외운반	중화양, L=13.9km	m <sup>3</sup>	15,844	6,448.5	102,170,032		6,448.5		-15,844	-102,170,032	
... 배럭경외운반	중화양, L=1.5km	m <sup>3</sup>				15,844	2,780.3	44,058,994	15,844	44,058,994	단상 #4
... 사도정장지반	중화양	m <sup>3</sup>	15,844	128.0	2,028,031		128.0		-15,844	-2,028,031	
... 사도정장지반	중화양	m <sup>3</sup>		128.0		15,844	128.0	2,028,031	15,844	2,028,031	단상 #5

사 진 대 지



장 소	BN5정거장 토공 되메우기	일 자	2022.06.23
내 용	총체 제32회 정식기성 검사(2022년 제2회)		



장 소	BN5정거장 토공 되메우기	일 자	2022.06.23
내 용	총체 제32회 정식기성 검사(2022년 제2회)		

## 총체 제32회, 2022년 제2회 기성요약서

1. 건 명 : 불내선(암사~불내) 복선전철 5공구 건설공사
2. 도 금 차 : 9대우건설 (대표이사 : 백정원)
3. 공 사 가 간 : 2016년 10월 04일 ~ 2022년 12월 31일 (금회기성기간 2022년 03월 21일 ~ 2022년 06월 20일)
4. 도 입 금 액 : 96,361백만원
5. 공 사 배 내 역 (금액단위 : 원)

구 분	전 체	전회기성	금회기성	누계기성	잔 금	금회기성내역
합 계	96,361,000,000	78,305,000,000	1,100,000,000	79,405,000,000	16,956,000,000	
비 율	100.00%	81.26%	1.14%	82.40%	17.60%	

6. 기성세부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약금액	전회	금회기성	누계기성	잔액	금회기성내용
<b>I. 공사비</b>	<b>96,361</b>	<b>78,305</b>	<b>1,100</b>	<b>79,405</b>	<b>16,956</b>	
<b>A. 토목</b>	<b>57,040</b>	<b>51,801</b>	<b>568</b>	<b>52,369</b>	<b>4,671</b>	
가설공	3,753	2,439	134	2,573	1,180	· 교동철리철 : 89인 · 현상철리철장소 : 교동 철리철도구간 · 임시현리철 철거 1개소
본선원기구	4,136	3,256	209	3,465	671	· 요동 퇴매우기 · 안기구노 합기터브
BNS정거장	13,555	12,443	86	12,529	1,029	· 요동 퇴매우기 · 울림우시 구조물
본선터널	33,359	32,503	0	32,503	856	
다산전전지구 이설공사	782	268	139	407	375	· 요동 퇴매우기
지장불미설비	109	-	0	-	109	
공사중 기계전기	1,343	892	0	892	451	
<b>B. 건축공사</b>	<b>2,990</b>	<b>224</b>	<b>0</b>	<b>224</b>	<b>2,766</b>	
<b>C. 기계공사</b>	<b>4,588</b>	<b>1,593</b>	<b>154</b>	<b>1,747</b>	<b>2,841</b>	· 공조회로설치공사
<b>D. 기계소방설비공사</b>	<b>758</b>	<b>381</b>	<b>0</b>	<b>381</b>	<b>377</b>	
<b>E. 간접비</b>	<b>22,513</b>	<b>17,826</b>	<b>230</b>	<b>18,056</b>	<b>4,457</b>	· 타지역하부등 장선 · 환경의선리 · 건설기계대여임시금보문서발급금액 결산
F. 물가변동(K=1, 3.51%)	2,814	2,306	33	2,339	475	
G. 물가변동(K=2, 4.22%)	2,881	2,252	42	2,294	587	
H. 물가변동(K=3, 3.35%)	1,753	1,232	34	1,266	487	
I. 물가변동(K=4, 3.66%)	1,024	690	39	729	295	
J. 개산금		-	0	-	0	

## 6 도수관로 이설공사 부담금 비율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용인시 정수과
담당자 : 김혜경 (031-324-4267)

### 《 성과요약 》

-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관로 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비용을 사업주체와 공공관로 관리주체가 부담할수있도록 노력하고 설계검토를 통해 공사비용을 줄여 '23년 28억원 예산절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지방도321호선(매산~일산) 확·포장공사에 따른 경기도로부터 도로법에 따라 도수관로 이설공사비용 부담 요청(최초 38억원 용인시 100% 부담 요청)하였으나, 도로법 해석에 대하여 용인시와 경기도 간 이견 발생
- 그동안 관행처럼 도로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관로 이설공사에 대한 공사비용은 관리주체가 100% 부담하였으며, 금번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공관로에 대한 이설비용을 용인시에 100%를 부담 요청하였음

### □ 개선(추진)내용

- 도로점용허가서의 도로법 적용관련 하여, 법적 검토, 법률 질의 등을 통하여 도로점용 수허가자의 지장물 이설비용 100% 부담 관행을 깨트렸으며, 설계서를 적극 검토하여 공사 비용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음
  - 법률 자문에는 변호사마다 이견이 있었으며, 특히 법해석 및 상위기관 법률 질의에 있어 회신받기까지 힘든 노력을 기울였음

## □ 개선(추진)효과

- 설계검토로 인한 공사비용 절감
  - 경기도에서 설계 한 공사비용 38억원에 대한 설계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공정을 삭제하고 일부 이설구간을 제외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공사비용을 약 18억원 감액
- 국토교통부의 의견 회신으로 인한 공사비용 분담
  - 100% 우리시에 부과하였던 공사비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 공사비용을 분담(5:5)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9백만원(기여자 김혜경 외 1명)**

## 7 숨어있는 시유재산 발굴로 재정 확보

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용인시 기흥구 민원지적과
담당자 : 현상훈 (031-324-6082)

### 《 성과요약 》

- 2003년 구갈레스피아 설치사업 관련하여 누락된 과거 무상귀속 관련문서를 찾아내 기지급하였던 국유지 매매대금 32억을 환급받아 예산절감은 물론 세원 누수도 방지하여 시민의 재산을 지켜냄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과거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리청인 용인시로 소유권이전 되어야 할 공유재산이 누락된 채 장기간 방치된 경우가 존재
- 시간이 오래 지나 새로운 공공사업이 진행되면서 소유권이전이 누락된 재산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
  - 2003년도 구갈레스피아 설치 사업 당시 용인시로 소유권 이전되어야 할 토지(국유지)가 소유권이전 누락
  - 추가적인 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을 진행하는 중 소유권이전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 보상이 진행됨

### □ 개선(추진)내용

-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거 문서들을 찾아 2003년도 무상귀속 협의 진행이 된 것을 발견하고, 개량 사업 담당부서와 해당 국유지 관리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토지 보상에 관한 재검토 및 토지 보상비 환급 요청 <세부 추진 사항>
  - 21. 12. 사업지 내 국유지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지급
  - 22. 1. 관련부서와 업무협의
  - 22. 4. 국유재산 매매계약 해제(해제사유-무상귀속 인정)
  - 22. 6. 토지보상비 환급 및 소유권 이전

□ **개선(추진)효과**

- 용인시로 소유권 확보 및 토지보상비 환급 받아 예산 절감에 기여
  - 환급금액 : 3,187,968천원
- 공공사업 등으로 향후 용인시가 매입해야 할 재산을 조사하여 불필요한 예산 지출 방지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7백만원(기여자 이용석 외 1명)**

## 8 공공 녹지대 등의 청소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한 예산절감

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성남시 수정구 도시미관과
담당자 : 조수민 (031-729-5453)

### « 성과요약 »

- 녹지대·휴게쉼터, 놀이터(공원) 등 청소관리가 기간제(6명) 및 청소용역(5명)으로 이원화되어있어 청소구간별 중복 및 효율성이 저하되었으나, 관리주체를 청소용역으로 일원화하여 관리 전환 및 구역 조정함으로써 기간제 인건비 예산 약1억6천만원 절감 효과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관리구간 내 기간제근로자 및 청소용역간의 공간별 청소관리 운영 주체 이원화 및 비효율적인 관리체계 운영
  - 관리구간 동선 중복으로 비효율적인 근무 관리 등
- 기간제근로자 10개월 근무로 2개월 청소 공백 발생

### □ 개선(추진)내용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대상
  - 어린이놀이터(공원) 38개소 및 쉼터 62개소
  - 광장 및 공공공지 15개소 및 보행자도로 49개소
- 사업내용
  - 어린이놀이터(공원) 등 청소관리용역 1구역: 태평동, 복정동 등 54개소
  - 어린이놀이터(공원) 등 청소관리용역 2구역: 신흥동, 단대동 등 46개소
  - 어린이놀이터(공원) 등 청소관리용역 3구역: 위례 전 구역
  - 본시가지 1일 1회, 농촌지역 주 2회 청소
- 사업비 : 310,000천원
- 적극 추진 사항
  - 완충녹지대 및 어린이놀이터 등(164개소) 현장답사 후 구역조정
  - 청소구역간 청소량 계량화 및 청소인력 의견수렴

## □ 개선(추진)효과

### ○ 청소인원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162,779천원)

년도	2021년	2022년	절감액	비 고
예산액	472,779	310,000	162,779	2023년 예산 340,000

### ○ 공백기 없는 지속적인 청소 관리

- 기간제근로자 10개월 근무로 2개월 공백이 발생하였으나, 청소용역으로 전환하여 관리 구간 내 이동거리 최소화로 보다 쾌적한 녹지 환경공간 제공 및 민원사항 등 신속 처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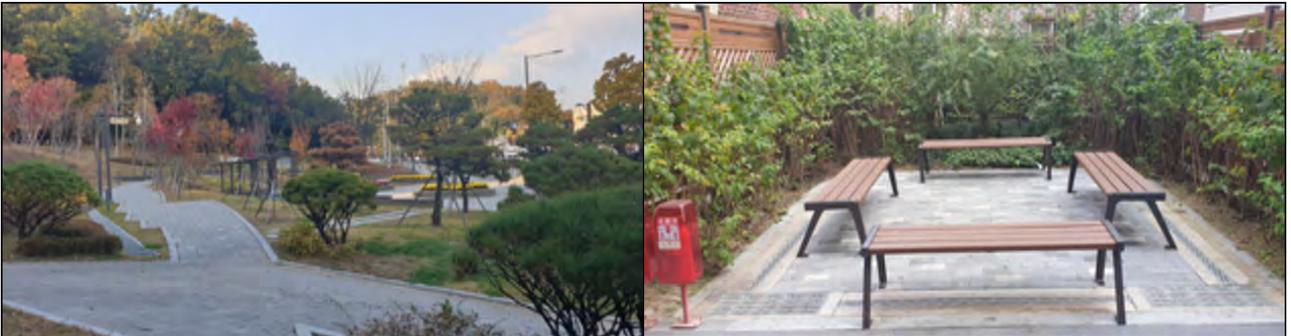
### ○ 용역별 청소구역 지정에 따른 책임 소재 확보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8백만원(기여자 정호근 외 5명)**

○ 복정 완충녹지대



○ 소공원 및 쉼터



○ 어린이놀이터(공원)



○ 위례광장 및 보행자도로



## 9

# 민간토지 녹지활용계약으로 토지매입비 절감 및 녹지공간 확충

분 류: 예산절감

기관명: 부천시 녹지과

담당자: 지영민 (032-625-3576)

### 《 성과요약 》

- 민간토지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토지매입비 절감 및 산림녹지 공간을 안정적 확보 제공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성주산 하우고개구름다리 일원 산림은 사유지이나 별도 협의없이 오랜기간 등산로, 체력단련장 및 쉼터로 이용 중임에 따라, 소유자가 부천시에서 무단으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및 매수청구 민원을 제기함 ※ 주요시설 : 성주정(정자), 부천둘레길 2코스, 체력단련장, 등산로 등
- 발생하는 문제점
  - 토지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발생(최근 5년간)
  -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철거에 따른 예산 낭비  
(성주정, 산불감시시설/cctv 등, 운동기구 10점, 의자 등 편의 시설 45점, 부천둘레길 등 등산로)
  - 등산로 폐쇄에 따른 이용객 큰 불편 발생  
(하우고개구름다리를 연결하는 등산로로 우회 등산로 확보 불가능)

### □ 개선(추진) 내용

- 부천시 재정여건상 토지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공원) 등 10년이상 장기간 검토 필요
- 성주산, 소래산을 연결하는 주 등산로로 하루 1,000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성주정(정자) 및 체력단련장 이동 및 철거는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요청
  - 유선, 방문 면담 등 6개월간 설득 및 협상 진행



주요시설물 : 성주정, 부천둘레길 2코스, 경기둘레길 56코스, 체력단련장 및 산불감시시설 등

## ○ 녹지활용계약 체결

- 민간토지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무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비과세 지원

### <녹지활용계약 이란? / 부천시 최초>

- 사유지를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비과세 지원
- 5년 이상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토지확보 및 공원녹지 공간 확충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녹지활용계약)

### <협약서 주요내용>

#### · 주요내용

부천시는 무상으로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소유자에게 재산세 비과세  
부천시에서 조성한 현 시설은 존치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 · 협약개요

기간 : 2022. 4. 1. ~ 2027. 3. 31. / 이후 자동연장 계약

위치/면적 : 소사본동 산○번지 66,834㎡ (산림 및 시설물 전체)

## □ 개선(추진)효과

- (예산절감) 토지 매입시 발생하는 토지매입비 128억 예산 절감  
⇒  $64,200\text{원} \times 66,834\text{m}^2 \times 3\text{배} = 128\text{억}$
- (공원확충) 5년 이상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원녹지공간 확보  
⇒ 공원녹지 확보(66,834m<sup>2</sup> / 소사대공원의 약 2배 크기)  
⇒ 주요 시설물 존치 및 5년 경과 후 매년 자동계약 연장
- (민원해결) 적극행정으로 적극적 협의, 설득 및 협약을 통해 민원해결  
⇒ 협약체결(서면)을 통해 향후 분쟁 등 해결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5백만원(기여자 천환주 외 2명)**

## 10 통신사업자 투자 유도를 통한 예산 절감

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양주시 정보통신과
담당자 : 이승호 (031-8082-5372)

### 《 성과요약 》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정보통신설비 투자 확보와 향후 5년간 약 54억원의 공공요금 예산 절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 기준으로 각 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 책정되어 용도별(A~E그룹)비용 지출
- 통신 이용 서비스별 주기적인 약정기준 정비

### □ 개선(추진)내용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LG 유플러스)와의 업무 협약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투자를 이용한 예산 절감을 위하여,
  - 제안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 및 업무협약을 체결
- 실과소별 정보통신 공공요금 지출 통합
  - 타 지자체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전체(A~E그룹)를 통합하지 않고 개별 서비스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 실과소별 공공요금 지출을 통합하여 A~E그룹 전체로 투자 유도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약

### □ 개선(추진)효과

- 업무협약으로 정보통신설비 투자(직원용 와이파이 구축, IP-PBX, FMX 시스템, UC(모바일 통합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장비 및 IP전화기) 확보(약 24억원)
- 향후 공공요금 예산 절감(5년간 약 30억원)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4.6백만원(기여자 이승호 외 6명)

## □ 사업 추진 실적

- 양주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 계획(2022.5.)
  - 인터넷전화교환기 시스템 및 부가장비 시스템 개선
  - 인터넷(전화·WiFi)서비스 구성 및 제공 제안
  -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안
  -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방안 제안
  
- 양주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 평가(2022.5.)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참가 업체 평가 실시
  - 주요 사업 내용(협약일로부터 5년간)
    - 인터넷전화교환기 최신버전 업그레이드
    - H/W 장비 교체(CallServer, 중계대, 과금 서버, 녹취 서버 등)
    - 전화기 500대 이상
    - 인터넷(전화·WiFi)서비스 제공
    -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
  
- 양주시 - 사업자(LG 유플러스) 간 업무협약 전 협상(2022.6. ~ 10.)
  - 사업자 최종 선정(LG 유플러스)으로 우리 시와 업무협약 지속적인 협상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관련 협약 보고(2022.10.17.)

## □ 사업성과

- 우리 시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 투자 유도 및 이용요금 협약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54억원의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부담 해소

## 11 교육경비 지원사업 예산절감

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
담당자 : 정세나 (031-828-4452)

### 《 성과요약 》

- 교육경비의 지속적 증가로 교육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하여 교육사업 중 교육청과 시가 협력·대응하는 사업의 분담비율 하향조정 등을 통해 사업량은 유지한 채 예산을 26억원 이상 절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도교육청 「2022학년도 유·초·중·고·특수·기타학교 학교급식경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비 지원 대응부담은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결정되는 사항임에도, 분담비율 산출기준 부재에 따라 의정부시는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분담비율로 사업 추진
- 교육청에서 대응사업 도입 시(2001년)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담비율을 정하였으나,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명백한 기준 없이 교육청이 일방적인 분담 비율을 적용
- 특수교육지도사 신분이 당초 기간제(학교소속)에서 교육청공무직(교육청소속)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근거나 기준없이 시에 인건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

### □ 개선(추진)내용

- '23년 학교급식경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회의에서('22.9.2./교육청 주재)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 분담비율 산정 개선 필요성 제기
- 지역별 차등 분담하는 대응사업에 대해 형평성 해소를 위한 기준 마련 및 시 재정상황 반영한 분담비율 하향 조정 요청(시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특수교육지도사 지원사업 중 시 예산 지원의 당위성 및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 제기 및 관계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지속적 논의

## □ 개선(추진)효과

### ○ 학교급식경비(약 13억원 절감)

- 분담비율 산정근거 요청(시→교육청)에 따라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분담비율 산출기준 마련**
- 학교급식 지자체 **분담비율 하향** 조정

구분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존(%)	45	36.44	37.67	28
변경(%)	40	31.94	33.56	28

### ○ 대응사업(약 9억 6천만원 절감)

- 교육경비지원사업 분담비율 조정(안) 수용, **분담비율 50% → 30%**으로 하향

### ○ 특수교육지도사 자원사업(약 3억 2천만원 절감)

- 시에서 지원하던 일부 학교까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기로 협의 완료**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3백만원(기여자 정세나 외 3명)**

표 1 : 경기도 교육청(2022.04.01 기준)

등록번호	경희분 2155-1-1207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교육청(소년회)과장	교육문화국장
등록일자	2022. 8. 24	장제나	이민희	이주한	이재호
결재일자	2022. 8. 24				
공개구분	비공개(제)				

교육대응지원사업 부담비율 조정 검토보고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2022년 8월 24일 (수) 14:00

교육대응지원사업 부담비율 조정 검토보고

의정부시는 2004년부터 도교육청·지자체 대응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재정 상황이 변화하였음에도 대응비율(50:50)은 변경되지 않아 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명확한 기준 마련 및 부담비율 하향(50%→30%)**을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하고자 함.

I 현황

- 추진근거
  -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2022년 대응 사업 현황

사업명	대응비율(%)	지비(천원)	사업내용
계		3,890,000	
학교 시설개선 지원	50:50	2,200,000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학교 프로그램 협력사업	50:50	150,000	드림메이커 문양교 지원
정보화기자재 보급사업	50:50	1,000,000	태블릿 지원 사업
생존수영	50:50	340,000	관내 초 3-4학년 대상
경기꿈의학교	50:50	200,000	청소년 학교밖 교육 지원

※2022년 교육경비 총액상액: 226억(일반사업 29억, 대응사업 39억, 무상교육 148억, 자비사업 등 10억)

□ 경기도 시·군 대응비율

분담비율(%) 교육청·시·군	시·군
70 : 30	양평, 동두천, 연천, 가평, 포천
60 : 40	여주, 안성, 양주
50 : 50	안양, 광명, 광태, 군포, 의왕, 오산, 광주, 김포, 시흥, 의정부,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수원, 과천, 부천, 안산, 화성, 하남, 성남, 이천, 용인

- 1 -

II 문제점

- 대응지원사업 부담비율 기준 불명확
  - 당초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결정하였으나 현재는 **명확한 기준 없이** 도교육청의 내부 방침만으로 추진되고 있음

※ 대응지원사업 부담비율 조정(당초)

연도	기준(재정자립도)	지자체 분담비율	비고
2004	50% 이상	50%	의정부시: 50%
	50% 미만	40%	
2006	80% 이상	70%	의정부시: 60% <sup>(96%→50%)<sup>(18)</sup></sup>
	60-79%	60%	
	50-59%	50%	
	40-49%	40%	
	40% 미만	30%	

▶ 당초 기준에 따르면 의정부시 분담비율은 30%가 적정함.

□ 재정건전성 악화

- 최근 5년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28.35%→21.08%)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내 최하위로 지자체 고유사업을 위한 재정 마련 필요
- 재정자립도 기준 의정부시는 **포천, 양주, 안성보다 하위이나 대응비율은 더 높은 실정임** ※ 대응비율: 포천-30%, 양주, 안성-40%, 의정부-50%

〈2022년 경기도 재정자립도 하위 TOP 10〉



□ '대응사업' 취지 변질

- 2005년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대응투자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르면 "대응사업"은 "지자체가 학교사업에 대한 투자지지는 있으나 예산이 부족한 경우 교육청이 부족분을 부담하는 취지"였으나, 현재는 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부족분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III 요청사항

□ 부담비율의 명확한 기준 제시

- 지자체별로 차등을 두어 부담비율을 정하는 사업은 정확한 산정 근거 등 기준을 제시하여 행정성 문제 해소

□ 2023년 대응사업 부담비율 하향 조정 (50% → 30%)

- 재정자립도 하락을 사유로 2017년 부담비율 하향요청 하였으나 인구규모가 비슷한 평택, 시흥, 파주 대비 교육경비가 적어 미반영됨, ⇒ 의정부시는 타시군 대비 학생수가 적어 총인구대비 교육경비 부담액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함.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의정부	진포	파주	시흥	광태
출인구	464,262	485,882	486,131	512,455	568,405
학생수 (학생비율)	45,656 (9.72)	63,283 (12.68)	58,426 (11.69)	61,650 (11.79)	63,561 (11.18)
교육경비	22,576	30,840	32,670	25,292	39,327
학생 1인당 교육경비	500원	503원	574원	418원	618원

※ 출인구, 학생수 (2022. 3. 기준 / 정기통계, 교육지원청 자료 참조)

- 1 -

1

- 재정자립도가 높은 평택(41.3%), 시흥(37.6%), 파주(36.9%)는 의정부(21.8%)와 비교 대상이 아니며,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여주, 포천, 양주와 비교하여 대응비를 하향 조정 필요

□ 사전협의 완료 후 예산 편성

- 시와 사전협의 완료 전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속사업을 이유로 사전협의 없이 예산편성을 진행하는 사례 방지 필요

IV 추진계획

- 2022. 8. 26. 限 : 대응사업 분담비율 조정 요청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2022. 8. 29. - 9. 7 : 2023년 대응사업 협의(교육지원청)
  - ※ 사전협의 미이행 사업 2023년 분예산 마련법
- 2022. 9. 8. : 2023년 분예산 편성 계획 수립

붙임 '06년 학교대응투자사업비 집행 계획(경기도교육청) 1부, 끝.

등록번호	경기교육청(경기교육청)2023-01-01 1800300	주무관	교육지원청장	교육청소관개 기장	교육문화국장
등록일자	2022. 8. 24.	서명자	최은희	지부관	전길 2022. 8. 24
검제일자	2022. 8. 24.	공개구분	비공개(5)		이계승

학교급식경비 분담비율 조정 검토보고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학교급식경비 분담비율 조정 검토보고

경기도교육청 방위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을 우리 시 재정 여건에 따라 분담비율 하향 조정을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하고자 함

I 사업현황

- 사업명: 사립유·초·중·고 학교급식경비 지원
- 지원근거: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전대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교(97개교)
- 지원인원: 48,720명 ※2022. 3. 31 기준
- 지원방법: 학교로 연 1회 보조금 교부
- 예산액: 14,221,598천 원
- 재원분담비율

구분	2022년(%)		
	교육청	강/도	의정부시
사립유	55	0	45
초등학교	50.27	13.23	36.44
중학교	49.31	13.02	37.67
고등학교	52	20	28

○ 최근 5년 지원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액	8,105,251	9,173,234	10,999,860	12,643,255	13,997,535
지원인원	38,931	38,719	51,511	49,548	48,435
지원대상	사립유, 초, 중		사립유, 초, 중, 고		

II 문제점

○ 시군별 분담비율 기준 불명확

- 경기도교육청 「2022학년도 유·초·중·고·특수·기타학교 학교급식 경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비 지원 대응부담은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결정되는 사항임
- 현재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시·군보다 높은 분담비율로 급식경비 지원
  - ※ 재정자주도는 현재 최하위(49.7%)로 비슷한 시·군 많음

시군명	지방 자립도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사군	교육	사군	교육	사군	교육	사군
의정부	21.1	55	45	63.56	36.44	62.33	37.67	72	28
여주	21	60	40	68.06	31.94	66.44	33.56	72	28
포천	22.8	60	40	68.06	31.94	66.44	33.56	72	28

\* 2022. 8. 31 기준

○ 재정건전성 악화

- 우리 시 재정건전성 악화로 지자체 고유사업을 위한 재정 마련이 필요하며, 지자체 재정규모를 고려한 학교급식경비 대응비용 변경을 기요청(2018. 10.) 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음

< 근거자료 ① > 1인당 자체수입 경기도 내 최저 수준

구분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천원)
의정부	546
한국	2,303
강기도	2,308

\*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2022년 자체수입 예산액 / 주민등록 인구수 (천원)

<근거자료 2> 사회복지비 비율 경기도 내 최고 수준

구분	사회복지비 비율(%)
의정부	51.04
전국	39.37
경기도	43.57

\* 사회복지비 비율: 2020년 사회복지분야 결산액 / 재출원잔액 (불입)

○ 교육경비 지원현도

-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원현도(일반회계 자체수입액의 9%) 육박

\* 근거: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III 요청 사항

○ 분담비율 하향 조정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립도가 우리 시와 유사하거나 보다 높은 시·군(여주, 안성, 양주, 포천 등)과 동일한 분담비율로 학교급식경비 지원

구분	현재(%)		조정(안)(%)		증감(%p)	
	교육* 우리 시	우리 시	교육 우리 시	우리 시	교육 우리 시	우리 시
사립유치원	55	45	60	40	5	△5
초등학교	63.56	36.44	68.06	31.94	4.5	△4.5
중학교	62.33	37.67	66.44	33.56	4.11	△4.11
고등학교	72	28	72	28	-	-

○ 분담비율의 명확한 기준

- 사전 협의 없이 도교육청 내부 방침만으로 결정된 분담비율로 시의 재정부담 가중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립도에 근거한 시·군별 분담비율 산출기준 필요

IV 향후 계획

- 2022. 8. 경기도 교육청에 분담비율 하향 조정 요청
- 2022. 9. 2023년 본예산 편성 개회 수립

붙임1 2022년 학교급식경비 시·군별 분담비율 현황

시군명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농어촌 도시			교육	시군	교육	시군
	교육	시군	교육	교육	시군				
수원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성남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안양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과천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부천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광명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안산	50	50	100	59.32	40.68	57.03	42.97	72	28
평택	50	50	100	59.32	40.68	57.03	42.97	72	28
군포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의왕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여주	60	40	100	68.06	31.94	66.44	33.56	72	28
화성	50	50	100	59.32	40.68	57.03	42.97	72	28
오산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광주	50	50	100	59.32	40.68	57.03	42.97	72	28
하남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양평	70	30	100	-	-	75.91	24.09	72	28
이천	50	50	100	59.32	40.68	57.03	42.97	72	28
용인	50	50	100	59.32	40.68	57.03	42.97	72	28
안성	60	40	100	68.06	31.94	66.44	33.56	72	28
김포	50	50	100	59.32	40.68	57.03	42.97	72	28
시흥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의정부	55	45	-	63.56	36.44	62.33	37.67	72	28
동두천	70	30	-	76.31	23.69	75.91	24.09	72	28
양주	60	40	100	68.06	31.94	66.44	33.56	72	28
고양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구리	50	50	-	59.32	40.68	57.03	42.97	72	28
남양주	50	50	100	59.32	40.68	57.03	42.97	72	28
파주	50	50	100	59.32	40.68	57.03	42.97	72	28
연천	70	30	100	-	-	75.91	24.09	72	28
포천	60	40	100	68.06	31.94	66.44	33.56	72	28
가평	70	30	100	-	-	75.91	24.09	72	28

붙임2 시·군별 재정현황 관련 자료

시군명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천원)	사회복지비 비율(%)
수원	44.2	55.7	960	45.1
성남	62.2	70.6	1,734	45.1
안양	38.9	57.3	934	46.8
과천	38.2	59.1	2,054	26.1
부천	31.2	55.6	703	54.7
광명	33.9	60.7	922	49.2
안산	36.8	58.5	967	38.0
평택	41.6	60.8	1,247	36.3
군포	31.5	61.1	819	47.2
의왕	36.3	64.6	1,038	43.9
여주	21.0	67.3	1,380	23.9
화성	58.6	69.1	1,702	37.7
오산	31.5	60.5	793	37.2
광주	36.0	52.2	996	41.0
하남	47.6	62.0	1,115	47.0
양평	16.8	62.5	1,029	32.1
이천	44.6	57.6	1,844	34.1
용인	46.7	60.6	1,173	34.0
안성	27.3	61.6	1,423	30.3
김포	32.8	64.6	912	41.7
시흥	37.7	57.3	926	44.2
의정부	21.1	49.7	546	51.0
동두천	13.1	57.8	670	40.5
양주	24.6	57.6	956	38.7
고양	22.8	56.2	765	47.9
구리	28.0	57.4	858	37.2
남양주	29.8	58.1	736	40.4
파주	28.9	53.4	895	44.2
연천	14.5	62.9	1,682	26.7
포천	22.6	64.7	1,221	30.3
가평	16.8	70.4	1,271	32.1



# 참고 3

# 학교급식 관련 기초지자체 담당자 회의 결과



## 경기도 교육청



수신 수신자 참조  
(관류)

제목 2023년도 학교(무상)급식경비 본예산 편성 관련 기초지자체 담당자 회의 결과  
알림 및 의견요청

1. 귀 기관의 경기도교육청 위촉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학교급식법령-기188(2022. 8. 31.)호
3. 2023년도 학교(무상)급식경비 예산 편성 관련 경기도청 및 기초지자체 **협의결과**를 회의가 같이 알려드리며,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오니, **2022. 9. 2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주요 변경사항
- 1) 분담비율 개선방안
  - 2) 급식 지원일수 확대
  - 3) 학교급식 지원단가 인상
  - 4) 기초지자체 급식경비 교직원특별회계 편입 시한

붙임 협의결과 자료 1부(의견수령 서식 포함). 끝.

## 경기도 교육청



수신자 경기도청, 31개 시군 평택부지(학교특정소년과당)

구분	이탈수	급식관리담당 시무관	김현희	학교급식담당 과장	이광	문의처
주소	서울	경기도청	교육정책과-105	12002, 9, 24		
전화번호	031-245-0592	팩스번호	031-245-0592	이메일주소	edu@gedo.go.kr	비밀번호

### - 2023년도 학교급식경비 본예산 편성을 위한 - 기초지자체 담당자 회의 결과 안내

- 2023년도 학교급식경비 본예산(안)의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분담주체인 경기도청 및 기초지자체에 22. 9. 2(금) 안내하였으며,
- 22. 9. 2(금) 불참한 기초지자체에, 이날 주요 협의결과를 안내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도 학교급식경비 본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고자 함.

#### I 협의 개요

- 일시 : 2022. 9. 2(금) 14:00 ~ 16:00
- 장소 : 도교육청 방촌홀
- 참석기관 : 경기도청 및 15개 시군
  - 참석인원 : 경기도청 1명, 시군 담당자 18명, 도교육청 급식관리담당 5명(총 24명)
  - <미참석(16곳)> 가평, 과천, 김포, 남양주, 동두천, 성남,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의왕, 이천, 파주, 포천

#### II 2023년 학교(무상)급식경비 본예산(안)

○ 예산현황 - 전년 대비 1,443억원 증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본예산 (A)	2023 본예산 (B)	증감 (B-A)
직접비발운영비	1,054,084	1,182,222	128,138
분담예산 일간비	296,347	312,587	16,240
합계	1,350,431	1,494,809	144,378

※ 교육청 전액 부담 일간비(적유과제비 포함) 제외(339,779,042천원)

#### III 협의 내용

##### I 분담비율 설명 및 개선방안 제시

- ▶ (협의내용) : 분담비율 설명
  - 분담비율은 2010년 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 교육청·지자체 50:50으로 시작하였음.
  - ※ 지자체가 없어 부담한 경우 : 성남·과천·용인(70), 의정부(60)
  - ※ 지자체가 적게 부담한 경우 : 여주·안성·양주·포천(40), 양평·동두천·연천·기평(30)
  - 그러나 2015년부터 경기도청이 급식경비 분담에 참여하였고, 분담 조건으로 경기도청 분담금을 학교급 별로 교육청과 지자체의 급식 경비 부담원화를 위해 교육청 40, 지자체 60으로 분배하였음.
  - 이후 매년 경기도청 분담 금액이 증가하면서 현재 분담 비율로 결정됨.

##### <2014~2022년도 무상급식경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교육청	도청	시군	계
2014	421,379		325,085	746,464
2015	394,977	23,700	318,000	736,677
2016	395,447	23,700	318,574	737,721
2017	391,510	103,300	263,104	757,914
2018	423,888	103,209	292,453	819,711
2019	513,266	124,381	355,765	993,392
2020	621,368	169,959	412,034	1,203,361
2021	627,284	168,997	416,136	1,212,417
2022	895,380	191,000	464,051	1,550,431

- 따라서 분담비율은 최초 무상급식을 시작할 때는 50:50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경기도청이 분담에 참여하면서 교육청과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분담비율이 조정되었고, 현재의 교육청, 도청, 기초지자체의 분담비율이 결정된 것임.

##### ▶ (회의결과)

- 현재 분담비율을 준수하되, 하위 30% 지자체(9개 기관)의 유·초·중·고별 분담비율을 매년 재정자립도에 따라 변동
- 지자체 의견 수렴 후, **과반수 동의 시 추진** (과반수 동의 안 될 경우, 현 비율 유지)

▶(예시) 중학교 시군 분담비율

(단위: %)

2022년도				2023년도			
시군별	순위	재정자립도	비율	시군별	순위	재정자립도	비율
○○	1	62.2	42.97	○○	1	63.3	42.97
○○	2	58.6	42.97	○○	2	62.1	42.97
○○	3	48.7	42.97	○○	3	49.3	42.97
○○	4	47.6	42.97	○○	4	47.6	42.97
○○	5	44.6	42.97	○○	5	43.5	42.97
○○	6	44.2	42.97	○○	6	43.4	42.97
○○	7	41.6	42.97	○○	7	42.1	42.97
○○	8	38.9	42.97	○○	8	39.3	42.97
○○	9	38.2	42.97	○○	9	38.3	42.97
○○	10	37.7	42.97	○○	10	37.6	42.97
○○	11	36.8	42.97	○○	11	36.8	42.97
○○	12	36.3	42.97	○○	12	36.7	42.97
○○	13	36	42.97	○○	13	36.1	42.97
○○	14	33.9	42.97	○○	14	33.2	42.97
○○	15	32.8	42.97	○○	15	32.7	42.97
○○	15	32.8	42.97	○○	16	32.1	42.97
○○	17	31.5	42.97	○○	17	31.5	42.97
○○	17	31.5	42.97	○○	18	31.2	42.97
○○	19	31.2	42.97	○○	19	30.2	42.97
○○	20	29.8	42.97	○○	20	29.7	42.97
A	21	28.9	42.97	C	21	28.3	42.97
B	22	28	42.97	D	22	28.2	42.97
C	23	27.3	33.56	A	23	27.9	33.56
D	24	24.6	33.56	B	24	26.3	33.56
E	25	22.6	33.56	E	25	25.6	33.56
F	26	21.1	33.56	F	26	25.1	33.56
G	27	21	33.56	G	27	23.1	33.56
H	28	16.8	24.09	H	28	22.1	24.09
I	28	16.8	24.09	I	29	20.1	24.09
I	30	14.5	24.09	J	30	18.2	24.09
K	31	13.1	24.09	K	31	14.2	24.09

▶(분담비율 변경) : 재정자립도 순위에 따라 분담비율 조정

- 재정자립도 순위(하위 30%, 9개 기관)가 2022년도에서 2023년도처럼 변경되었을 경우(A, B 하락, C, D 상승) 분담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
- 즉, 분담비율 값은 고정하되 재정자립도 순위에 따라서 하위 30% 시군의 순위가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 A, B 기관은 2022년 대비 2023년 재정자립도 순위가 하위 30%에 해당 되어 2023년에는 분담비율이 42.97 → 33.56으로 변경되고, C, D는 재정자립도 순위가 하위 30%에 해당되지 않아 분담비율이 33.56 → 42.97로 변경됨

2022년도		2023년도		비고
시군	비율	시군	비율	
A	42.97	C	42.97	
B	42.97	D	42.97	
C	33.56	A	33.56	하위 30%
D	33.56	B	33.56	하위 30%

☞ 학생수 증가 : 학교수 21개 감소, 학생수 54,156명 증가

▶ 학생수 증감 현황

(단위: 교, 명)

구분	2022년 본예산(A)		2023년 본예산(B)		증감현황(B-A)		비고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유	2,203	163,748	2,165	175,245	-38	11,497	
초	1,343	759,822	1,353	786,198	10	26,376	
중	657	376,833	664	386,445	7	9,612	
고	486	341,448	486	347,625	0	6,177	
특수	36	4,976	36	5,264	0	288	
기타	25	4,115	25	4,321	0	206	
계	4,750	1,650,942	4,729	1,705,098	-21	54,156	

▶ (협의내용)

- 2023년도 본예산(안)의 학생수는 2022. 6. 1. 기준 교육지원청이 각급 학교 단위로 취합한 자료로, 학생수가 과다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담당관 교육통계 자료를 요청·비교하여 학생수 감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교육통계자료를 기초로 3% 이내 감처리 필요

▶ (회의결과) 특별한 의견 없음

▶ 교육정보담당관 교육통계자료 결과 [2022.9.7]

(단위: 교, 명)

구분	2023년 본예산 취합자료 (A)		2022.9.1. 기준 통계자료 (B)		증감현황 (B-A)		비고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유	2,165	175,245	2,175	153,149	-10	-22,096	
초	1,353	786,198	1,320	767,346	-33	-18,852	
중	664	386,445	653	380,345	-11	-6,100	
고	486	347,625	486	340,895	-	-6,730	
특수	36	5,264	36	4,949	-	-315	
기타	25	4,321	25	4,321	-	-	
계	4,729	1,705,098	4,695	1,651,005	-34	-54,093	

☞ 급식 지원일수 확대 : 사립유 201일(+1), 공립유·초교 188일(+1)

▶ (현, 지원일수)

사립	유		초	중	고	특수
	공립	사립				
200	187	187	187	185	185	187

▶ (협의내용)

- 유치원은 180일 이상, 초·중·고교는 190일 이상 수업일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급식정비 지원일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사립유치원 220일, 초등학교 190일)하고 있는 실정임.
  - ※ 사립유치원 평균 수업일수는 220일이며, 초등학교는 개학식, 방학식, 재입학일수를 제외하여 행사일정을 187일에 맞춰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지원일수를 각각 1일 증가, 본예산에 반영함
- 지자체 의견수렴 후, 과반수 동의 시 추진 (과반수 동의 안 할 경우, 현 지원일수 유지)

▶ (회의결과) 특별한 의견 없음

▶ (1일 추가 소요액)

(단위: 천원)

구분	유치원		초	합계
	공립	사립		
추가 소요액	231,821	432,674	3,084,310	3,748,805

※ 2023년 본예산(안)에 추가소요액이 반영되었으므로, 향후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학교급식 지원단가 인상 : 식품비 8.2%, 운영비 3.2%

▶ (협의내용)

- 최근 2년간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반영(2023년 동일하게 적용)
- 지자체 의견 수렴 후, 과반수 동의 시 추진 (과반수 동의 안 할 경우, 대안 제시)

▶ (회의결과) 특별한 의견 없음

※ 최근 2년간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단위: 전년동월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평균	
	농산물	10.6	13.5	13.3	11.1	9.7	10	16.2	13.7	13.1	12.1	10.4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8.2	
증감률	7.8	3.7	0.5	7.6	7.8	6.3	1.6	0.4	1.9	4.2	4.8	7.1

※ 최근 2년간 생활물가지수

(단위: 전년동월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평균	
	생활물	0.5	0.9	-0.7	-0.1	-0.1	0.3	1.2	1.5	2.8	3.3	3.0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3.2	
증감률	3.4	3.1	4.8	5.2	4.8	4.1	4.1	5	5.7	6.7	7.4	7.9

⑤ 물가연동제 안내

- (협의내용)
  - 물가변동에 따른 지원단가 조정을 통해 학교급식경비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
  - 실행 가능 여부 검토 후, 추진할 경우 추후 안내 예정
-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 없음

⑥ 기초지자체 급식경비 교육비특별회계 편입 협조 요청

- (협의내용)
  - 학교급식경비 예산의 통합권리와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기초지자체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입 요청
  - 지자체 의견수렴 후, 추진여부 검토
-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 없음
  - ※ 교육비특별회계 편입 설명자료 참조(참고1)
- 교육비특별회계 편입에 따른 장·단점 (교육청)

구분	내용
장점	① 학교급식예산 통합 관리 가능 - 교육청+도청+시·군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일원화하여 집행내역 바로 확인 가능 ② 학교 정상업무 경감 - 학교는 교육청, 시군에 각각 급식경비를 정산하여 보고하였으나, 기초지자체 예산이 교육회계로 편입 될 경우 교육청, 시군에 정산보고 없이 교육청에 집행액만 보고하고, - 교육청은 학교 집행액 취합 후,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 처리

(기초지자체)

○ 세종특별 비법정선출금(703-02) 전용금으로 편성 시

구분	내용
장점	정산이 필요 없어 급식경비 담당자 업무경감 효과
단점	① 급식경비 보조금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용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필요 ② 정산이 없어 집행잔액 회수 불가 ③ 이자 없음

○ 세종특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308-08)으로 편성 시

구분	내용
장점	도교육청 일괄 정산에 따라 학교급식경비 정산서류* 간소화 - 단, 경기도청 정산보고 서식 준용, 정산서류(지출결의서, 통합지출부) 폐지를 위해 시군과 협의 필요
단점	① 급식경비 보조금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용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필요 ② 정산을 통해 집행잔액은 회수 가능하나, 교육청이 주경에 반영하여 반납해야 하므로 반납일이 늦어짐(익년도 1~2월 → 익년도 10~12월) ③ 이자 회수 가능(도교육청 담당부서와 협의 중)

IV 양우 계획

- (2022. 9월 중) 기초지자체 의견수렴 후 최종 본예산안 확정
- (2022. 12월 중) 2023년도 학교급식경비 지원계획 안내

참고1 기초지자체 학교급식경비 예산 교육비특별회계 편입 설명자료

○ 추진 배경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21.12.28)됨에 따라 학교급식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96 바·다 및 지·은·라(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육청과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에 지출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96 바·다 및 지·은·라(가)는 각각 시·군·구 교육청, 교육청에 전출된 후 2년 및 3년 동안 보조할 수 있는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입할 수 있다. [2021.12.28개정]

- 추진 목적
  - 기초지자체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입하여 학교급식경비 회계를 일원화하고자 함
- 추진 방법
  - 기초지자체는 학교급식경비 세종특별 ①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308-08) 또는 ②비법정선출금(703-02)으로 편성 가능
  - 세종특별 편성 근거
    - 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308-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 ② 비법정선출금(703-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9항
  - ※ 세종특별에 따른 기초지자체 장단점 비교표 참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종예산 성립별 분류

구분	대상액	실정 (항목별 포함)	비고
300	308 지방단체등 이전	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 사·군 및 시·군·자치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생활구역 안에 있는 공동학교 이외 각종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2.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물의 지원비 3. 학교급식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4. 도시개발 제29조에 의한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구분	대상액	실정 (항목별 포함)	비고
700	703 교육비특별회계선출금	02. 비법정선출금 6. 교육정보화지원사업 등 한민법령에 따라 교육관련 미충출 보조하는 경비 1.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소득의 증액에 따른 과세적인 분담금」 2. 「피담질질금등」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되고 기간내에 회수	



## 12 응벽공법 변경을 통한 사업비 절감

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광주시 도로사업과
담당자 : 이창승 (031-760-4742)

### 《 성과요약 》

- 전국적인 철근 및 레미콘 수급지연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공법인 L형옹벽 설치 대신 보강토옹벽 공법으로 변경하여 예산절감 및 원활한 공정추진 실현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태전동 광남고등학교 앞(중로1-19호선외) 도로개설공사 현장은 태전지구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체도로 건설사업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나,
- 당시 전국적인 철근 및 레미콘 수급 부족에 따라 현장에 관급자재(철근,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옹벽공사 추진이 어려워 후속공정 추진 및 연내 임시개통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 개선(추진)내용

- L형옹벽을 철근과 현장 콘크리트가 사용되지 않는 보강토블록 옹벽으로 변경하여 예산절감 및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공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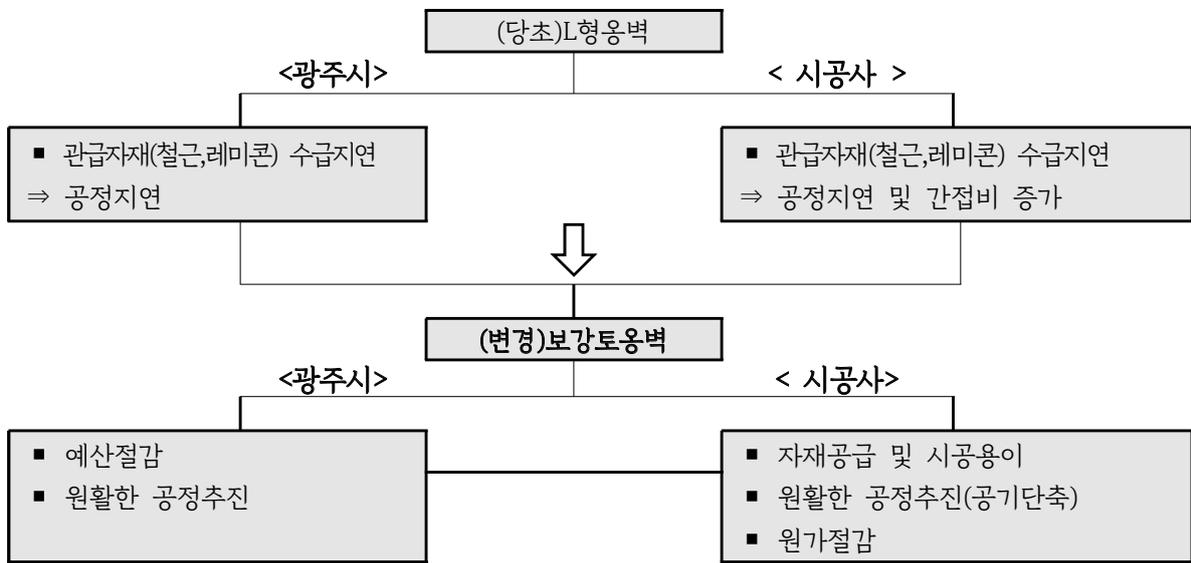
### □ 개선(추진)효과

-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공정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법 변경을 감리단에 제안 및 검토지시하여 예산절감 및 공기단축을 실현하였으며 2022년 말 임시개통하여 태전지구 교통량 분산 및 주민편의에 일조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3백만원(기여자 안병하 외 2명)

□ **옹벽 공법 변경을 통한 예산 절감**

- 본 도로공사 현장은 L형옹벽 설치 현장이었으나, 당시 전국적인 철근 및 레미콘 수급 지연에 따라 공사추진이 어려워 보강토옹벽으로 공법 변경하여 예산절감 및 원활한 공정추진 실현
- 예산절감 규모 : 84,681천원
  - 도급공사비 48,046천원
  - 관급자재비 39,595천원



## 13 조달청 예산 확보로 토평교 염수살포장치 설치비 절감

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구리시 도로과
담당자 : 이용규(031-550-2436)

### 《 성과요약 》

- 조달청에서 혁신제품 사용 확충을 위해 시행 중인 2022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품을 신청하여 시비 예산 없이 제설 장치 구축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토평교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입주 이후 통행량이 급격히 늘어난 지역이나, 시 외곽에 위치한 대상(하천횡단 교량)의 특성상 신속한 제설이 어려웠음
- 특히 남양주 방면 진입 부분은 경사도가 있는 구간으로, 상시 원격감시를 통한 강설 시 신속한 제설이 필요

### □ 개선(추진)내용

- 조달청에 「2022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구매」(전액 조달청 예산 추진) 사업을 신청하여 시범사업으로 선정, 별도 시비 예산편성 없이 토평교 염수 살포장치 설치 사업 추진

### □ 개선(추진)효과

- 토평교는 강설시 염수살수차량 운용을 통해 제설을 진행하는 구간으로 시비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되어 전액 조달청 예산으로 설치함으로써 시비 2억여원을 절감함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3백만원(기여자 이용규 외 7명)

## 참고

## 물품개요 및 설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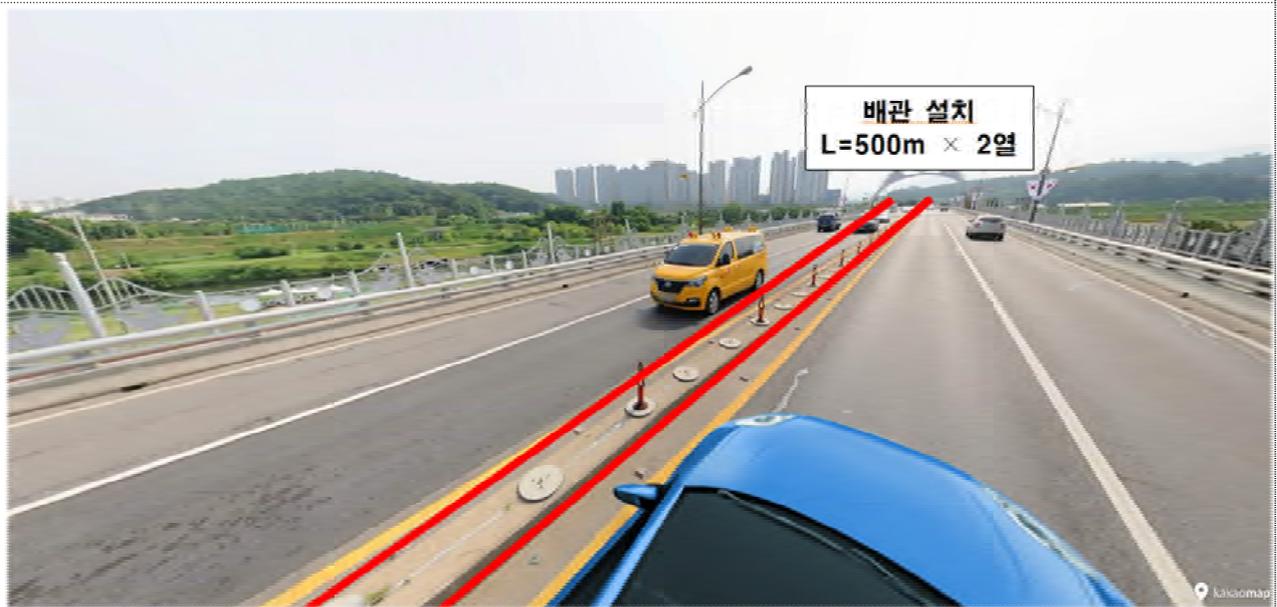
### ○ 물품개요

- 제품내역
  - 스마트 클린로드 시스템(도로관리용 제설용액분사 통합시스템)
- 주요성능
  - cctv로 전송된 현장상황 실시간 감시 및 모니터링
  - 원격제어로 펌프 가동 및 염수분사를 통한 제설

### ○ 위치도



### ○ 대상구간 전경(토평교 일원(L=500m))



## 14 반려동물 놀이터 상수도 급수 공사비 절감

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구리시 산업지원과
담당자 : 안도일 (031-550-2315)

### 《 성과요약 》

- 반려동물 놀이터 개소시 시 자체인력으로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 예상 견적 34백만원의 약 1/10 의 예산으로 공사를 완료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2020년 반려동물 놀이터 설계시 상수도 급수 공사는 외부로부터 관로를 끌어와 공사 비용이 33,640천원으로 추정되었으나, 당시 예산 미확보로 공사가 추진되지 못함
- '21년 2월 장자호수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개소 당시 급수대는 설치되었으나, 수도 미공급으로 급수탱크로 월 2회 용수 공급만 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었음

### □ 개선(추진)내용

- 반려동물 놀이터 상수도 급수 공사시 자체인력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절약하여 예산 절약에 공헌함
- 상수도를 매립 공사 시 공원 산책로를 피해서 작업을 실시하여 공원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포장도로 및 산책로 훼손 없이 공사를 완료하였음

### □ 개선(추진)효과

- 시 자체인력으로 공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절약하여 예상 견적 33,640천원의 약 1/10 예산으로 공사를 마무리함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1백만원(기여자 안도일 외 2명)





참고 3

반려동물 놀이터 상수도 공사 현장 사진





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안산시 노인복지과
담당자 : 김현주 (031-481-3533)

### 《 성과요약 》

- 기존 경로식당 무료급식 쌀을 일반쌀 단가(20kg당 52,000원)로 구매해 왔으나,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기관에 질의 요청과 요구를 거듭하여 무료급식단체로 지정받아 저렴한 정부양곡단가(20kg당 6,710원)로 쌀을 구매하게 됨 (약 8,831만원 예산 절감)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의 여파로 부식 구입비용 등이 상승하여, 무료경로식당 및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
- 또한, 아동급식의 경우 7,000원(1인1식)을 지원하는 것에 반하여, 무료 경로식당 어르신들께 공급하는 급식단가는 몇 년째 3,000원(1인1식)에 머물러 있음
- 무료급식 대상자가 대부분 저소득 어르신이고, 하루 한끼만 급식소에서 드시는 어르신들도 많은 상황임

### □ 개선(추진)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정부양곡관리양곡 매출 요령」 “무료급식”용 공급기준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는 무료급식단체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경로식당을 “정부양곡 공급 무료급식단체”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었음

※ 무료급식단체로 지정되면 1포당(20KG) 6,710원(2022년 기준)에 구입 할 수 있음

### ○ 예산절감 노력

- (2022.8. ~ 9.) 농림수산식품부 및 보건복지부, 경기도청 질의 및 “무료급식 단체 지정” 당위성 주장
- (2022.10. 4.) 경기도(친환경농업과) 정식 질의 요청(공문)
- (2022.10.17.) 경기도(친환경농업과) 조건부 승인
  - ※ 타 “정부보조금”으로 주식(쌀)구입 제한
- (2022.11.) 정부양곡 “무료급식단체” 간담회 및 신규 지정 계획(15개소)
- (2022.12.) 수요량 조사 및 실태 현지조사
- (2022.12.30.) 무료급식단체 지정서 교부

## □ 개선(추진)효과

○ 예산 절감효과(액) : 88,316천원

경로식당, 카네이션하우스 쌀 구매	⇒	무료급식용 정부양곡쌀 구매
1,950포(20kg) × 52,000(평균 구매단가) =101,400천원		1,950포(20kg) × 6,710(구매단가) =13,084천원

○ 시중 구매단가로 구입하던 쌀을 정부양곡 단가로 구입함으로써 남게 되는 차액을 다른 부식 구입에 사용할 수 있어 급식 질을 높임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이 가능해짐

**예산성과금 지급금액 : 1백만원(기여자 두현지30%, 국미호70%)**

# 참고

# (관련공문)정부관리양곡 무료급식단체 지정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안 산 시**

수신 경기도지사(친환경농업과) (경유)  
 제목 2022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무료급식단체 지정 기준 협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따른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 지원대상: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나. 지원단가: 1인 1식 3,000원
3. 경로무료급식당 운영하는 단체에 무료급식용 정부 쌀 할인 공급 대상자 지정 관련 다음과 같이 협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내 용**

무료급식용 공급대상 기준에 대한 부분 중 '다만 '정부'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는 무료급식단체는 제외'에서 '정부'의 범위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붙임 (참고자료) 2022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무료급식용 지침 1부. 끝.

**안 산 시 장**

공무직	책이호	주무관	김보훈	노인복지과 선무 2022. 10. 4.
참조자				과장 박동홍
시행	노인복지과-24202		접수	
우	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차항로 387 (고잔동) (고잔동)		http://www.ansan.go.kr/
전화번호	031-481-3533	팩스번호 031-481-3208	/ mhguk1109@korea.kr	/ 비공개(5)

청결한 안산, 행복한 시민

등록번호	노인복지과-29258	공무직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박지국
등록일자	2022. 11. 22.	국미호	두형진	박종승	원광 2022. 11. 22.
결재일자	2022. 11. 22.				정진숙
결재구분	비공개(7)				

[의견]

## 정부관리양곡 무료급식단체 신규 지정 계획

**개 요**

- 지정기간 : 2023년~
- 지정대상 : 15개 시설 신규 지정
  - 무료경로식당(13개 시설), 카네이션하우스(2개 시설)
- 지정내용 : 무료급식용 쌀 정부양곡 지정 가격으로 구입

**복 지 국**  
**노인복지과**

번화과 중성, 기회의 경기도

**경 기 도**

수신 안산시장(노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 관련 질의 회신(무료급식단체 정부양곡 공급 대상 여부)

1.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22.2.)」, 안산시 노인복지과-24202(‘22.10.4.) 호.
2. 귀 시에서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에 따른 무료급식단체 정부양곡 쌀 할인 공급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관련 지침 내용 (매출지침 43페이지)**

가. 공급대상 : 결식아동·노인, 노숙자 등 극빈층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무료급식을 하는 무료급식단체, 다만 정부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는 무료급식단체는 제외

**나. 질의 요지 및 회신 내용**

1) '정부'의 범위에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는 지 여부  
 - 정부(국가)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 지원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음.

2) 무료급식단체가 쌀을 제외한 부식에 대해서만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단체에 정부양곡 쌀 할인 공급이 가능한 지 여부  
 - 쌀을 제외하고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공급대상자로 지정)에 따라 공급 가능함. 끝.

**경 기 도**

주무관 김형관 양곡관리담당 임상영 친환경농업과 과장 2022. 10. 17. 친환경농업과 안산시

시행 친환경농업과-18487 (2022. 10. 17.) 접수 노인복지과-25935 (2022. 10. 18.)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항로 30, 21층, 친환경농업과 (의) http://www.ga.go.kr

전화번호 031-8008-5451 팩스번호 031-8008-2619 / korensb@ga.go.kr / 대국민 공개

올바른 일차로 경기도가 만들어 갑니다

## 정부관리양곡 무료급식단체 신규 지정 계획

○ 무료급식단체에 정부양곡 쌀을 공급하여,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무료 경로식당의 식재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 I 추진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 요령」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안내」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 경기도 친환경농업과-18487( ‘22. 10. 17.) 질의 회신

### II 추진방향

- 무료급식사업 중 저소득 계가노인 식사배달은 제외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대상만 지정
- 경로식당 지원 예산 외 기타 다른 보조금으로 양곡 구입 불가
- 정부양곡 공급을 통한 경로식당 주부식비 절감으로 급식 질 향상
  - \* 예산절감 예상액 101백만원(1,950포\* 52,000원)

### III 지정개요

- (지정기간) 2023. 1.~
- (공급단가) 6,710원/20kg(2022년 기준)
- (공급기준) 180g(1인 1식)
- (주요내용) 무료급식용 쌀 정부양곡 지정 가격으로 구입
- (지정대상) 15개소 신규 지정
  - 무료경로식당 13개소, 카네이션하우스 2개소

○ (지정승인서 교부) 2022. 12. 30.

- 승인조건 및 처벌규정 명시

○ (정부양곡 신청 및 공급)

- 시설별 관할 주민센터에 "정부쌀 월별 공급 요청서" 제출(매월 10일 한)  
- 신청서 확인 후 무료급식업체에 물량 결정 및 공급(매월 20일 한)

○ (사후관리)

- 무료급식단체는 정부쌀 수불대장 비치 및 작성  
- 부정유출 행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 실시

**V 행정사항**

- 무료급식단체 대상 사업설명 및 소요량 수요조사 : 2022. 12.
- 무료급식단체 지정 신청 및 정부양곡 공급 신청 : 주민센터
- 무료급식단체별 월별 공급통지서 발급 : 농업기술센터

- 붙임 1.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무료급식용) 1부.  
2. 경기도 질의회신 관련 공문 1부. 끝.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안 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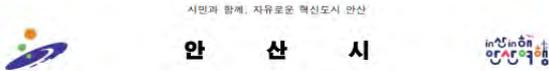
수신 상록구노인복지관 외 12개 시설  
(경유)

제목 2023년 정부관리양곡 무료급식단체 신규 지정 관련 담당자 간담회 개최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년 정부관리양곡 무료급식단체 신규 지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22. 11. 28.(월) 14:00-15:00
  - 장 소: 안산시청 내 이음카페(단원구 화랑로 387 별관 1층)
  - 참석대상: 무료급식담당 및 카네이션하우스 사업 담당자
  - 내 용: 정부양곡 쌀 무료급식단체 지정 관련 논의 및 지침서달. 끝.

**안 산 시 장**

공무직	국미호	노인정책팀장	부임지	노인복지과 전임 2022. 11. 22	과장	박용홍
참조자						
시행	노인복지과-29330	접수				
우	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고잔동)	/ http://www.ansan.go.kr/			
전화번호	031-481-3533	팩스번호	031-481-3208	/ mhjguk1109@korea.kr	/ 대공계(5)	
정열한 안산, 행복함 시민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무료급식단체 정부관리양곡 공급 대상 신규 지정 결과 알림

1. 무료급식단체 정부관리양곡 공급 대상 신규 지정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정된 무료급식단체의 정부관리양곡 신청 접수 시 **[정부쌀 월별 공급 요청서]**와 **[무료급식용 정부쌀 수불대장]**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11일까지** 노인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단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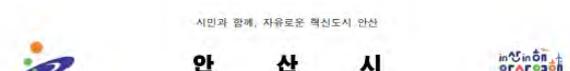
동	단체명	대표자	주소	지정승인일
사동	(사)나눔과 공존/사랑나눔경로식당	송완준	상록구 내고지3길 36	2022. 12. 5.
이동	(사)클라넷트복지법인/이동경로식당	유용진	상록구 중앙로6길 24-1	2022. 12. 5.
초지동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초지경로식당	이경수	단원구 원호로 76	2022. 12. 5
화동	화동종합사회복지관 /나눔이경로식당	김영배	단원구 화동로 118 2층	2022. 12. 6.
부곡동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부곡경로식당	김민정	상록구 성호로 303	2022. 12. 7.

- 붙임 1.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무료급식용) 1부.  
2. 정부쌀 월별 공급 요청서 1부.  
3. 무료급식용 정부쌀 수불대장 1부. 끝.

**안 산 시 장**

수신자 안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정책과장), 이동장, 사동장, 부곡동장, 화동장, 초지동장

공무직	국미호	노인정책팀장	부임지	노인복지과 전임 2022. 12. 8	과장	박용홍
참조자						
시행	노인복지과-30889	접수				
우	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고잔동)	/ http://www.ansan.go.kr/			
전화번호	031-481-3533	팩스번호	031-481-3208	/ mhjguk1109@korea.kr	/ 비공계(5)	
정열한 안산, 행복함 시민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무료급식단체 정부관리양곡 공급 대상 신규 지정 결과 알림

1. 무료급식단체 정부관리양곡 공급 대상 신규 지정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정된 무료급식단체의 정부관리양곡 신청 접수 시 **[정부쌀 월별 공급 요청서]**와 **[무료급식용 정부쌀 수불대장]**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11일까지** 노인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단체 현황

동	단체명	대표자	주소	지정승인일
본오1동	본오종합사회복지관/본오동경로식당	강성숙	상록구 이호로 39	2022. 12. 15.
성포동	상록구노인복지관/성포경로식당	이만영	상록구 고산로 162	2022. 12. 15.
선부1동	단원구노인복지관/단원경로식당	황인숙	단원구 선부광장1로 134	2022. 12. 26.
선부2동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선부동성당경로식당	김지훈	단원구 석수동길 5	2022. 12. 19.

- 붙임 1. 2022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무료급식용) 1부.  
2. 정부쌀 월별 공급 요청서 1부.  
3. 무료급식용 정부쌀 수불대장 1부. 끝.

**안 산 시 장**

수신자 안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정책과장), 본오1동장, 성포동장, 선부1동장, 선부2동장

공무직	국미호	노인정책팀장	부임지	노인복지과 전임 2022. 12. 28	과장	박용홍
참조자						
시행	노인복지과-32542	접수				
우	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고잔동)	/ http://www.ansan.go.kr/			
전화번호	031-481-3533	팩스번호	031-481-3208	/ mhjguk1109@korea.kr	/ 비공계(5)	
정열한 안산, 행복함 시민						



## 16 하남시 재정 TF 추진단 구축으로 지방재정 건정성·효율성 제고

분 류 : 예산절감

기관명 : 하남시 기획조정관 예산팀

담당자 : 송서현 (031-790-5611)

### 《 성과요약 》

- 4개 부서가 협업하는 재정TF 추진단 운영으로 전년대비 세입오차 비율 7.62% 상승, 순세계잉여금 667억 감소, 불용액 501억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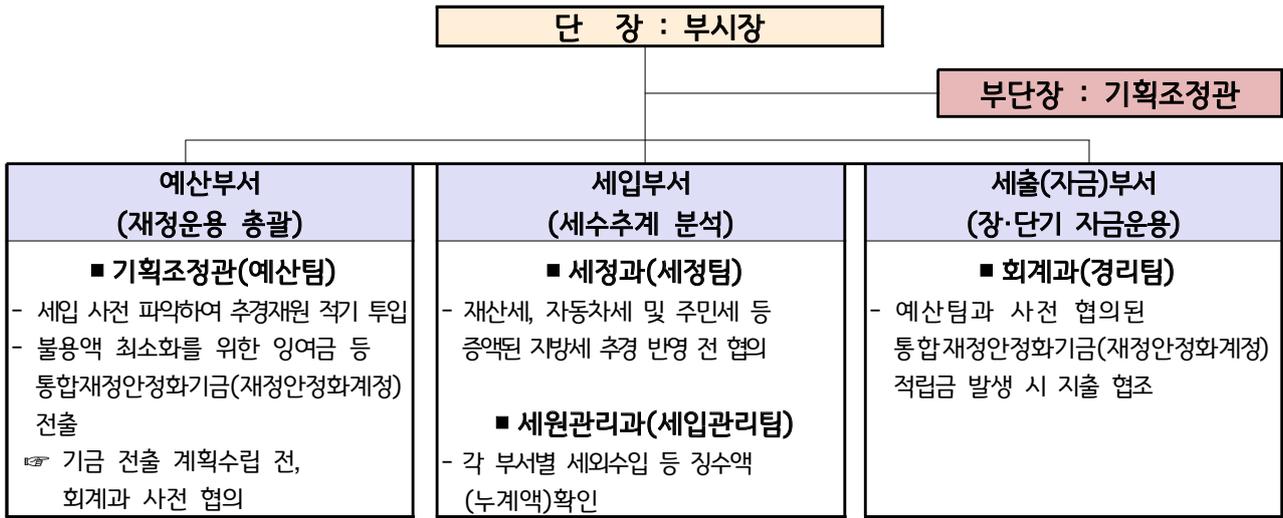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협업 부진, 문제 발생) 2021년 4회 추경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분, 순세계잉여금 유보분 등 총 1,20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 관련 부서 협의에 어려움 발생해 총 800억원만 전출  
⇒ 2021년 결산 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936억원 발생

### □ 개선(추진)내용

- '23.4.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관리계획 수립
- '22.~'23. : 재정 TF 추진단 1차~4차 정례회 개최
- '22.7.29. :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 보고
- '22.5.6. : 재정 TF 추진단 구축·운영

- (재정TF 추진단 구축·운영) 4개부서(세정과, 세원관리과, 회계과, 기획조정관)의 상호 협력으로 세입 오차 비율 및 잉여금 축소
  - (세 정 과) 공격적인 세입추계 반영
  - (세원관리과) 전부서 세외수입 수납내역 확인 및 추계치 반영 독려
  - (회 계 과)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 지방자치법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적극 지출
  - (기획조정관) 협업 통해 재정위기 극복 및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 마련



- (지속적인 모니터링) 재정TF 추진단 1월, 7월, 11월 정례회의 개최
  - 본예산, 추경 규모 협의, 세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변동분 반영 및 공유
  - 각 회계별 여유 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장·단기 자금운용
-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노력)
  - 자치단체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자체노력 촉진
  - 2023년 통합성과관리(BSC) 지표로 “부서별 예산 불용액 평가제” 신설 해 불용액 감소 목표 추진

### □ 개선(추진)효과

- (순세계잉여금 71% 감소) 20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936억원 → 2022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269억원 재정관리의 계획성·적정성 제고
- (세수오차비율개선도 전년대비 7.62% 상승) 재정분석 ‘세수오차비율개선도’ 지표(100%지향) 개선
  - 2022년 세수오차비율 : 93.09%
  - 2021년 세수오차비율 : 85.47%
- (순세계잉여금비율 7.41% 감소) 재정분석 ‘순세계잉여금비율’ 지표(하향지표) 개선

구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지표값
2022년	1,092,033	955,531	93,222	26,946	2.82%
2021년	1,111,729	915,481	196,248	93,627	10.23%
2020년	946,088	789,093	156,995	74,316	9.42%

- (불용액 501억원 감소) 예산집행 노력으로 '23년 적용 불용액 '22년 대비 501억원 감소

# IV

##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제안 사례





# 1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부적정 사용신고로 예산낭비 개선

분 류 : 예산낭비신고
기관명 : 경기도 소상공인과
담당자 : 류재영 (031-8030-2963)

## 《 성과요약 》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보조금사업자의 사업비 부적정 사용에 대한 신고 접수 ⇒ 목적 외로 사용한 일정금액 사업비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을 통해 예산낭비 방지

## □ 그간 실태 및 문제점

-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2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우수골목상권 육성사업)」으로 ○○에 보조금 100,000천원을 지원하였음
- 보조사업자 ○○의 △△△ 회장은 '22년 우수골목육성사업을 수행한 업체들 가운데 2곳으로부터 각각 150만원씩 전체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회장단의 개인 기부금 형태로 처리함
- 이는 사업비를 사용목적 외로 집행하여 ○○의 자금으로 전용한 것임

## □ 추진내용

- '23. 1월 : 도비보조금 부적정 사용에 대한 신고에 따른 민원 접수 및 내부검토
- '23. 2월 : 피민원인, 참고인 소명서 접수 및 조사
- '23.3.10.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민원 전문위원회(8차)’ 개최
  - 해당 보조사업자 ○○(회장)의 사업비 부적정 사용 사실 확인
- '23.3.15. : 주관부서(경기도 소상공인과, ◎◎시 기업경제과)에서 전문위원회 결과 검토
- '22.3.17. : 보조사업자 ○○(회장)에게 위반사항 통보 및 조치사항 안내
- '23.3.29. : 보조사업자 ○○ 사업비 환불 완료

## □ 개선효과

- 사용목적 외로 집행한 300만원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지정한 계좌로 환수하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모든사업에 통보일로부터 1년 간 사업참여를 제한 조치함
  - ※ 「'23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사무편람」 p.28 제재 및 참여제한 기준 13 적용
- ▶ 향후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부적정 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예산 낭비 방지 도모

# 참고

# 민원 전문위원회(8차) 결과 보고

### 「2022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제8차 민원 전문위원회 결과보고 -

< 결과보고 >

**□ 개요**

- 목적 : '22년 우수골목 육성에 선정된 사업비 유용 사례가 있어 처분결정을 위한 민원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임
- 근거 : 골목경제팀-382(2023.3.3.), 「제8차 전문위원회 개최계획안」호
- 관련상인회 : 복서권역
- 사건내용 : '22년 우수골목육성사업을 수행한 업체들로부터 피민원인들이 420만원 가량을 받아 그중 일부를 '22년 11월 경 기부금 명목으로 가래비 참가연회회 동장에 입금 했다는 민원인 주장

**□ 그 외 주요 사항**

민원인 신청서 접수(1.18.) - 내부리포트(1.18.-1.25.) - 피민원인 소명서 요청(2.1.) - 피민원인 불고인 소명서 접수(2.8.) - 피민원인 조사(2.8.) - 불고인 조사(2.15.) - 조사결과보고(2.20.) - 전문위원회 개최요청(2.24.) - 전문위원회 할부요청(2.27.) - 전문위원회 개최(3.10.)

**□ 개최결과**

- 일시/장소 : '23. 3. 10.(금) 14:00~18:00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복서센터
- 구 성 : 변호사(신영준), 회계사(박대기), 서울벤처창업대학교 교수 (윤병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팀장(나해성), 한국KP건설팀 대표(봉구원)
- 의결진술자 :

※ 양주서 일차리검제과 김소영 팀장, 신우철 주무관 의견발언,  
○ 심의인건 : 1-1호 본 사안 관련자에 대한 조치 1-2호 상인회에 대한 조치  
○ 처분결과 : 1-1호의원에 대하여, 관련자로 및 출석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사요건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자 79에 대한 수사요건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함.** 1-2호의원에 대하여, 계약업체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는 것은 일반적 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보조금 집행의 경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회장단의 개인의 기부금 형태로 처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비를 사용목적 외로 집행하여 변연회의 자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300만원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지정한 계좌로 환수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모든사업에 통보일로부터 1년 간의 사업참여제한을** 의결함 [제재 및 참여제한 기준 13 적용]

**□ 향후일정(안) :** 회 결과 알림(3.14), 회 결도 후 발표(3.17) 회, 복서-파주, 상인회

**□ 지출금액 :** 위원수당 2백만원(40만원 x 5명, 4시간), 다과비 58,400원

※ 관사일비용 항(지원사일비) 목(골목상권진흥원지원사일비 세목) 골목상권 운영지원(도-수탁)

### 「2022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제8차 민원 전문위원회 결과보고 -

< 결과보고 >

**□ 개요**

- 목적 : '22년 우수골목 육성에 선정된 사업비 유용 사례가 있어 처분결정을 위한 민원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임
- 근거 : 골목경제팀-382(2023.3.3.), 「제8차 전문위원회 개최계획안」호
- 관련상인회 : 복서권역
- 사건내용 : '22년 우수골목육성사업을 수행한 업체들로부터 피민원인들이 420만원 가량을 받아 그중 일부를 '22년 11월 경 기부금 명목으로 가래비 참가연회회 동장에 입금 했다는 민원인 주장

**□ 그 외 주요 사항**

민원인 신청서 접수(1.18.) - 내부리포트(1.18.-1.25.) - 피민원인 소명서 요청(2.1.) - 피민원인 불고인 소명서 접수(2.8.) - 피민원인 조사(2.8.) - 불고인 조사(2.15.) - 조사결과보고(2.20.) - 전문위원회 개최요청(2.24.) - 전문위원회 할부요청(2.27.) - 전문위원회 개최(3.10.)

**□ 개최결과**

- 일시/장소 : '23. 3. 10.(금) 14:00~18:00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복서센터
- 구 성 : 변호사(신영준), 회계사(박대기), 서울벤처창업대학교 교수 (윤병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팀장(나해성), 한국KP건설팀 대표(봉구원)
- 의결진술자 :

※ 양주서 일차리검제과 김소영 팀장, 신우철 주무관 의견발언,  
○ 심의인건 : 1-1호 본 사안 관련자에 대한 조치 1-2호 상인회에 대한 조치  
○ 처분결과 : 1-1호의원에 대하여, 관련자로 및 출석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사요건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자 79에 대한 수사요건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함.** 1-2호의원에 대하여, 계약업체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는 것은 일반적 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보조금 집행의 경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회장단의 개인의 기부금 형태로 처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비를 사용목적 외로 집행하여 변연회의 자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300만원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지정한 계좌로 환수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모든사업에 통보일로부터 1년 간의 사업참여제한을** 의결함 [제재 및 참여제한 기준 13 적용]

**□ 향후일정(안) :** 회 결과 알림(3.14), 회 결도 후 발표(3.17) 회, 복서-파주, 상인회

**□ 지출금액 :** 위원수당 2백만원(40만원 x 5명, 4시간), 다과비 58,400원

※ 관사일비용 항(지원사일비) 목(골목상권진흥원지원사일비 세목) 골목상권 운영지원(도-수탁)

## 참고 1 제8차 민원 전문위원회 의결서

「2022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전문위원회 의결서

의결일자	장소	작성일자
2023. 3. 10.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복서센터 교육장	홍명건

**초청인건**

양주 가래비상가연회회 사장이 사용 관련 조치 및 대응

제1호 ① 1-1호 : 본 사안 관련자 79에 대한 조치 (초기요청여부, 조치방법 등)

② 1-2호 : 본 사안 관련자에 대한 조치

**의결**

① 1-1호 의결에 대하여, 민원 사안 및 출석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사요건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자 79에 대한 수사요건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함.**

② 1-2호 의결에 대하여, 계약업체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는 것은 일반적 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보조금 집행의 경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회장단의 개인의 기부금 형태로 처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비를 사용목적 외로 집행하여 변연회의 자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300만원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지정한 계좌로 환수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모든사업에 통보일로부터 1년 간의 사업참여제한을** 의결함. (제재 및 참여제한 기준 13 적용)

**의결서 작성일자** 2023. 3. 10.

2022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의 제8차 전문위원회의 초청인건을 위와 같이 의결함이다.	운영위원(명)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 참고 2 제재 및 참여제한 기준

연번	구분	제재사항 및 처제기준	비고
1	자출 증명서류 미제에 대한 소명되지 않은 금액	소명기간(15일 이내) 동안 소명되지 않은 지출 금액 환수	
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지정한 집행방법 외 집행(사업비 통장, 사업비카드 외)	주의 1회	
3	4대 부원 및 회과금 등 연세료, 위약금 발생	주의 1회	
4	성과 평가 결과 회하등급	주의 1회	
5	제출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서류(영산서류, 결과보고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고 1회	
6	운영지원(제출) 미준수로 인한 사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고 1회	
7	사업성과, 결과물 확인 등 추적조사 불응	경고 1회	
8	현장점검 시정 및 보완요구 불이행	경고 1회	
9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1회	
10	경고 3회 누적 시	사업참여제한(1년)	
11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업 중개 및 중단	사업참여제한(3년)	
12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부는 환수금액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 참여제한 (사업 부구 및 환수 완료 시까지)	
13	<b>사업비를 사용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형량, 유용 등)</b>	<b>사업 참여제한(영구) 및 사업비 환수(목적 외 사용된 금액)</b>	
14	운영서류 및 결과 등을 위조, 변조, 위변조하거나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환수금액은 전문위원회 결의에 따른)	
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위반	사업 참여제한(영구) 및 사업비 환수(변조)	
16	도비 지원으로 발생한 사업비를 능률 김피로 차분, 이전, 폐손, 대여, 사적사용한 경우	사업 참여제한	
17	기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대한 위반사항	전문위원회 결의에 따른	





 경기도